

모두가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2025년 학생 건강증진 기본방향



전라남도교육청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전남교육기본방향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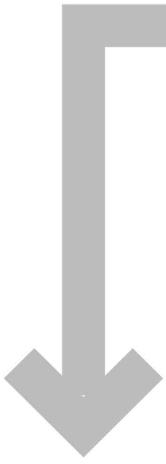


역점 과제

수업에 집중하는
학교문화 실현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실현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교육 실현



CONTENTS

I. 보건교육 강화

1. 보건교육 내실화	3
2.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5
3. 흡연·음주 예방교육	8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강화	11
5.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14

II. 학생 건강관리 지원

1. 학교 응급상황 관리체계 및 제1형 당뇨병 학생 지원 강화	17
2. 학교 보건실 운영	21
3. 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 관리	23
4.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9
5. 요보호 학생 관리	36
6. 학생 건강관리 지원 사업	38

III. 제출 사항

2025년 사업별 제출내용 및 서식	43
---------------------------	----

IV. 참고자료	71
1.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73
2. 응급환자 관리체계	74
3. 보건실 현대화 유형 도면 및 레이아웃	79
4. 전라남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87
5. 2025년 학생 건강검사 실시 계획	90
6. 학생 건강기록부 관리	139
7. 법정 감염병의 분류체계 및 신고 시기	140
8. 학교 내 감염병 발생 대응 단계	142
9. 나이스(NEIS)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 관리	150
10. 학교 방역물품 비축 권장 모형	159
11. 주요 감염병별 역학적 특성과 관리 방안	160
12. 학교 등교중지 및 출석 인정 근거 법령	162
13. 학교 내 결핵 관리 지침	163



2025년도 주요 변경내용



[보건교육 분야]

구 분	2024년도 주요내용	2025년도 변경내용	비 고
1. 보건교육 내실화	<p>나.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개정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른 보건교육 및 ‘보건’ 선택과목 운영 	<p>나.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개정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른 보건교육 및 ‘보건’ 선택과목 운영 * 시행시기: 초 5·6학년, 중·고 2학년은 `26.3.1.부터, 중·고 3학년은 `27.3.1.부터 시행 	<변경> 3쪽
	<p>라. 세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교육내용, 방법, 시수, 대상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교급별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차시* 이상 체계적·지속적인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 조치 * 1시간 기준: 초(40분), 중(45분), 고(50분) 	<p>라. 세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교육내용, 방법 및 대상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체계적·지속적인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교급별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차시(고등학교 16차시)* 이상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 조치 * 범교과 학습 주제(건강·안전) 내 관련 세부 주제와 통합 운영하도록 학교 교육계획 수립 가능 	<변경> 4쪽

구 분	2024년도 주요내용	2025년도 변경내용	비 고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강화	<p>다. 세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드시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p>다. 세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드시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2H)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3시간 이상 실시 *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실시, 이 경우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실습교육을 위한 보조강사로 활용가능(응급구조사, KBLS Instructor, KALS Instructor, 간호사 등) 	<p><변경> 11쪽</p>
	<p>◦ 학교장은 매년 학기 초에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연수계획을 반드시 수립</p> <div data-bbox="352 1081 703 127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교육계획 수립시 교육대상의 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교직원(기간제 교사 포함) 학교 운동부 지도자, 스포츠 강사 등 학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사람 </div>	<p>◦ 학교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모든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p> <div data-bbox="754 1081 1241 129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교직원 중 교육대상자 선정 권고안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학교운동부 지도자, 스포츠 강사 등 학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사람 </div>	<p><변경> 12쪽</p>

[학생 건강관리 분야]

구 분	2024년도 주요내용	2025년도 변경내용	비 고
1.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및 제 1형 당뇨병 학생 지원 강화	<p>가.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형 당뇨병* 등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 구축 * 1형 당뇨병은 소아청소년 연령대에서, 2형 당뇨병은 주로 40대 이후 중년기 연령대에서 호발 	<p>가.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형 당뇨병, 희귀·난치질환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별표삭제> 	<p><수정> 17쪽</p> <p><삭제> 17쪽</p>
	<p>나.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보급(`19.9.23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777) ◦ ‘초·중등학교 내 1형 당뇨병 학생 지원강화 방안’ 마련(`24.4월) * ‘25. 상반기 중 법령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한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개정판 배포 예정 	<p>나.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보급(`19.9.23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777) ◦ ‘초·중등학교 내 1형 당뇨병 학생 지원강화 방안’ 마련(`24.4월) * ‘25. 상반기 중 법령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한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개정판 배포 예정 	<p><변경> 18쪽</p>
	<p>다. 세부내용</p>	<p>다. 세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 중인 당뇨 학생 보호 강화 및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 - 학생이 스스로 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슐린 주사방법 등 조력, 초등학교 저학년·장애학생 등 자가주사가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동의와 의사 처방에 따라 보건교사가 직접 주사 지원 가능 ※ 교육활동 중 혈당 관리를 위해 인슐린 주사가 필요한 1형 당뇨병 학생이 스스로 주사를 놓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 및 혈당관리 지원 등 학교 상황에 맞게 조치 - 당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직원 연수 - 학교는 혈당관리를 위해 의료기기 및 전자기기 사용이 필요한 학생이 시험 등 평가 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p><추가> 19쪽</p>
2. 학교 보건실 운영	<p>다. 세부내용</p>	<p>다. 세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건강관리 서비스 제고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보건실 내 또는 인근에 보건교육실 설치 등 지원 	<p><추가> 21쪽</p>

구 분	2024년도 주요내용	2025년도 변경내용	비 고						
	다. 세부내용 ◦ 예산: 400,000천원 ◦ 보건실 현대화 사업 선정 기준: 보건실 면적 33㎡ (보통교실1/2실) 이상 확보(가능)교	다. 세부내용 ◦ 예산: - ※ 2025년 제1회 추경 등 예산 확보 후 별도 안내	<변경> 21쪽						
3. 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 관리	◦ 건강검사의 구분 <table border="1" data-bbox="384 611 699 703"> <tr> <td>별도 검사</td> <td>시력</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 2,3,5,6학년 • 중 2,3학년, • 고 2,3학년 </td> </tr> </table> ◦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적극 협조(계속~)	별도 검사	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 2,3,5,6학년 • 중 2,3학년, • 고 2,3학년 	◦ 건강검사의 구분 <table border="1" data-bbox="724 611 1082 703"> <tr> <td>별도 검사</td> <td>시력</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 2,3,5,6학년 • 중 2,3학년 </td> </tr> </table> <삭제>	별도 검사	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 2,3,5,6학년 • 중 2,3학년 	<변경> 24쪽 <삭제> 26쪽
별도 검사	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 2,3,5,6학년 • 중 2,3학년, • 고 2,3학년 							
별도 검사	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 2,3,5,6학년 • 중 2,3학년 							
4.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	다. 세부내용 ◦ 학교 내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최소 교육 이수시간 *(연간 3시간) 마련 및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방법 다양화 *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 교육부 「제2차 학생 건강 증진 기본계획('24~'28)」 에 따라 2025년부터 최소 교육 이수시간 변경(연간 4시간 이상) ◦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소 학생이 보건소에서 무료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 도록 입소 전 해당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 보건소 사정에 따라 무 료 결핵검진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학생 및 학부모 에게 안내 전 보건소에 지원 여부를 확인	다. 세부내용 ◦ 학교 내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최소 교육 이수시간*(연간 4시간 이상)마련 및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방법 다양화 ※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등학생 대상 교육 실시 의무 *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교육 실시 의무화(연간 10시간) ◦ 기숙사 운영학교의 경우 입소 학생 중 결핵 환자 조기발견 및 학교 내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한 결핵 검진 및 예방교육 실시 권고(2025 국가결핵관리지침 p.294 참고) <table border="1" data-bbox="730 1630 1294 1944"> <tr> <td> <2025 국가결핵관리지침 내 기숙사 입소 학생 결핵 검진 주요 내용> - 학교 기숙사 입소 학생(입소 예정 포함)은 연 1회(입소 시) 결핵 검진을 받도록 권고, 기숙사 입소 시 결핵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입소 중 빠른 시일 내 실시(보건소와의 협의) - 이후 연1회 흉부X선 검사 실시 ※ 학교보건법에 따른 결핵검진(흉부X선 검사)을 실시한 경우 중복검사 필요 없음 </td> </tr> </table>	<2025 국가결핵관리지침 내 기숙사 입소 학생 결핵 검진 주요 내용> - 학교 기숙사 입소 학생(입소 예정 포함)은 연 1회(입소 시) 결핵 검진을 받도록 권고, 기숙사 입소 시 결핵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입소 중 빠른 시일 내 실시(보건소와의 협의) - 이후 연1회 흉부X선 검사 실시 ※ 학교보건법에 따른 결핵검진(흉부X선 검사)을 실시한 경우 중복검사 필요 없음	<변경> 29~30쪽 <추가> 33쪽					
<2025 국가결핵관리지침 내 기숙사 입소 학생 결핵 검진 주요 내용> - 학교 기숙사 입소 학생(입소 예정 포함)은 연 1회(입소 시) 결핵 검진을 받도록 권고, 기숙사 입소 시 결핵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입소 중 빠른 시일 내 실시(보건소와의 협의) - 이후 연1회 흉부X선 검사 실시 ※ 학교보건법에 따른 결핵검진(흉부X선 검사)을 실시한 경우 중복검사 필요 없음									

구 분	2024년도 주요내용	2025년도 변경내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예방접종력 확인을 통해 “표준예방접종 일정표”에 따라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학교 내 확산을 방지 ※ 나이스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연계완료('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기연계된 나이스-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 25.3월 중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관련 별도 안내 	<변경> 34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대상 감염병 관리 원격연수에 참여하여 감염병 위기관리 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공립)에서는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교육(법정 의무) 실시 또는 안내 및 이수 결과 제출(제출 방법은 별도 안내) ※ 시립학교는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이수 권장 ※ 전라남도교육연수포털, 중앙교육연수원 등 법정 의무연수 및 감염병 교육(1차시) 원격과정 운영 	<변경> 34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학교에서는 학교 내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한 자체 모의훈련 실시(연 1회 이상) 	<추가> 34쪽
5. 요보호 학생 관리	-	<신설>	<추가> 36~37쪽
6. 학생 건강관리 지원 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협조사항 <input type="checkbox"/>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세부계획 안내 시 적극 협조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협조사항 <input type="checkbox"/>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 검사비 지원사업 시행('24년~)에 따라, 성조숙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무분별하게 검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학생만 검사 안내	<추가> 40쪽
제출내용 및 서식	<서식 1, 1-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 감염병 예방교육 추가 	<추가> 44~45쪽
	<서식 4, 4-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형 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 학교별 혈당관리기기 보유 현황 추가 	<추가> 52~56쪽
	<서식 6, 6-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 검진소요비용 작성란 삭제 - 별도(시력)검사 교정대상 작성란 삭제 	<삭제> 62~65쪽
	<서식 8, 8-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치병 학생 현황 - 아나필락시스 추가 	<추가> 67~68쪽
참고자료	1.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구입 내용 추가	<추가> 73쪽
	2. 응급환자 관리 체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참고자료(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기록지(예시) 추가	<추가> 78쪽
	7~11. 감염병 관련	◦ 내용 일부 수정	140~161쪽

※ 문맥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자구수정 사항은 주요 변경 내용에서 생략

I . 보건교육 강화

1. 보건교육 내실화
2.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3. 흡연·음주 예방교육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강화
5. 불균형체형 예방 및 관리

1 보건교육 내실화

가. 목적

-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학교 보건교육 실시

나. 근거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 등)
 - 성장기 학생의 신체건강 증진을 위해 발달단계에 알맞은 질병예방, 마약·음주·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대한 학교장의 보건교육 책무성 강화
-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2020. 4. 2. 제정)
- 2022 개정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른 보건교육 및 ‘보건’ 선택과목 운영
 - * 시행시기: 초 5·6학년, 중·고 2학년은 '26.3.1.부터, 중·고 3학년은 '27.3.1.부터 시행

다. 현황

1) 2024년 학급당 보건교육 실시 현황

(단위: 시간)

학교 급별	학교수	보건교사 배치 학교수	학년단위 학급 당 연평균 수업 시수						학년단위 17차시 이상* 실시 학교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초	426	348	8.8	9.1	7.6	10.0	22.4	20.3	426
중	250	138	19.6	18.9	15.3				243
고	145	136	13.0	16.3	19.8				131
특수	9	9	12.7	6.5	5.2	2.0	9.4	9.4	8
계	830	631							788

2) 2024년 보건과목 선택 현황

(단위: 교, %)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전체 학교수	선택 학교수	전체 학교수	선택 학교수	전체 학교수	선택 학교수	총 학교수	선택 학교수
250	145(58.0%)	145	78(53.7%)	9	4(44.4%)	404	227(56.1%)

라. 세부내용

1) 학교 교육과정 내 보건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교육내용, 방법 및 대상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체계적·지속적인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최소 1개 학년 이상(초등학교 5, 6학년 권장)을 대상으로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차시(고등학교 16차시)* 이상 보건교육 실시

* 범교과 학습 주제(건강·안전) 내 관련 세부 주제와 통합 운영하도록 학교 교육계획 수립 가능

※ (중·고등학교) 학생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성 및 요구도 증가를 고려하여 선택과목(보건)을 통해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적극 검토

※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참고자료

1.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정책 → 교육과정 → 교수·학습 → 범교과 학습주제
2.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범교과 학습주제와 교과 교육과정 연결 맵
3.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정책 → 국가교육과정 → 2022 개정교육과정 → 중학교 및 고등학교 → 선택교과 교육과정
4.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 → 학교보건
5.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및 개발 자료

2) 체계적인 학교보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대책 수립

- 학교장은 보건교사 수업 중 학생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 보건교사 수업 중 보건실 관리자 지정(대체교사 등) 운영
 - 학생 건강관리 서비스 제고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보건실 내 또는 인근에 보건교육실 설치 등 지원

3) 교원의 보건수업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원 사항

- 학생활동중심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수업역량강화 연수 및 사례 나눔 워크숍 운영
- 보건교육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단 구성·운영
- 연구하는 교원 문화 조성을 위한 보건교육 우수사례 연구대회 운영
- 보건교과연구회 및 교원 연구동아리 운영으로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협조사항

- 학교는 최소 1개 학년 이상 연간 17차시(고등학교 16차시) 이상 보건교육 과정 편성·운영

보고사항

- 보건교육 실시 현황 [서식 2, 서식 2-1]

2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가. 목적

-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유해약물 피해 예방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한 삶의 토대 마련
- 실효성 있는 마약류 예방교육 홍보를 통하여 마약류 피해 경각심 제고

나. 근거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전라남도교육청 유해약물 피해 예방교육 지원 조례」(2022. 12. 22. 제정)

다. 현황

-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을 통한 불법광고·접촉, 가상자산을 통한 대금결제, 국제우편·던지기 등 관련 수법 다변화 등으로 인해 10대 마약류 범죄 증가 추세
※ ('19년) 239명 → ('23년) 1,477명 / 10대 마약류 범죄 중 93.6%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
- 학생들의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은 성장기 청소년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탈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관문

라. 세부내용

1) 학교 교육과정 내 예방 교육 강화

-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시 발달단계에 맞는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과정 편성·운영

- * (아동복지법) 약물 및 감염병 예방 교육 학급별 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 * 「학교보건법」 개정('20.6월)을 통해 학교의 마약류 예방교육 의무화, 학교에서 매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 * (교육부 지침) 「학교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개정('23.10월)

- 모든 학교와 교육청은 학교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를 고려하여 마약류 등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계획 수립

< 교육시간 확대를 위한 「학교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3.10.16)>

개정 전	개정 후('24학년도부터 반영)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사이버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총 10시간 실시	사이버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10시간 중 학교급별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시간 구분 제시 ※ 실시시간 : 유초 5시간, 중 6시간, 고 7시간

- * 학생건강정보센터를 통한 학교급별 예방교육 자료 활용
- 교육지원청에서는 마약류 및 흡연·음주 등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계획 미수립 및 교육 미실시 학교가 없도록 조치하여 모든 학교에서 예방교육 추진

2) 교원의 예방 교육 지도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 사항

-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관련 담당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연수 과정을 중앙교육연수원 및 17개 시도교육청 연수원에 개설·운영
- 교사의 학생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사 동아리 운영, 학생의 흥미와 교육효과를 높이는 수업모형 개발, 체험형 교재·교구 개발 활동 등의 적극 지원을 통한 예방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최신 마약류 관련 정보 및 관계부처 등의 교육자료 지속 공유

3)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

- 마약류와 관련하여 상담,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연계

◆ 학생 마약류 관련 상담채널 ◆

구분	기관	신고 및 상담채널	내용
마약범죄 신고기관	경찰	1301	· 마약범죄 신고
	경찰	112	
	관세청	125	
상담 및 교육기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1899-0893 · 1342(용기한걸음센터)	· 방문, 편지, 메일, 전화 상담 가능 · 의료기관 치료 연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남함께한걸음센터	061-804-9777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전국 63개소)	국립나주병원	061-330-4114	마약류 등 중독자를 위한 상담, 사례관리, 재활 프로그램 지원
	광주시립정신병원 (광주 광산구)	062-949-5200	
	단약자조모임 NA	www.nakorea.org	회복 중인 약물중독자를 위한 모임

※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학생들은 365일 24시간 무료 익명채팅 상담 '다들어줄게' 접속
 ▶ ① '다들어줄게' 앱, ②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③ 페이스북 메신저, ④ 문자(1661-5004)

- 보건실 구비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투여에 의한 오·남용 예방

- ▲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보관
 -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분류하여 보관하고, 냉장 보관 시에는 의약(외)품 이외의 것과 분리 보관
- ▲ 의약(외)품 사용 및 보관 기준 준수
 - 의약품 보관 용기 또는 첨부문서에 명기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 등을 준수
 - ※ 온·습도 조절, 직사광선 차단 등 의약품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 ▲ 의약품의 안전관리,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보관·관리에 철저
- ▲ 용기나 포장에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아니할 것

4) 학생 유해약물 예방 교육 운영 시 유의사항

- 마약류 중독의 실질적 폐해(일상생활 불가, 범죄노출, 조기질병·사망 등) 중심의 시각·영상자료 교육으로 교육의 효과성 증대 필요
- 학생·학부모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학교 마약 예방 주간 지정·운영 및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마약류 예방 교육 홍보
-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연계·협력 방안 강구

■ 협조사항

- 학교는 모든 학생 대상 학년별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과정 편성·운영
 - 교육과정과 연계한 예방교육 편성 프로그램, 마약예방 교육자료 적극 활용
 - 교원 및 학생·학부모의 마약류에 대한 전문성과 인식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지원 및 협업체계 필요
- 교육 내용에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6]」,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내용을 반드시 반영

■ 보고사항

- 학생 건강증진교육 실시 현황 [서식 1, 서식 1-1]

■ 참고자료

- 학생건강정보센터 [www.schoolhealth.kr]
 - 신종 불법 마약류 관련 자료 등 공유, 학교급별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콘텐츠 제공(연중)

3 흡연 · 음주 예방교육

가. 목적

- 학교 교육과정 내 흡연, 음주 예방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흡연 · 음주경험을 감소 및 학생 건강권 보호
- 학생들의 흡연 · 음주에 대한 대처 능력 강화를 통한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 문화 조성

나. 근거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보건법」 제9조의 2(보건교육 등)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전라남도교육청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 (2020. 12. 31. 제정)

다. 현황

1) 청소년 흡연 현황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 현재 흡연율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전국		4.5%	4.5%	4.2%
전남	전체	5.0%	6.3%	5.7%
	남학생	6.7%	8.1%	7.8%
	여학생	3.1%	4.5%	3.5%

-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전국)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액상형	궐련형	액상형	궐련형	액상형	궐련형
전국	남	3.7%	1.6%	4.5%	3.2%	3.8%	2.7%
	여	1.9%	0.8%	2.2%	1.3%	2.4%	1.4%

※ 본 통계자료('21~ '23)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중·고등학교 표본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학생 흡연율임
 ※ 2022년 대비 2023년에 일반담배의 청소년 흡연율은 감소하였으며, 전자담배는 액상형 및 궐련형 모두 청소년(남)에게서 감소하였으나, 청소년(여)에게서는 증가함

2) 2024년 흡연·음주 예방교육 현황

구분	전체 학교수				교육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흡연예방	426	250	143	9	426	250	143	9
음주예방					426	250	143	9

라. 세부내용

1) 학교에서 체계적인 흡연·음주 예방교육 실시 강화

-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시 흡연·음주 예방 교육과정 편성·운영
 - 교육계획 수립 시 7대 안전교육 내용 체계안 적극 반영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흡연·음주 예방 교육 실시(초등 2시간·중등 1시간 이상)
-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내 주류 반입금지(술을 연상시키는 무알콜 음료 포함)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음주 예방교육 강화
- 교육지원청에서는 흡연·음주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하여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여 모든 학교에서 예방교육 실시 조치

2) 흡연, 음주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문화 조성

- 학교의 장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운영(「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 현재 유치원 주변 10미터까지의 금연구역이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주변 30미터까지 확대 적용('24.8.17~)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개정('24.8.17. 시행)으로 학교주변 금연구역 확대

구분	현재(24.8.17.부터~)
지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지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정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학교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종사자 및 외부인 대상 학교 내 흡연 금지 사전 안내, 종사자의 경우 외부 금연 프로그램 이수 권고 등 학생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2020. 12. 7.) 제도개선 참조

- 교육(지원)청은 관내 흡연실 설치 학교 현황을 파악하여 교직원의 교내 흡연이 학생들에게 목격되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 철저
- 흡연 또는 음주하는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학생의 금연 또는 금주를 지도하고, 시·군 보건소 등 관련 전문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3)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원내용

-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수업역량강화 연수 및 사례 나눔 워크숍 운영
- 수업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단 구성·운영
- 현장지원단 및 연구동아리 운영 지원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협조사항

- 모든 학생 대상으로 흡연·음주 예방교육 강화

보고사항

-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서식 1, 서식 1-1]

참고자료

- 학생건강정보센터 [www.schoolhealth.kr]
- 학교안전지원시스템 [www.schoolsafe24.or.kr]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강화

가. 목적

- 학교 교육과정 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통한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철저

나. 근거

- 「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 등)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응급처치교육 등) 별표9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전라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2023. 2. 16. 개정)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33호)

다. 세부내용

1)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내실화

- 학생은 보건교육 등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교육 실시
-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시 학년단위 교육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체험 중심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정 편성·운영
- 모든 학생 대상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학년별 2차시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교육부 고시 제2023-33호)
- 반드시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2H)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3시간 이상 실시
 - *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실시, 이 경우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실습교육을 위한 보조강사로 활용가능(응급구조사, KBLIS Instructor, KALS Instructor, 간호사 등)
 - ※ 예) 초 6학년이 5학년일 경우 5학년 모든 학생 실습(2H)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3시간 이상 실시

- 지역기관 연계 심폐소생술 학생경연대회를 통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도모

2)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내실화

- 학교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모든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
- 학교장은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최소 4시간***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이론(2H)+실습(2H), 교육 여건 등 고려하여 실습교육 2시간 포함 최소 3시간 이상 실시 가능
- 다른 법령*에서 정한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거나, 응급처치 교육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 기준을 충족하는 외부기관의 심폐소생술 교육·연수를 받은 경우 생략(대체) 가능
* 「응급의료법」, 「119법」, 「어린이안전법」 등
- 학교별 계획에 의한 심폐소생술 교육(3시간) 실적은 나이스 등재하지 않으며 학점화 대상 연수기관(특수분야 직무연수 기관지정-기관에서 별도 지정받음)에서 이수한 경우는 나이스에 등재함
- 교직원 심폐소생술을 위한 정부 지정 응급처치 교육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

< 교직원 중 교육대상자 선정 권고안 >

1. 모든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2. 학교운동부 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학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사람
 3. 교육감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
 4. 그 밖의 교직원(시간강사 등 단기상주 직원 포함)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는 학교장이 해당 교직원의 학생 교육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대상 선정
- ※ 건강상의 문제로 실습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고려

3)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원

- 시뮬레이션 기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강사양성과정 직무연수 운영
- 수업역량강화 연수 및 사례 나눔 워크숍 운영
- 현장지원단 및 연구동아리 운영 지원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 협조사항

- 모든 학생 대상 학년별 2차시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교육 실시(최소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2H)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3시간 이상 실시)
- 심폐소생술 실습용품(교육용 AED, 교육용 CPR 등)은 교육시간 외 평상시에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 검토 (예. 체육관, 복도 등 유휴공간에 비치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보고사항

-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 [서식 3, 서식 3-1]

■ 참고자료

- 학생건강정보센터 [www.schoolhealth.kr]
- 학교안전지원시스템[<https://www.schoolsafe24.or.kr>]
- 정부 지정 응급처치 교육 전문기관 안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

5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가. 목적

- 학생의 불균형 체형*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 및 교육을 통해 균형 잡힌 신체발달 도모

* 불균형 체형: 바르지 않은 자세와 생활습관 등으로 근골격계가 휘어지거나 비틀어져 신체 형태가 불균형한 상태(거북목, 굽은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 이상 등)

나. 근거

-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조례」(2022. 4. 7. 제정)

다. 세부내용

1) 불균형 체형 학생 예방 교육 내실화

- 거북목·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골반불균형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
 - ※ 보건·체육 수업 시간 등 활용하여 교육
- 바른 자세와 바르지 못한 자세에 대해 이해하고, 불균형 체형 예방에 대한 지식 확보
- 수업 전 또는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스트레칭 권장

2) 불균형 체형 학생 관리 강화

- 학생 건강검사 등을 통해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시행
- 학생 스스로 본인 체형 및 자세를 분석하고, 불균형 체형 자가 진단을 실시하여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실천 능력 강화
-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바른 체형 및 자세 교정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 홍보
- 체형 측정, 교정 등의 협력 및 자문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참고자료

- 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공개자료실-척추 건강 운동 동영상, 교육자료]

Ⅱ. 학생 건강관리 지원

1. 학교 응급상황 관리체계 및 제1형 당뇨병 학생 지원 강화
2. 학교 보건실 운영
3. 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 관리
4.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5. 요보호 학생 관리
6. 학생 건강관리 지원 사업

1 학교 응급상황 관리체계 및 제1형 당뇨병 학생 지원 강화

가. 목적

-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후송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
- 제1형 당뇨병, 희귀·난치 질환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나. 근거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및 제15조의 2(응급처치 등)
- 「전라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2024. 4. 4. 개정)
- 학교에서의 응급의료 관리체계(교육과학기술부, 2011)
-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교육부, 2019)

다. 현황

1) 제1형 당뇨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2024. 4. 기준)

○ 재학 현황

(단위: 교, 명)

구분	전체 학교수	제1형 당뇨 학생 재학현황		보건교사 미배치교 재학 현황		비고
		재학 학교수	재학 학생수	재학 학교수	재학 학생수	
초	426	30	31			
중	250	29	34	1	1	
고	143	30	40			
계	819	89	105	1	1	

○ 학교 지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제1형 당뇨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비고
초	31	28	27	
중	34	18	15	
고	40	18	7	
계	105	64	49	

※ 인솔인 직접주사: 8명(초 6, 중 1, 고 1 지원)

2)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재학 현황(2024. 4. 기준) (단위: 교, 명)

구분	재학 학교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비고
초	48	12	10	
중	28	2	2	
고	18	7	5	
계	94	21	17	

- 3) 학교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음(「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신설, '18.5.29. 시행, '21.6.8 개정)
-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
 -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보급('19.9.23.,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777)
* '25. 상반기 중 법령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한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개정판 배포 예정
 - ‘초·중등학교 내 1형 당뇨 학생 지원강화 방안’ 마련('24.4월)

라. 세부내용

1) 학교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 학년 초에 학교 내 응급환자 관리대책 수립
 -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대책 수립
 - 총괄책임자, 처치책임자, 후송책임자 등 학교 실정에 맞게 교직원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

2) 제1형 당뇨 학생에 대한 지원·관리체계 강화

- 각급학교에서는 학생 건강검사(건강조사)를 실시할 때 제1형 당뇨 학생 재학 여부를 조사하고,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의 조사결과를 제출받아 관리
 - (학교)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교육지원청) 학교별 제1형 당뇨 학생 수만을 제출받아 당뇨 학생 지원을 위한 자체 계획 수립 시 활용하고, 학생 개인정보 수집은 원칙적 금지
- 기 보급된 「당뇨병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장은 담임교사, 보건·영양·체육교사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조치
 - 보건실 등 공간을 투약 장소로 제공하며, 파티션 등을 이용하여 투약행위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 글루카곤 등 처방받은 응급의약품에 대한 보관 장소 제공

-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 등 관리

※ 제1형 당뇨 학생(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필요한 지원은 금지

○ 제1형 당뇨 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 내 혈당관리기기 등 비치

○ 제1형 당뇨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 보건교육 등을 실시할 때 제1형 당뇨병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 재학 중인 당뇨 학생 보호 강화 및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

- 학생이 스스로 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슐린 주사방법 등 조력

- 초등학교 저학년·장애학생 등 자기주사가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동의와 의사 처방에 따라 보건교사가 직접 주사 지원 가능

※ 교육활동 중 혈당 관리를 위해 인슐린 주사가 필요한 1형 당뇨병 학생이 스스로 주사를 놓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 및 혈당관리 지원 등 학교 상황에 맞게 조치

- 당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직원 연수

- 학교는 혈당관리를 위해 의료기기 및 전자기기 사용이 필요한 학생이 시험 등 평가 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협조사항

○ 학교는 학년 초 응급상황 관리대책 수립(후송체계 포함)

○ 학교는 학년 초 요보호 학생(제1형 당뇨, 희귀·난치병 등)을 파악하여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

■ 보고사항

○ 제1형 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서식 4, 서식 4-1]

■ 참고자료

○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 도교육청 홈페이지 > 교육정보모두 > 장학·연수·교육 > 교육자료 > 보건/급식/건강 > 가이드라인 파일 탑재

○ 응급환자 관리 체계 [참고자료 2]

2 학교 보건실 운영

가. 목적

-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건강관리 및 상담 등 학교 보건의 구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실 시설 정비
- 보건실 내부를 처치실, 안정실, 건강상담실, 보건 업무실, 기타공간으로 구분·설치하고 보건교육실 설치 권장

나. 현황

1) 보건실 현황(2024. 6. 30. 기준)

구분	전 체 학교수	보건실 규모						독립된 보건교육실
		교실1실	교실1/2실	교실1/3실	기타	다른교실과 겸용	계	
초	426	233	151	15	14	13	426	49
중	250	116	111	5	10	8	250	22
고	143	122	15	2	4	-	143	16
특	9	8	-	-	1	-	9	2
계	828	479	277	22	29	21	828	89

※ 기타: 교실 외 별도 공간(숙직실 등)

※ 다른 교실과 겸용: 칸막이 구분 없이 다른 교실과 공동 이용하는 보건실

※ 독립된 보건교육실: 보건교육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보건교육실

2) 2019. 12. 27. 「전라남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교육 규칙 제774호)」 일부 개정으로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기준을 정함

- 학교 보건실 비치품목에 ‘용품’ 이 추가되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개정하고, 보건교사 미배치교 및 소규모 학교가 많은 우리도 실정을 감안하여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을 개정(참고자료4)

3) 2015년도 학교 종합감사 결과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대한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에 대하여 미달되는 품목(기구)이 없도록 지도·점검 강화 요구

다. 세부내용

1) 보건실 설치 기준 준수 및 운영

- 보건실 위치: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에 배치
- 보건실 면적: 66㎡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장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음
 - ※ 보건교사 배치교: 66㎡ 또는 보통교실 1실 이상 권장
 - ※ 보건교사 미배치교: 33㎡ 이상 권장
 - ※ 교실 부족 등의 이유로 기존 보건실 면적을 축소하거나 타 용도로 전용 금지
- 신축, 증·개축학교는 설계단계부터 보건실 면적(66㎡ 또는 보통교실 1실) 및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구를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 보건실 실내온도는 하절기 26℃~28℃, 동절기에는 18℃~20℃를 유지하고, 적정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해 반드시 냉·난방시설 설치
- 학생 건강관리 서비스 제고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보건실 내 또는 인근에 보건교육실 설치 등 지원
- **보건실 운영 예산:** 「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확보
 - 보건실 비품 및 기자재 구입비, 학생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약품구입비, 감염병예방 사업비, 보건교육 자료 구입비, 침구세탁비, 응급환자 후송비 등

2)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 실태조사 및 확보 계획 수립

- 학교에서는 『전라남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필수품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달되는 품목 보완 조치계획 수립
- 교육지원청에서는 보건교사 미배치교의 보건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3) 2025년 보건실 현대화 사업

- 내용: 처치실, 안정실, 건강상담실, 보건업무 공간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설비를 현대식으로 리모델링
- 예산액: -

※ 2025년 제1회 추경 등 예산 확보 후 별도 안내

- 선정기준: 보건실 면적 33㎡(보통교실1/2실) 이상 확보(가능)교

■ 협조사항

- 교육지원청에서는 보건교사 미배치교의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학교에서는 교실 부족 등의 이유로 보건실 면적을 축소하거나 타 용도로 전용 금지
- 학교에서는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운영 예산 확보
 -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달되는 품목에 대하여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보완
 - 미달되는 품목은 예산을 반영하여 확보
- 학교에서는 보건교육실을 설치할 경우 보건실 인접 교실 또는 가까운 곳에 설치

■ 보고사항

- 학교 보건실(보건교육실) 설치 현황 [서식 5, 서식 5-1]

■ 참고자료

- [참고자료 1]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 [참고자료 3] 보건실 현대화 유형 도면 및 레이아웃
- [참고자료 4] 전라남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3 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 관리

가. 목적

-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습관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건강한 삶 도모
- 나쁜 건강행태 또는 건강문제, 질병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및 건강상담, 치료 및 보호 등 적절한 대책 강구

나. 현황

(조사대상: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생, 단위: %)

1) 학생 비만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비만도 (체질량지수)	전남	17.2	16.7	22.2	21.7	24.8	
	전국	14.4	15.1	19.0	18.7	18.4	

○ 건강생활 실천현황(2023)

구분	초	중	고	비고	
주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	전남	57.69	38.64	27.31	
	전국	64.53	39.78	27.56	
주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전남	81.03	78.04	82.65	
	전국	78.04	83.32	83.90	

2) 구강질환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치아우식증	전남	31.9	34.0	24.9	16.5	18.9	
	전국	22.8	25.0	20.2	18.5	17.3	

○ 양치질 실천현황(2023)

구분	초	중	고	비고	
하루에 두 번 이상 양치질 비율	전남	92.22	91.48	94.29	
	전국	90.75	89.57	93.53	

3) 시력이상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시력이상	전남	48.6	52.2	53.8	50.1	50.5	
	전국	53.7	53.2	58.0	55.2	56.0	

○ 인터넷, 게임 이용 현황(2023)

구분	초	중	고	비고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 게임 이용률	전남	49.38	65.44	54.21	
	전국	48.73	63.46	54.68	

다. 세부내용

1) 학생 건강검사 계획 수립 및 추진

- 학교장은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계획을 3월 말까지 수립
 - ※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및 체육건강과-763(2025. 1. 14.) 「2025학년도 학생 건강검진 비용 안내」 참고
-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
- 학생 건강검사를 위한 검진기관 및 검진시기(기간 등) 결정 시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불편 최소화 노력
- 학생 건강검진 기관 선정 시 검진 참여 인력 자격요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적정 요인 여부 확인 철저
- 건강검사의 구분

구분	검사대상	비용(원)	검사기관	검사항목	검사시기	비고
신체의 발달상황	• 초 2,3,5,6학년 • 중·고 2,3학년	-	당해학교 (교직원)	키, 몸무게 비만도	1학기 말까지	
건강조사	• 초 전체학년 • 중·고 전체학년	-	당해학교 (교직원)	병력, 식생활 건강생활행태 등	4월중 (1학기 말까지)	
건강검진	• 초 1,4학년 • 중·고 1학년 (구강검진) • 초·중·고 전학년	보건 복지부 고시금액	학교장 지정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의 검진기관	척추, 눈, 귀 병리검사 등 외 (12종 ~16종)	가급적 1학기내	전액 학교회계 부담
별도 검사	소변	1,450	한국학교보건협회 광주·전남지부	당, 단백, 잠혈 간기능, 케톤체, 백혈구, 아질산염	연중	교육 지원청 부담
	결핵	4,480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	흉부 엑스선	연중	교육 지원청 부담
	시력	-	당해학교 (교직원)	시력표에 의한 간이 측정	연중	

- ※ 초 1,4학년, 중·고 1학년 학생의 신체의 발달상황, 소변검사, 시력검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
- ※ 특수학교 및 방송통신중·고,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는 초·중·고 해당학년과 동일하게 실시(학령기)
- ※ 2025학년도부터 고2,3학년 시력검사 폐지

2) 건강검사 결과의 적극 활용 및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 학교장은 학생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3항)
 - ※ 학생 건강검진 자료를 학생의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1학기 내에 검진완료

-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조사를 가급적 4월중(1학기 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등 적극적인 건강증진 교육 실시
- 학교장은 건강검사 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질병의 예방조치 및 치료 등의 보호 및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 마련 · 추진
- 학생 건강검사 결과를 학생건강기록부에 입력 및 건강관리 자료로 활용하고 결과 이상자(유증상자)에 대하여 학부모에게 가정통신 등으로 알려 정밀검진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
 - 2차 검진결과를 확인하여 건강이상자는 관리카드(p.133)를 작성 · 관리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등 관리방안 수립(내부결재 처리)
 - ※ 구강, 시력 이상자는 관리카드 작성 제외
 - ※ 2차 검진결과 미확인 및 학부모(보호자)의 2차 정밀검사 이행을 저조 등 건강이상자 사후 조치 소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 학생건강검진 결과 2차 검진비용을 학교회계 예산으로 지원 가능

◆ 유증상자 조치사항

검 사 명	조 치 사 항
신체의 발달상황	- 학생건강기록부에 입력 후 학부모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치료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
건강조사	- 설문결과 통계처리 및 결과 분석 후 학생 건강관리계획에 반영
건강검진	- 학생건강기록부에 입력 및 필요한 조치 후 관리 - 유증상자에 대하여 즉시 학부모(보호자)에게 가정통신 등으로 알려 정밀검진 및 조기치료를 받도록 안내 - 2차 검진결과를 확인하여 건강이상자는 관리카드(p.132)를 작성·관리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적절한 대책 강구 ※ 구강, 시력 이상자는 관리카드 작성 제외
소변검사	- 단백, 잠혈 양성자는 만성신부전, 신장, 요로 등 정밀검사를 받도록 안내
결핵검사	- 결핵환자: 교육상담(복약확인) 및 관할 보건소 등록·치료 - 진단 보류자(요관찰): 보건소에서 재검사 받도록 안내 - 결핵 외 기타 흉부질환(심장질환, 척추측만, 기타 호흡기질환)은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관련 병·의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시력검사	- 안과, 병·의원 정밀검진을 통한 시력 교정 안내

-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http://schoolhealth.kr>) 배너를 학교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다양한 학생건강정보를 적극 홍보·활용

3) 학생 건강검진 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

- 학생 건강검진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지원청 또는 단위 학교에서 검진 기관에 해당 민원에 대한 설명 및 개선요청(공문시행 등)
 - ※ 필요시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검진의 문제점 발견 등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질(質)관리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
 - ※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차기 년도 검진 시 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
-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 건강검사의 적법한 운영 지원 및 현장 지도·점검 철저
- 학생 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지(검진기관명을 제외한 만족도 결과만 공지)

라. 건강검사 표본학교 지정·운영(70교)

(지정기간: 2024년~2026년)

지역별(70교)	초(20교)	중(21교)	고(29교)
목포(8)	목포애향초, 목포용호초	목포영화중, 목포애향중, 목포중앙여중	목포마리아회고, 목포여고, 목포정명여고
여수(8)	여수양지초, 응천초, 관기초	여수구봉중, 여도중	여수고, 여수충무고, 여수정보과학고
순천(11)	순천용당초, 순천부영초, 신대초	순천왕운중, 순천남산중, 순천금당중, 순천삼산중	순천여고, 순천매산고, 순천팔마고, 순천금당고
나주(7)	나주중앙초, 남평초	영산중	나주고, 나주공고, 매성고, 광남고
광양(9)	광양백운초	광양중, 동광양중, 광양용강중	광양고, 광양여고, 광양백운고, 광영고, 한국항만물류고
구례(2)	청천초		구례고
고흥(3)	고흥동초	고흥중, 금산중	
보성(2)	미력초		별교상업고
화순(3)	도곡초	화순도곡중	화순고
강진(2)		강진대구중	강진고
해남(2)		화산중	해남공고
무안(4)	남악초, 해제초	무안북중	전남예술고
함평(2)		함평해보중	함평학다리고
영광(2)		영광옥당중	해룡고

지역별(70교)	초(20교)	중(21교)	고(29교)
장성(1)	장성중앙초		
완도(2)	노화초		노화고
진도(1)	진도초		
신안(1)			임자고

- 실시기간: 2025. 3월 ~ 9월
- 결과처리: 학교에서는 표본학생 건강검사 결과를 2025년 9월 30일까지 NEIS를 통해 교육청으로 전송(표본 조사에 따른 검사결과 작성·제출 등 철저)
- 행정사항: 표본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기관 관계자에게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매뉴얼과 학생 검진항목별 검진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따른 교육 철저

*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별도로 안내되는 계획에 따라 추진

마. 학생 건강관리 방안

구분	관리방안	비고
건강한 체중·자세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체중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 거북목, 굽은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 이상 등 불균형 체형 학생에 대한 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 등 교육 실시 ○ 학부모, 보건교사, 담임, 체육교사, 영양(교)사와 연계하여 지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이요법, 운동요법, 생활 습관 개선 등 교정지도 	
건강한 구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아 건강 인식 제고를 위한 구강보건 교육 강화 ○ 칫솔질 실천 캠페인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심 식사 후 이 닦기 실천 캠페인 - 개인 양치도구 지참 및 양치 습관 분위기 조성 ○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구강보건사업 전개 ○ 가정과 연계한 칫솔질 교육 지도 ○ 칫솔질 실천율 향상을 위한 위생적인 양치환경 조성 	
눈 건강과 시력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시력 저하 예방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학습 자세 및 독서법, TV 시청, 컴퓨터 게임 시간 지도 및 올바른 안경 착용 방법 지도 - 시력 보호를 위한 일정한 휴식 및 영양섭취 지도 ○ 학생 시력 보호·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사 결과 고도 근시, 저시력 등 안과 질환 학생에 대한 정기 정밀 검진 지도 - 학년 초 학생의 신장 및 시력 정도를 고려한 좌석 배치 ○ 교실 조도의 정기점검 및 지속적 관리 	

■ 협조사항

- 교육지원청은 학생 건강검사 실시 계획 수립 및 유증상자 조치 안내
- 학교는 학생 건강검사 계획 수립 및 건강검진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날짜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 기관과 협의
- 학교는 학생 건강검진을 가급적 1학기 내에 완료하여 검진결과 이상자는 즉시 학부모에게 가정통신 등을 통해 정밀검진 및 조기치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2차검진 결과 건강이상자 관리카드(p.133) 작성 및 관리

■ 보고사항

-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서식 6, 서식 6-1]
-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서식 7, NEIS 전송]
- 표본학급 학생 건강검사 통계 [NEIS 전송]

■ 참고자료

- [참고자료 5] 2025년 학생 건강검사 실시 계획
- [참고자료 6]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4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가. 목적

- 「학교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감염병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건강 보호

나. 현황

1) 최근 3년간 학생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NEIS)

(단위: 명)

구분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결핵	백일해	수족구병	기타	계
2022년	128,013	7,286	140	58	3	-	147	63	135,710
2023년	8,438	19,188	622	88	-	-	289	252	28,877
2024년	4,524	6,916	869	53	3	1,435	520	718	15,038
계	140,975	33,390	1,631	199	6	1,435	956	1,033	179,625

2)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 추진

- 「학교보건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2차 ‘학교 감염병 종합대책’ 수립(’ 24.3월)
- 「학교보건법」 제14조의4에 따른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제3차 개정판)’ 제작·배포(’ 23.12월)
- 3) 감염병 유행 조기 차단을 위한 방역물품(마스크, 체온계, 손 소독제 등)을 확보 하도록 급당 5만원 지원(학교기본운영비 통합지원 사업에 포함)
- 4)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운영
 - 학교관리자, 담당 교원 대상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대상 연수과정 운영

다. 세부내용

1)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 생활 속 기본방역 수칙 실천 및 교육·홍보 강화
 - 학교 내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최소 교육 이수시간*(연간 4시간 이상) 마련 및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방법 다양화

*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 ※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등학생 대상 교육 실시 의무
 - *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실시 의무화(연간 10시간)
- 교육부에서 개발·보급한 자료*(17~)를 적극 활용
 - * 학생 빈발 감염병 5종(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수족구, 유행성 눈병)에 대한 학생용 교육자료
- 가정 내 개인위생 관리 및 지도
 - 감염병 유행 시 유의 사항 등을 가정통신, 누리 소통망(SNS), 누리집 등을 통해 지속 홍보
 - ※ 다문화 가정을 위해 제작한 주요 국가(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필리핀어) 번역본 활용
- 방학이 시작되기 직전에 여름철 또는 겨울철 위생관리 및 감염병 예방에 대한 주의사항을 가정에 안내

2) 감염병 환자 발생 대비 대응체계 구축

- 학교는 매년 3월 말까지 학교 감염병 관리 조직, 감염병 예방 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 ※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3차 개정판)」 12쪽 참고
- 교육지원청은 매년 2월 말까지 방역당국(보건소)과의 협조체계, 감염병 관리 협의체 및 국가의 위기 상황 시 운영되는 대책반 구성·운영을 포함한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3) 교내 방역활동 강화

- 초·중·고·특·각종 및 유치원 등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은 정기적으로 소독 실시
 - ※ 4월~9월까지 2개월에 1회 이상, 10월~3월까지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정기소독(연 5회)은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업체선정 및 계약 등 업무를 추진 하고, 학교에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소독 당일 감독 협조
- 접촉 빈도가 높은 장소(세면대, 교실문 손잡이 등), 기숙사 등은 학교 일상 소독 수시 실시
- 교실 등의 창문과 출입문을 동시에 10분 이상 열어 수시로 환기
- 단체 활동 시 코로나19, 장관감염증,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각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관리 철저

기숙사 운영학교 안내 사항

- ▶ 자체 방역기를 활용하여 기숙사 건물 실내 공간 살균·살충을 하절기(4월~9월) 월 1회 이상 권장
- ▶ 기숙사 입소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강화
- ▶ 기숙사 사감은 감염병 관리 원격연수 참여
 - 환자 발생 시 신속히 보고·격리·치료 등 대응체계 유지

4) 학생 손 씻기 교육 강화 및 위생시설·방역물품 비축

- 학생 손 씻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학생 교육 강화 및 손 씻기 환경 적극 개선

학교 추진 사항

- ▶ 1일 8회 30초간 손 씻기(1830) 운동 등 손 씻기 실천율 향상 프로그램 적극 운영
- ▶ 학생들이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 반드시 손을 씻도록 교육
- ▶ 손 세척 도구(고형·액체비누)와 손 말리기 도구(종이타월 등)를 모든 화장실에 구비(공급)
 - 개인 손수건 또는 물티슈 휴대하기 지도

- 학교 신축, 증개축, 보수 시 손 씻는 시설 확충(복도, 식당 입구, 화장실 등) 및 온수공급시설 적극적으로 설치
- 학교에서는 매년 2학기 시작 전에 방역물품 비축현황을 파악한 후, 「학교 방역물품 비축 권장 모형」(참고자료 10)에 따라 비축
- 교육지원청에서는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여 방역물품(마스크, 손 소독제, 소독 티슈 등)을 비축하고 관내 학교에 지원
-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하여 관내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등의 기반 마련

5) 학교 감염병 발생 시 보고, 확산 차단 등 후속 대응 철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 1. 1.)
 - ※ 감염병 분류체계, 신고기간, 보고기간 및 대상, 신고의무자 벌칙 규정(벌금) 등 개정
-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등 감염병 관련 지침 준수 철저
- 감염병 환자(의심자 포함) 발생 시 등교중지하고, 학부모에게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하는 등 신속한 대응으로 학교 내 확산 방지
 - ※ 환자 발생 시 조치내용, 절차: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참고
 - 출결 상황 관리**(등교중지, 출석 인정 등)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참고

학교 내 감염병 관리 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 ▶ 발생감시팀(밀접접촉자 파악 등), 예방관리팀(보건교육 등), 학사관리팀(등교중지 학생에 대한 행정처리 등), 행정지원팀(예산 및 행정지원 등) 등 역할 분담 철저
- ※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3차 개정판) 13쪽 참고

○ **감염병 발생 나이스(NEIS) 보고**

- (학교) 학교장은 감염병 발생 시 지체 없이 나이스(NEIS)를 통해 교육지원청에 보고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은 보건소에도 즉시 신고*
 - ※ 감염병 확진 학생 관리 및 학교 유행·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완치자에 대한 보고 철저
 - ※ (특이 사항) 학생과 교직원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역학조사, 긴급방역 조치, 언론 취재 및 보도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유선으로 보고 후 공문 제출[보고서식 9]
- (교육지원청) 감염병 발생 현황을 매일 확인(NEIS)하여 유행 여부를 판단하고, 도교육청으로 전송
 - ※ 도교육청에 제출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부재 시 담당자 지정·운영)

감염병 발생 시 보고 체계

- ▶ 초·중·고·특수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 **보고 대상:** 법정 감염병 및 비법정 감염병(참고자료 7, 8, 9)
 - 나이스(NEIS) 항목에 없는 감염병의 경우 기타로 입력 후 세부 감염병명을 기재
 - ※ 최초 보고 이후 ‘완치 보고, 보고 오류 수정’ 등 보고 철저
- ▶ **감염병 여부 판단**
 - 확진: 의료기관 진단서, 방역기관 통보공문, 건강검사 결과서 등으로 확인된 경우
 - 의심: 병의원, 방역기관 등에서 의심환자로 확인된 경우
- ▶ ***보건소 신고 대상** 감염병의 경우 나이스(NEIS) 보고 전 반드시 보건소에 환자 현황 확인
 - 신고 체계: 초·중·고·특수학교 ➡ 관할 보건소
 - 신고 방법: 유선 및 나이스(NEIS)와 업무관리시스템 연계된 전자문서 활용
 - 교내 신규 발생 환자, 전학·전입 등으로 학생 및 교직원 환자가 교내 유입되었을 경우 관할 보건소 신고, 업무협조를 통한 환자 관리 강화

○ **감염병 발생 통계 분석을 통한 유행 감시 철저**

-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및 지역 내 감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 상황 발생 시 지역 보건당국 등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 공동 대응으로 학교 내 유입 및 확산 차단

6) 학교 내 결핵 예방 및 관리 강화

- 학교 내 결핵 발생 시 방역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 ※ 필요시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결핵 관련 설명회 개최
- 기숙사 운영학교의 경우 입소 학생 중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학교 내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한 결핵 검진 안내 및 예방교육 실시 권고(2025 국가결핵관리지침 p.294 참고)

2025 국가결핵관리지침 내 기숙사 입소 학생 결핵 검진 주요 내용

- ▲ 학교 기숙사 입소 학생(입소 예정 포함)은 연 1회(입소 시) 결핵 검진을 받도록 권고, 기숙사 입소 시 결핵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입소 중 빠른 시일 내 실시(보건소와 협의)
- ▲ 이후 연 1회 흉부X선 검사 실시
 - ※ 학교보건법에 따른 결핵 검진(흉부X선 검사)을 실시한 경우 중복 검사 필요 없음

※ 입소 학생이 보건소에서 무료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입소 전 해당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보건소 사정에 따라 무료 검진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관할 보건소에 확인 후 안내)

○ 교직원 등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 근거: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 및 제34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 대상: 각급학교 교직원 및 종사자*
 - 검진 이력이 없는 교직원 및 종사자가 학교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인사발령 등) 검사필요
 - * 고용의 형태(직·간접)와 무관하게 학교장의 지휘·감독하에 해당 학교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외부기관 파견강사 등 학교의 장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학교장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실시 대상, 보건복지부 Q&A)
 - *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검진을 받은 것으로 같음
- 검진 주기: 결핵검진 **매년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 **재직기간 중 1회**
 - 신규 채용자(교직원 및 종사자):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 6개월 이상 휴직·파견 후 복귀자: 복귀일로부터 1개월 이내(결핵검진)
- 검진 미준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학교의 장)
- 결핵검진, 치료 등 적극적인 참여,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결핵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적극 노력

7) 예방접종을 통한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연계된 나이스-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 ※ 25.3월 중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관련 별도 안내
-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력 확인기간 종료 후에도 예방접종 미실시 학생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학부모에게 지속 안내
-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 NEIS에 접종관련 기록누락, 입력착오 등의 사항이 없는지 확인 후 정정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학교 내 확산방지 노력
 - 정부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 적극 홍보
- 보건소 등 방역당국과의 협조하에 학생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학부모에게 안내
- 학교 내 예방접종 또는 학교단위 단체 예방접종은 금지하고, 방역당국 주관 예방접종 시에도 사전예진을 철저히 하여 부작용 방지

8)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공립)에서는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교육(법정의무) 실시 또는 안내 및 이수 결과 제출(제출 방법은 별도 안내)
 - ※ 사립학교는 학교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이수 권장
 - ※ 전라남도교육연수포털, 중앙교육연수원 등 법정의무연수 및 감염병 교육(1차시) 원격 과정 운영
-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학교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실시(연 1회 이상)
- 각급학교에서는 학교 내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한 자체 모의훈련 실시(연 1회 이상)
-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업무 담당교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교육(지원)청 주관의 연수 및 컨설팅 추진

9) 방역기관과 협조체계 강화

- 보건당국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정보공유
-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교, 보건소(의료기관) 관계자, 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 예방 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 내 감염병 발생 정보공유 및 확산징후 발견 시 조기차단 대책 수립

-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 보건소와 협조하여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등 추진

■ 협조사항

-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및 자체 대응체계 구축 운영
- 학교에서는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연간 4시간 이상)
- 감염병 발생 시 지체 없이 NEIS 보고
-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및 지역 내 감염병 발생 현황 감시체계 철저
- 방역물품(체온계, 마스크, 손 소독제 등) 확보
 - 학교에서는 2학기 시작 전 방역물품 비축현황을 파악하여 부족한 물품 확보
 - 교육지원청에서는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여 방역물품 비축 및 관내 학교 지원
-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서는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대상 감염병 교육(법매년 1시간 이상) 실시 또는 안내
-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서는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실시(연 1회 이상)
- 학교에서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교직원 등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철저
- 인플루엔자 학령기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안내 및 지원 적극 홍보

■ 보고사항

-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 보고 서식 [서식 9]

■ 참고자료

- [참고자료 7] 법정 감염병의 분류체계 및 신고시기
- [참고자료 8]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대응 단계
- [참고자료 9] 나이스(NEIS)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 관리
- [참고자료 10] 학교 방역물품 비축 모형
- [참고자료 11] 주요 감염병별 역학적 특성과 관리 방안
- [참고자료 12] 학교 등교중지 및 출석 인정 근거 법령
- [참고자료 13] 학교 내 결핵관리 지침

5 요보호 학생 관리

가. 목적

- 학기초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건강문제를 가진 학생을 파악하고, 보건교육과 정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해 요보호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 도모 및 응급상황 발생 사전 예방

나. 세부내용

1) 학교 내 요보호 학생 파악

- 학년초 가정통신문을 통한 전교생 건강실태조사 실시
- 요보호학생 조사 범위(예시)
 -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신체가 허약하여 학교 교육활동 중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학생
 - 만성 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 기타 학교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2) 요보호 학생 관리 강화

- 건강실태조사서, 각종 건강검사 실시 결과, 기타 보건실 방문 학생 건강상담 및 보호자 상담(유선 포함)을 통하여 요보호 학생 선별
 - 선별한 학급별 요보호 학생 명단을 토대로 건강상담(개별상담, 학부모 상담, 전화 상담 등) 실시
 - (예시) 병력, 건강문제, 진료병원, 응급 시 연락처, 투약 관련 내용, 학교 중점 관리사항, 특이사항 등
 - 건강상담록에 기록 및 건강이상자 관리카드 작성·관리
 - 요보호 학생에 대한 교직원 공유 및 관리
 - 학교 교육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직원에게 요보호 학생 명단 공유
 - 학생의 건강상태 및 지도 시 주의사항, 관찰사항 등 안내
 - 특별한 상황(수련활동, 체육활동,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전 담임교사에게 요보호 학생에 대한 관리 재안내
- ※ 교직원은 요보호 학생 명단이 학생과 외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협조사항

- 학년 초 요보호 학생을 파악하여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
 - 저소득 난치병 학생의 경우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건강실태조사서는 학생 상담시 1년간 활용 후 폐기

■ 참고자료

- 희귀난치성 질환 정보: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s://helpline.kdca.go.kr>]

6 학생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가. 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 회복 및 안정된 학교생활 도모
-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생 성조숙증을 예방 및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관리대책 마련으로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나. 근거

- 「학교보건법」 제7조의2, 제9조
- 「전라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2021. 10. 28. 제정)
-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2023. 12. 21. 제정)

다. 현황

1) 2024년 난치병 학생 현황

난치병명	난치병 학생수(명)				비고
	초	중	고	계	
심장질환	157	45	42	244	
백혈병	18	9	9	36	
종양	17	14	20	51	
신장질환	51	18	18	87	
뇌질환	152	69	67	288	
기타	183	59	85	327	
계	578	214	241	1,033	

2) 최근 3년간 저소득 학생 의료비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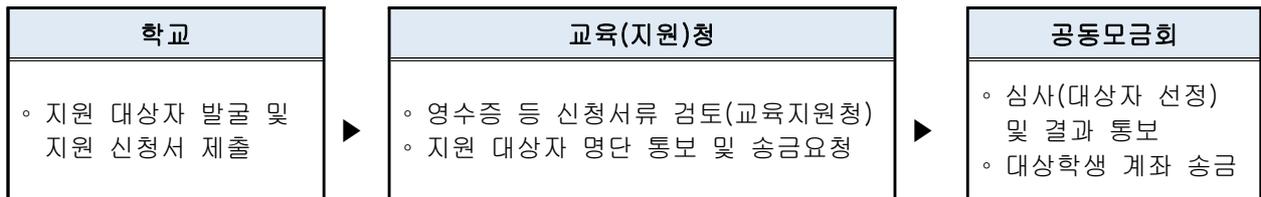
(단위: 명,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학생수	지원액	학생수	지원액	학생수	지원액
전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주관	저소득 의료비	27	92,670	36	95,831	22	91,901
	우리도교육청 주관	난치병 의료비	7	20,000	11	20,000	15
	심장병 의료비	-	-	3	2,013	-	-
계		34	112,670	50	117,844	37	121,901

3) 학생 성조숙증 검사비 지원 현황: 700명, 68,131천원('24년 신규사업)

라. 세부내용

- 1)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적극 홍보
 - 대상 학생들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교직원 회의 시간 등 활용하여 사업 홍보
 - 교육지원청에서는 홈페이지 및 학교장 회의 시 적극 안내
 - 정부등록 난치성 질환: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s://helpline.kdca.go.kr>) 참조
- 2) 병원 연계 무료진료 및 수술 사업 대상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3) 전라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저소득 학생 의료비 지원사업(별도 안내)
 - 지원시기: 11월중
 - 지원대상: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저소득 세대의 학생(원아) 중 우리 도내 거주자(주민등록상 등재)
 - 지원금액: 본인부담 의료비(1인 연간 5백만원 이내)
 - * 가정의 소득수준 및 학생 상태 등에 따라 추가 지원 필요시 심사위원회 판단하에 생계비 등 한도액 초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대상자 추천(학교) → 서류검토 및 제출(교육지원청, 도교육청) → 심사위원회(공동모금회) → 대상자 선정 및 의료비 지원(공동모금회)



4) 우리도교육청 주관 의료비 지원사업(별도 안내)

구분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심장병 학생 의료비 지원
지원시기	12월중	12월중
지원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 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	
신청범위	정부등록 난치성 질환, 암 또는 중증 심·뇌혈관계 질환 (1형당뇨 포함) 등	심장질환
지원금액	본인부담 의료비 (1인당 재학기간 동안 1천만원 이내)	본인부담 의료비 (1인당 연간 5백만원 이내)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은 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5)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 학교에서는 학생 성조숙증 예방을 위해 비만과 연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가정에서 성조숙증을 예방 및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 제공(가정통신 등)
 - 가정에서 학생의 성장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유증상 등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받을 수 있도록 안내
 - * 질환 특성상 검사 시기에 따라 결과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과를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 안내
- 성조숙증 학생에 대한 건강상담 등 관리
- 성조숙증의 주요 원인이 비만이고, 잘못된 식습관이나 운동 및 수면 부족 등도 영향을 미치므로 비만 및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 신체활동 확대, 생활습관 및 식습관 개선 등 지도
 - 적절한 수면, 바른 자세 등 교육 홍보
- 학생 성조숙증 검사비 지원사업은 '25년 하반기 별도 안내

■ 협조사항

- 저소득 학생 의료비 지원사업 적극 홍보
 -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교직원 협의회 시간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 (교육지원청) 학교장 회의 시 적극 안내
-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 예방교육 및 홍보, 건강상담, 학부모 안내, 검사비 지원 대상자 발굴 등
 - 검사비 지원사업 시행('24년~)에 따라, 성조숙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무분별하게 검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학생에게만 검사 안내

■ 보고사항

- 난치병 학생 현황 [서식 8, 서식 8-1]

■ 참고자료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 [<https://helpline.kdca.go.kr>]

Ⅲ. 제출 사항

2025년 사업별 제출내용 및 서식



제출내용 및 서식



연번	제출명	제출기한		제출서식	비고
		학교(초중고특)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1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12. 1.	12. 8.	서식 1 서식 1-1	
2	보건교육 실시 현황	12. 1.	12. 8.	서식 2 서식 2-1	
3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	12. 1.	12. 8.	서식 3 서식 3-1	
4	제1형 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현황	4. 21.	4. 24.	서식 4 서식 4-1	
5	학교 보건실(보건교육실) 설치 현황	5. 9.	5. 14.	서식 5 서식 5-1	
6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11. 7.	11. 14.	서식 6 서식 6-1	
7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8. 21.	8. 25.	서식 7	NEIS
8	난치병 학생 현황	4. 4.	4. 11.	서식 8 서식 8-1	
9	[감염병명]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 보고	사안 발생 즉시			NEIS (서면)
10	표본학급 학생건강검사 통계 (신체발달상황, 건강조사, 건강검진)	9. 30.	10. 2.		NEIS

※ 보고서항 제출 시 각급학교에서는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으로 제출

※ 교육지원청에서는 각급학교의 NEIS 보고 및 각종 제출현황 검토 후 도교육청 제출

<서식 1호> 교육지원청용 (※ 엑셀서식으로 보고)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현황

OO교육지원청

1. 예방교육 실시학교

(단위 : 교)

구분	전체 학교수					교육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각종	초	중	고	특수	각종
마약류										
흡연예방										
음주예방										
기타 약물 오남용 예방										
건강한 체중관리 (저체중, 비만예방)										
구강관리										
감염병 예방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청 조치실적

○ (조치일자 및 조치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2.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학교급	학교수 (교)	마약류 단독 주제 예방교육 연간 실시 시간별 학교수(교)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연간 실시 시간별 학교수(교)			
		1~2시간	3~4시간	5시간 이상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상
초								
중								
고								
특								
각종								
계								

*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마약류 예방 단독 주제의 교육, 마약류가 포함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유해약물 예방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실시시간: 유·초 5시간, 중 6시간, 고 7시간 이상 실시

*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실시시간에 표기한 학교는 반드시 마약류 단독 주제 예방교육 실시 시간에도 표기해야 함

<서식 1-1호> 학교용 (※ 엑셀서식으로 보고)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현황

OO학교

1.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학교

구분	실시	미실시	비고
마약류			
흡연예방			
음주예방			
기타 약물 오남용 예방			
건강한 체중관리 (저체중, 비만예방)			
구강관리			
감염병 예방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2.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학교급	학교명	마약류 단독 주제 예방교육 연간 실시 시간별 학교수(교)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연간 실시 시간별 학교수(교)			
		1~2시간	3~4시간	5시간 이상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상
초								
중								
고								
특								
각종								

- *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마약류 예방 단독 주제의 교육, 마약류가 포함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유해약물 예방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 *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실시시간: 유·초 5시간, 중 6시간, 고 7시간 이상 실시
- *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실시시간에 표기한 학교는 반드시 마약류 단독 주제 예방교육 실시 시간에도 표기해야 함

<서식 2호> 교육지원청용 (※ 엑셀서식으로 보고)

보건교육 실시 현황

OO교육지원청

1. 보건교육 실시 현황

구분	학교급별	전체 학교수	보건교사 배치 학교수	보건과목 선택 학교수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수업 현황							최소 1개학년 17차시 이상 실시학교수 ①	
					학급당 평균 보건수업 시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평균		
교육지원청명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각종												
계													

① 최소 1개 학년 이상(초등학교 5,6학년 권장)을 대상으로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차시 이상(고등학교 16차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수

2. '보건' 과목 선택 학교 명단

학교급	학교명	학급수	비고

<서식 2-1호> 학교용 (※ 엑셀서식으로 보고)

보건교육 실시 현황

OO학교

1. 보건교육 실시 현황

학교급	학교명	보건교사 배치여부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수업 현황						최소 1개학년 17차시 이상 실시 여부② (해당란에 “1” 로 표기)		
			학급당 보건수업 시수① (해당학년 보건수업 총시수÷해당학년 학급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실시	미실시	
초		배치, 미배치									
중											
고											
특수			초								
			중								
			고								
각종											

- ① 보건교사에 의한 학급당 보건수업 시수: 보건교사가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한 연평균 학급당 보건수업 평균 시수
예) 5학년 3학급이 17차시씩 운영한 경우 “17” 로 기재(3×17/3=17)
- ② 정규교육과정에서 1개 학년 이상 연간 17차시 이상(고등학교 16차시 이상) 보건교육 실시 여부

2. '보건' 과목 선택현황

학교급	학교명	학급수	'보건'과목 선택여부 (해당란에 “1” 로 표기)		비고
			선택	미선택	

* 창체시간 이외의 선택(교양) 과목 운영학교

<서식 3호> 교육지원청용 (※ 엑셀서식으로 보고)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

OO교육지원청

□ 학생 교육 실시현황

1. 교육 실시현황 (단위: 교)

구분	전체 학교수	교육 실시 학교수	교육 미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각종			

* 분교는 본교에 포함하여 집계

2. 실습을 포함한 교육실시 학년 현황 (단위: 교)

※ 중복표기 가능. 해당란에 “1” 로 표기

구분	전체 학교수	실습교육 실시학교수	실습교육 실시 학년						미실시 학교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초									
중						/	/	/	
고						/	/	/	
각종						/	/	/	

* 최소 1개 학년 이상은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적으로 실시(특수학교 제외)

3. 교육실시자(강사) 현황 (단위: 교)

※ 중복표기 가능. 해당란에 “1” 로 표기

구분	보건(담당)교사	담임교사	체육교사	기타 교직원	외부강사	미실시	비고
초							
중							
고							
특수							
각종							

□ 교직원 교육 실시현황

1. 교육 이수자 현황

(단위: 교, 명)

구분	전체 학교수	교육실시 학교수	교육대상 인원1)	교육이수 인원2)	미이수 인원	미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각종						

- 1) 매 학년도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대상에 포함한 인원/ 전출 및 휴직 등의 사유로 교육결과 제출시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교직원은 교육대상 인원에서 제외
- 2) 교육계획에 포함된 교육대상 중 실제 교육을 이수한 교직원의 수 / 교육계획 수립 이후 전입, 복직한 교직원의 이수실적은 포함하지 않음

2. 학교 내 자체교육 실시 현황

※ 중복표기 가능. 해당란에 “1” 로 표기

(단위: 교)

구분	학교 내 자체교육 실시 학교수	학교 내부 강사활용 학교			외부기관 강사 초빙 학교		
		보건(담당)교사	체육교사	기타 교직원	소방서 등 공공기관 소속	민간기관 소속	기타 (개인활동 강사 등)
초							
중							
고							
특수							
각종							

※ 외부기관 위탁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대상

3. 외부기관 위탁실시 현황

※ 중복표기 가능. 해당란에 “1” 로 표기

(단위: 교)

구분	외부기관 위탁교육 실시 학교수	외부기관 주관				
		교육(지원)청 (연수원 포함)	공공기관	의료기관	대학	민관기관 등
초						
중						
고						
특수						
각종						

※ 학교 내 자체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대상

<서식 3-1호> 학교용 (※ 엑셀서식으로 보고)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

OO학교

□ 학생 교육 실시현황

1. 교육실시 현황

※ 해당란에 “1” 로 표기

급별	학교명	교육실시	교육 미실시

* 분교는 본교에 포함하여 집계

2. 실습을 포함한 교육실시 학년 현황

※ 중복표기 가능. 해당란에 “1” 로 표기

급별	학교명	실습교육 실시 학년						비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 최소 1개 학년 이상은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적으로 실시(특수학교 제외)

3. 교육실시자(강사) 현황

※ 중복표기 가능. 해당란에 “1” 로 표기

급별	학교명	보건(담당)교사	담임교사	체육교사	기타 교직원	외부강사	비고

□ **교직원 교육 실시현황**

1. **교육이수자 현황** (단위: 명)

급별	학교명	교육대상 인원1)	교육이수 인원2)	미이수 인원	비고

- 1) 매 학년도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대상에 포함한 인원/ 전출 및 휴직 등의 사유로 교육결과 제출시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교직원은 교육대상 인원에서 제외
- 2) 교육계획에 포함된 교육대상 중 실제 교육을 이수한 교직원의 수 / 교육계획 수립 이후 전입, 복직 한 교직원의 이수실적은 포함하지 않음

2. **학교 내 자체교육 실시 현황** ※ 중복표기 가능. 해당란에 “1” 로 표기 (단위: 교)

급별	학교명	학교 내부 강사활용 학교			외부기관 강사 초빙 학교		
		보건(담당)교사	체육교사	기타 교직원	소방서 등 공공기관 소속	민간기관 소속	기타 (개인활동 강사 등)

※ 외부기관 위탁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3. **외부기관 위탁실시 현황** ※ 중복표기 가능. 해당란에 “1” 로 표기 (단위: 교)

급별	학교명	외부기관 주관				
		교육(지원)청 (연수원 포함)	공공기관	의료기관	대학	민관기관 등

※ 학교 내 자체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서식 4호> 교육지원청용 (※ 엑셀서식으로 보고)

제1형 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OO교육지원청

□ 당뇨 학생 재학 및 지원현황 (25. 4. 1. 기준)

1. 재학 현황

(단위: 교, 명)

구분	전체 학교수	제1형 당뇨 학생 재학현황		보건교사 미배치교 재학 현황*	
		재학 학교수	재학 학생수	재학 학교수	재학 학생수
초					
중					
고					
특					
각종					

*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 재학 중인 제1형 당뇨 학생 현황

2. 학교의 지원현황

○ 전체현황

(단위: 명)

구분	제1형 당뇨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초			
중			
고			
특			
각종			

※ 어느 형태든 학교의 지원을 받거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는 모두 포함, 지원 항목은 아래의 지원 항목별 설명 참조

< 지원 항목 >

- 1) 직접주사: 보건교사가 인슐린 주사를 직접 투약
- 2) 주사보조: 학생이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때 주사행위 지도
- 3) 투약장소 제공: 보건실 등 별도 공간에서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
- 4) 혈당체크: 보건교사 등이 직접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해 줌
- 5) 인슐린보관: 학교에서 인슐린을 보관하여 줌
- 6) 글루카곤 보관: 학교에서 글루카곤을 보관하여 줌

○ 학교급별, 지원항목 (* 중복표기)

－ 초등학교

(단위: 명)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 중학교

(단위: 명)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 고등학교

(단위: 명)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 혈당관리기기 보유 현황

학교급	학교명	보건교사 배치 여부 (배치, 미배치)	제1형 당뇨 학생수	혈당관리기기 보유 대수	비고
초					
중					
고					
특					
각종					

□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현황** (‘25. 4. 1. 기준)

1. **희귀난치성 질환 현황**

○ 재학현황

(단위: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재학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2. **석션(기도흡인)**

(단위: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재학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3. **인공도뇨**

(단위: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재학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서식 4-1호> 학교용 (※ 엑셀서식으로 보고)

제1형 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00학교

당뇨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25. 4. 1. 기준)

1. 재학 현황

(단위: 명)

학교명	보건교사 배치교 * 제1형 당뇨 재학 학생수	보건교사 미배치교 제1형 당뇨 재학 학생수

* 기간제 보건교사 포함

2. 학교의 지원현황

전체현황

(단위: 명)

학교명	제1형 당뇨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 어느 형태든 학교의 지원을 받거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는 모두 포함, 지원 항목은 아래의 지원 항목별 설명 참조

< 지원 항목 >

- 1) 직접주사: 보건교사가 인슐린 주사를 직접 투약
- 2) 주사보조: 학생이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때 주사행위 지도
- 3) 투약장소 제공: 보건실 등 별도 공간에서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
- 4) 혈당체크: 보건교사 등이 직접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해 줌
- 5) 인슐린보관: 학교에서 인슐린을 보관하여 줌
- 6) 글루카곤 보관: 학교에서 글루카곤을 보관하여 줌

○ 지원 항목(※ 중복표기)

(단위: 명)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 혈당관리기기 보유 현황

학교급	학교명	보건교사 배치 여부 (배치, 미배치)	제1형 당뇨 학생수	혈당관리기기 보유 대수	비고

□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현황** (‘25. 4. 1. 기준)

1. **희귀난치성 질환 현황**

○ 재학현황 (단위: 명)

학교명	희귀난치성 재학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2. **석션(기도흡인)**

(단위: 명)

학교명	석션(기도흡인) 재학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3. **인공도뇨**

(단위: 명)

학교명	인공도뇨 재학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서식 5호> 교육지원청용 (※ 엑셀서식으로 보고)

학교 보건실(보건교육실) 설치 현황

OO교육지원청

1. 학교 보건실 설치 현황

교육 지원청명	학교 급별	전 체 학교수	남녀공학 학교		보건실 면적(학교수)						독립된 보건교육실 설치 학교수	
			학교수	안정실 남녀 구분된 학교수	교실 1실	교실 1/2실	교실 1/3실	기 타	다른 교실과 겸용	계		
	초											
	중											
	고											
	특											
	계											

※ 통합운영학교는 상급 학교급에 작성

※ 2023년부터 “보건실 현대화 사업” 이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남녀공학 학교의
안정실 남녀 구분 여부 작성 추가

- 초·중·고·특 모두 표기, 남녀공학이 아닌 학교는 해당없음

※ 교실 1실: 66㎡ 또는 보통교실 1실, 기타: 교실 외 별도 공간(숙직실 등)

※ 다른 교실과 겸용: 칸막이 구분 없이 다른 교실과 공동 이용하는 보건실

※ 독립된 보건교육실: 보건교육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보건교육실

1-1. 학교 보건실 다른 교실과 겸용 사용교 단독 보건실 설치 계획

교육 지원청명	학교명	현재 보건실 설치 형태	단독 보건실 확보 예정일	미확보 사유	비고

※ 보건실 설치 형태: ○○실 겸용 등으로 구분 기재

※ 미확보 사유: 단독 보건실 확보 계획이 없는 학교 사유 기재

2. 학교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 충족 현황

※ 보건교사 배치교: 필수 37종 / 보건교사 미배치교: 필수 27종 해당

교육 지원청명	학교 급 별	전 체 학교수	보건교사 배치교			보건교사 미배치교		
			배 치 학교수	총 족 학교수	미충족 학교수	미배치 학교수	총 족 학교수	미충족 학교수
	초							
	중							
	고							
	특							
	계							

※ 『전라남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참조

2-1. 학교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 미충족 학교 확충 계획

교육 지원청명	학교명	보건교사 배치유무	미충족 항목수	미충족 기구명	충족 조치계획 (2025년)	비고
		유, 무		* 참고자료4 품목명 기입	* 충족 계획일자 구체적으로 기입 예) 2025. 4월	

※ 학교에서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달되는 품목에 대하여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25. 4. 30.까지 보완

※ 보고일 현재 미충족 학교의 학교 보건실 설비·기구 확충 계획 작성 제출

※ 보건교사 배 치 교: 총 57종(필수 37종, 권장 20종)[참고자료 4 참조]

※ 보건교사 미배치교: 총 57종(필수 27종, 권장 30종)

<서식 5-1호> 학교용 (※ 엑셀서식으로 보고)

학교 보건실(보건교육실) 설치 현황

00학교

1. 학교 보건실 설치 현황

학교명	남녀공학 학교		보건실 면적 (해당란에 “면적 기재”)					독립된 보건교육실 설치 여부 (○, X)
	해당 여부 (○, X)	안정실 남녀 구분 여부 (○, X)	교실 1실	교실 1/2실	교실 1/3실	기타	다른 교실과 겸용 *	
			00㎡	00㎡	00㎡	00㎡	교실명	

※ 2023년부터 “보건실 현대화 사업” 이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남녀공학 학교의
안정실 남녀 구분 여부 작성 추가

- 초·중·고·특 모두 표기, 남녀공학이 아닌 학교는 해당없음

※ 교실 1실: 66㎡ 또는 보통교실 1실

※ 기타: 교실 외 별도 공간(숙직실 등)

※ 다른 교실과 겸용: 칸막이 구분 없이 다른 교실과 공동 이용하는 보건실

※ 독립된 보건교육실: 보건교육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보건교육실

1-1. 학교 보건실 다른 교실과 겸용 사용교 단독 보건실 설치 계획

학교명	현재 보건실 설치 형태	단독 보건실 확보 예정일	미확보 사유	비고

※ 보건실 설치 형태: ○○실 겸용 등으로 구분 기재

※ 미확보 사유: 단독 보건실 확보 계획이 없는 학교 사유 기재

2. 학교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 충족 현황

※ 보건교사 배치교: 필수 37종, / 보건교사 미배치교: 필수 27종 해당

학교명	충족 현황(해당란에 "1")	
	충족	미충족

※ 2019. 12. 27. 『전라남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함(품목은 2025년 학생 건강증진 기본방향 참고자료 4 참고)

2-1. 학교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 미충족 학교 확충 계획

학교명	보건교사 배치유무	미충족 항목수	미충족 기구명	충족 조치계획 (2025년)	비고
	유, 무		* 참고자료4 품목명 기입	* 충족 계획일자 구체적으로 기입 예) 2025. 4월	

※ 학교에서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달되는 품목에 대하여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25. 4. 30.까지 보완

※ 보고일 현재 미충족 학교는 학교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 확충 계획 작성 제출

※ 보건교사 배치 교: 총 57종(필수 37종, 권장 20종)[참고자료 4 참조]

※ 보건교사 미배치교: 총 57종(필수 27종, 권장 30종)

<서식 6호> 교육지원청용 (※ 엑셀서식으로 보고)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OO교육지원청

1. 초1·4학년, 중,고1학년 건강검진 (신체발달상황, 구강검진 포함)

학교 급별	학년	전 체 학교수	건강검진 미실시 학교수	검진대상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남	여	남	여
초	1학년						
	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특	-						
합계							

※ 작성방법(특수학교는 초1, 4학년, 중·고 1학년, 행을 추가하여 작성)

* 보고일 현재 검진완료 학생 수를 기준으로 작성

- 학생수: 보고일 현재 당해학교 재학생 기준으로 작성(전출은 제외, 전입은 추가)

2. 초등학교 구강검진 실시현황

학년	전 체 학교수	미실시 학교수	성별	검진대상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구강검진 결과 학생 수		
						정상	치아우식증	부정교합
1			남					
			여					
			계					
:			남					
			여					
			계					
총계			남					
			여					
			계					

※ 작성대상: 초 1~6학년

※ 특수학교는 별지로 작성

3. 별도(소변)검사 현황

(단위: 명)

학 교 급 별	학 년	소변검사				비 고
		검사대상 인원	검사인원 (A)	정상인원 (B)	유소견자 (C)	
초						
중						
고						
특						
계						

※ 검사대상: 초2, 3, 5, 6학년, 중·고 2, 3학년, 특(초2, 3, 5, 6학년, 중·고 2, 3학년)

※ 검사인원(A) = 정상(B) + 유소견자(C)

4. 별도(시력)검사 현황

(단위: 명)

학 교 급 별	학 년	시력검사				비 고
		검사대상 인원	검사인원	정상인원	교정한학생	
초						
중						
특						
계						

※ 검사대상: 초 2, 3, 5, 6학년, 중 2, 3학년, 특(초 2, 3, 5, 6학년, 중 2, 3학년)

※ 정상: 양쪽 나안시력 모두 0.7 보다 높은 경우

※ 교정한 학생: 안경, 렌즈 등을 착용한 학생

5. 집단 결핵검사를 통한 결핵환자 발견 현황

(단위: 명)

학 교 급 별	학 년	결핵검사			비 고 (비용부담 주체)
		검사대상 인원	검사인원	결핵 학생수*	
중					
고					
특					
계					

* 결핵 학생수: 결핵확진 또는 의심되어 치료 중인(치료를 받은) 학생, 폐결핵에 한함

※ 검사대상: 중·고 1학년(건강검진), 고 2, 3학년[별도(결핵)검사], 특(중1, 고1~3학년)

※ 기숙사 입소 학생이 보건소 결핵검사를 받은 경우 누락되지 않도록 검사대상 및 검사인원에 포함

<서식 6-1호> 학교용 (※ 엑셀서식으로 보고)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OO학교

1. 초1·4학년, 중·고 1학년 건강검진 (신체발달상황, 구강검진포함)

학교명	학년	검진대상 학생 수		검진완료 학생 수	
		남	여	남	여
	1				
	4				
	계				

※ 작성방법(특수학교는 초1, 4학년, 중·고 1학년, 행추가하여 작성)

* 보고일 현재 검진완료 학생 수를 기준으로 작성

- 학생 수: 보고일 현재 당해학교 재학생 기준으로 작성(전출은 제외, 전입은 추가)

2. 초등학교 구강검진 실시현황

학교명	학년	성별	검진대상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구강검진 결과 학생 수		
					정상	치아우식증	부정교합
	1	남					
		여					
		계					
	2	남					
		여					
		계					
	3	남					
		여					
		계					
	⋮	남					
		여					
		계					
	계	남					
		여					
		계					

※ 작성대상: 초1~6학년

3. 별도(소변)검사 현황

(단위: 명)

학교명	학년	소변검사				비고
		검사대상 인원	검사인원 (A)	정상인원 (B)	유소견자 (C)	
	2					
	3					
	5					
	6					
	계					

※ 검사대상: 초2, 3, 5, 6학년, 중·고 2, 3학년, 특(초2, 3, 5, 6학년, 중·고 2, 3학년)

※ 검사인원(A) = 정상(B) + 유소견자(C)

4. 별도(시력)검사 현황

(단위: 명)

학교명	학년	시력검사				비고
		검사대상 인원	검사인원	정상인원	교정한학생	
	2					
	3					
	5					
	6					
	계					

※ 검사대상: 초2, 3, 5, 6학년, 중 2, 3학년, 특(초2, 3, 5, 6학년, 중 2, 3학년)

※ 정상: 양쪽 나안시력 모두 0.7 보다 높은 경우

※ 교정한 학생: 안경, 렌즈 등을 착용한 학생

5. 집단결핵검사를 통한 결핵환자 발견 현황

(단위: 명)

학교명	학년	결핵검사			비고 (비용부담 주체)
		검사대상 인원	검사인원	결핵 학생수*	
	1				
	2				
	3				
	계				

※ *결핵 학생수: 결핵확진 또는 의심되어 치료 중인(치료를 받은) 학생, 폐결핵에 한함

※ 검사대상: 중·고 1학년(건강검진), 고 2, 3학년[별도(결핵)검사], 특(중1, 고1~3학년)

※ 기숙사 입소 학생이 보건소 결핵검사를 받은 경우 누락되지 않도록 검사대상 및 검사인원에 포함

※ 비용부담 주체: 학교(건강검진), 교육지원청(별도검사), 기타(보건소 등 구체적으로 기재)

<서식 7호> 교육지원청용, 학교용 (※ NEIS로 보고)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학년도		
<input type="checkbox"/> 초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고

기관명 :

구 분		성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키 평균 (cm)		남자						
		여자						
몸무게 평균 (kg)		남자						
		여자						
비만율	저체중 (%)	남자	()	()	()	()	()	()
		여자	()	()	()	()	()	()
	정 상 (%)	남자	()	()	()	()	()	()
		여자	()	()	()	()	()	()
	과체중 (%)	남자	()	()	()	()	()	()
		여자	()	()	()	()	()	()
비 만 (%)	남자	()	()	()	()	()	()	
	여자	()	()	()	()	()	()	
수검자 인원 (명)		남자						
		여자						
		계						

※ 작성대상: 모든 학년(초 1~6학년, 중·고 1~3학년)

※ 작성방법

- 초·중·고등학교별로 각각 작성
- 키·몸무게 평균: 성별·학년별 수검자의 키·몸무게를 평균한 값,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 (계산한 값이 소수 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비만율: 성별·학년별 수검자 인원 대비 저체중·정상·과체중 및 비만인 수검자 인원의 비율,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 ()는 해당 성별학년별 수검자 인원 작성

※ 제출방법: NEIS(보건 → 학생건강검사관리 → 통계관리 → 신체발달통계생성 → 담당자명 및 연락처 입력 → 교육청 전송)

<서식 8호> 교육지원청용 (※ 엑셀서식으로 보고)

난치병 학생 현황

OO교육지원청

1. 총괄

구분 병명	난치병 학생수	치 료 현 황			저소득 가구 해당 학생수	비고
		입원	통원	기타		
심장질환						
백혈병						
종양						
신장질환						
뇌질환						
아나필락시스						
기타						
계						

※ 작성요령

1. 총괄표: 초, 중, 고, 특 별지로 작성
2. 치료현황: 보고일 현재 치료 상태(입원, 통원, 기타)
3. 저소득 가구 해당 학생수: 저소득 가구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수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
4. 난치병 학생수 = 치료현황 합계(입원+통원+기타)

<서식 8-1호> 학교용 (※ 엑셀서식으로 보고)

난치병 학생 현황

OO학교

학교명	급별	질환분류	난치병 학생수	치료현황			저소득 가구 해당 학생수	비고
				입원	통원	기타		
		심장질환						
		백혈병						
		종양						
		신장질환						
		뇌질환						
		아나필락시스						
		기타						

※ 작성요령

1. 급 별: 초, 중, 고, 특으로구분
2. 치료현황: 보고일 현재 치료 상태(입원, 통원)
3. 저소득 가구 해당 학생수: 저소득 가구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수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
4. 난치병 학생수 = 치료현황 합계(입원+통원+기타)

<서식 9호>

[감염병명]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 보고

< '25. 00. 00(), 00교육지원청 >
< '25. 00. 00(), 00학교 >

- ◆ 보고 대상: 학생, 교직원 환자 (의심 포함)
- ◆ 보고 시기
 - 감염병 발생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우
 - 교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긴급 방역조치, 언론보도 등의 특이사항 발생 시 (법정 비 법정 구분 없이 모든 감염병 대상)
- ◆ 보고 방법: 유선으로 보고 후 서면보고
- ◆ 보고 체계: 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학교 현황

학교명	소재지	학교 규모		담당자 (성명/연락처)		비고
		학생수	교직원수	학교	교육지원청	

□ 감염병 발생 및 역학조사 현황

(※작성 예시, 보고 내용 및 서식은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역학조사 실시일	감염병 명	발견 근거	발생인원			나이스 보고일**	보건소 신고일**	다음 역학조사일
			환자수	직업	학년/반 (인원수)*			
'00.1.10	결핵	건강검진 별도검사	1	학생	2-1(1)	'00.1.3	'00.1.3	'20.1.25
'00.1.12	백일해	개별검진	30	학생	1-1(10)	'00.1.3 / '00.1.11	'00.1.11	미정
'00.2.22	결핵	개별검진	1	교원	2-3 담임(1)	해당없음	'00.2.21	미정

* 교직원의 경우 직급, 담임여부, 교과목 등을 기재

** 동일 감염병에 대하여 반복하여 보고(신고)한 경우 최초 보고(신고)일과 최종 보고(신고)일을 기재

□ 역학조사 결과보고

(※ 작성 예시, 보고 내용 및 서식은 역학조사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역학조사 실시일	조사 단계 (최초/중간/최종)	조사자 현황			조사결과	비고 (또는 조치사항)
		직업	학년/반	조사인원		
'00.1.10	최초	학생	2-1	30	결핵 : 0명 잠복결핵감염 : 3명	지표환자가 속한 반
		학생	3-1	3	결핵 : 0명 잠복결핵감염 : 1명	지표환자와 같은 동아리 소속
		교원	2-1 담임	1	결핵(의심) : 0명 잠복결핵감염 : 0명	지표환자 담임
'00.1.12	중간	학생	학생	1-1(15) 3-1(2) 4-1(1)	'20.1.3. / '20.1.11.	백일해 환자가 발생한 학급 백일해 환자의 형제 자매
'00.2.22	최초	학생	2-3	24	결핵 : 0명 잠복결핵감염 : 3명	지표환자의 학급 학생

□ 기타 특이사항

- (학부모 설명회 개최, 민원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언론취재 상황

- (취재일, 취재언론사, 취재내용, 언론사에 대응한 담당자 등 기재)

IV. 참고자료

1.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2. 응급환자 관리체계
3. 보건실 현대화 유형 도면 및 레이아웃
4. 전라남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5. 2025년 학생 건강검사 실시 계획
6.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7. 법정 감염병의 분류체계 및 신고시기
8.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대응 단계
9. 나이스(NEIS)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 관리
10. 학교 방역물품 비축 모형
11. 주요 감염병별 역학적 특성과 관리 방안
12. 학교 등교중지 및 출석 인정 근거 법령
13. 학교 내 결핵 관리 지침

1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 학교 보건실에서의 의약(외)품 사용

- 약사(藥師)가 아닌 자에 의한 약사(藥事) 업무 수행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의 직무(의료행위)
- 학교보건실에서는 의약품 조제가 불가하며 일반의약(외)품만 사용
 - 『약사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3조제5호

□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구입

-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 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는 바, 학교 약품은 일반 약국에서 구입 불가
- 「약사법」 제2조(정의), 「학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보건교사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도매업자)로 해석 가능(보건복지부 2006 질의 회신)하므로, 보건교사는 보건실 약품을 도매업자에게 구입해야 함

□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등

-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보관
 -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분류하여 보관하고, 냉장 보관 시에는 의약(외)품 이외의 것과 분리하여 보관
- 의약(외)품 사용 및 보관 기준 준수
 - 의약품 보관 용기 또는 첨부문서에 명기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 등을 준수
 - ※ 온·습도 조절, 직사광선 차단 등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 의약품의 안전관리,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보관·관리 철저
 - 의약품 투여 시 부작용에 대해 숙지하고, 사전에 알레르기 유무 파악
 - 약품은 소모품으로 별도의 수불 장부를 작성할 필요 없음
 -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조례』 제24조
-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아니할 것
 - 개봉한 경우 유효기간을 별도 표기하여 사용할 것

< 응급환자 대책반 > (예시)



3) 응급환자 관리를 위한 교직원 역할

구분	환자상태가 위급하거나 중한 외상이 있는 경우	환자상태가 위급하지는 않으나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	
상황	의식장애 · 호흡곤란 · 약한맥박 · 심정지 · 다량 출혈 · 개방골절 ·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등	단순외상 · 단순골절 · 고열 등으로 의료 기관에서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절차 및 업무 분담	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총괄 ◆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교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파악 및 지시 · 보고 등 ◆ 위기상황 처리에 필요한 조치 ◆ 대체 인력 배정 	
	보건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처치 ◆ 담임교사에게 통보 ◆ 병원 이송 시 동행 ◆ 관리자에게 처치 현황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처치 ◆ 담임교사에게 통보 ◆ 학생 처치 결과 학부모 상담 ◆ 관리자에게 처치 현황 보고
	담임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연락 ◆ 관리자에게 사고경위 보고 ◆ 환자 병원 이송 ◆ 치료 후 보상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연락 ◆ 학생 병원이송 안내 및 조치 ◆ 필요시 병원 이송 ◆ 관리자에게 사고경위 보고 ◆ 치료 후 보상 안내
	생활지도 학년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서 및 생활지도 ◆ 학년 수업 결손 방지 지원 	
	이송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게 병원 이송 ◆ 응급처치 자는 차량운전하지 않도록 함 	
	행정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보상 및 제반 서류의 작성 등에 대해 협조 ◆ 병원 이송교사 등의 출장처리와 비용 청구 등에 관한 사항 처리 	
	보건실업무 대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교사 응급환자 후송으로 인한 부재 시 보건실 업무 대행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사고 기록지 작성 ◆ 사건 날짜, 시간, 장소, 사고현황, 환자상태, 응급처치내용 등을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록 		

4) 응급환자 신고 및 보고체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최초발견자</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 담임교사 ⇨ 학부모, 교감 ⇨ 교장 ↘ 보건교사 </div> </div>
--

1. 최초발견자는 보건교사와 담임교사에게 연락

- ☞ 응급환자 최초발견자는 일차적으로 ‘보건교사’와 담임교사에게 연락
- ☞ 보건교사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관리, 초기 상황을 보건교사에게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 ☞ 발견 시 환자 상태가 심정지, 호흡,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요청 및 심폐소생술 실시

2. 보건교사는 응급환자 관리체계 가동

- ☞ 보건교사는 응급환자 관리체계 가동
- ☞ 보건교사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조치하고, 상태여부에 따라 신속한 응급구조 요청
- ※ 심폐소생술 연수 이수교사는 보건교사를 도와 응급처치에 참여

3. 담임교사는 학부모에게 연락

- ☞ 담임교사는 응급상황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즉시 학교나 이송병원으로 오도록 하며 지속적인 연락을 취함

4. 담임교사(보건교사)는 교감(학교장)에게 상황보고 후 현장 보조

- ☞ 담임교사는 환자발생 상황에 대해 교감에게 보고하고, 교감은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역할분담, 인력지원 등 행정적 지원체계를 지휘하고, 학교장에게 상황을 보고
- ☞ 교감은 행정지원반에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고,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의 부재에 따른 조치
- ☞ 담임교사는 응급현장의 보건교사를 보조하고, 보호자 및 학교담당자와 연락을 유지하며 이송병원 및 환자상태 변화 등에 대해 상황 전달

5. 병원이송

- ☞ 구급차에 인계하여 환자 이송
- ☞ 담임교사는 의료기관까지 동행하여 학부모에게 인계 전까지 의료기관에서 보호자 역할을 대행
- ※ 환자 상태가 위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교사 동행

6. 병원이송까지의 과정 기록 및 보고

- ☞ 보건교사는 응급처치 상황을 응급환자 기록지에 따라 자세히 기록·보관
- ☞ 사고발생 최초발견교사(담임, 현장임장교사 등) 사안 발생 관련 내용 기록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1. 응급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다.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라.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체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 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 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마.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바.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사.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의식장애, 현훈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호흡곤란, 과호흡
- 다. 외과적 응급증상: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라. 출혈: 혈관손상
-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 참고자료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기록지(예시)

학년반	성명	성별	보호자명	주소	전화번호	담임교사
병명					<인체 해부도>	
사건 시간 장소						
사고 상황 및 환자 상태						
응급처치 내용						
이송 내용: 이송시간, 이송 병원, 이송자 (응급처치자 및 차량운전자)					☎ 이송병원 이송차량 종류	
비고 (회복된 날짜 등)					기록자 (인)	

사건개요		
	기록자: (인)	

※ 기록: 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 상태, 사고 현황, 응급처치 내용 및 이송 상황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기록(사건개요는 담임교사 또는 사고 당시 교과교사가 작성)

- ① 사건의 시간과 장소 ② 관련된 행동 ③ 관계자 등의 확인 ④ 신체부분의 상해
- ⑤ 응급처치 상황 ⑥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술 ⑦ 의학적 진단
- ⑧ 회복된 날

출처: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2012, 교육과학기술부)

3 보건실 현대화 유형 도면 및 레이아웃

【TYPE 1】 (66 m²)



【TYPE 2】 (66 m²)



【TYPE 3】 (66 m²)



【TYPE 4】 (66 m²)



【TYPE 5】 (33 m²)



【TYPE 6】 (33 m²)



【TYPE 7】 (33 m²)



【TYPE 8】 (33 m²)



4

전라남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전라남도 교육규칙』 제774호, 2019. 12.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2012.11.19.>

제3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삭제<2019.12.27.>

제5조(실태조사 및 확보) 학교의 장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달되는 품목에 대하여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제774호, 2019.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기준(제3조 관련)

□ 보건교사 배 치 교: 총 57종(필수 37종, 권장 20종)

□ 보건교사 미배치교: 총 57종(필수 27종, 권장 30종)

영역	품목	보건교사 배 치 교	보건교사 미배치교
1. 일반시설 및 기구 등	1. 사무용 책상·의자	필수	필수
	2. 서류보관장		
	3. 약장·기기보관함		
	4. 소독(멸균)기		
	5. 수도시설 및 세면대		
	6. 냉·난방시설		
	7. 통신시설		
	8. 컴퓨터·프린터기		
	9. 온·습도계		
	10. 냉장고		
	11. 물 끓이는 기구	권장	권장
	12. 칠판(환경계시판)		
	13. 순간온수기(온수시설)		
	14. 손전등		
	15. 가습기		
2. 환자 안정용 기구	1. 1인용 침대 2개 이상	필수	필수
	2. 1인용 침구세트 2세트이상		
	3. 침구류 보관장		
	4. 칸막이(가리개)		
	5. 보온기구(1인용, 2개 이상)		
3.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1. 혈압계	필수	필수
	2. 형광시력표, 눈가리개, 시력검사용지시봉		
	3. 비만도 측정기		
	4. 청진기		권장
	5. 펜라이트		
	6. 진찰용 의자		

영역	품목	보건교사 배치교	보건교사 미배치교
	7. 신장계, 줄자, 체중계	권장	
	8. 조명장치(스탠드)		
	9. 청력계		
	10. 혈당측정기		
	11. 검안경, 검이경(귀보개), 비경		
	12. 치과용 거울, 탐침		
	13. 상담용 탁자 및 의자		
4. 응급처치용 기구	1. 체온계(디지털)	필수	필수
	2. 핀셋, 핀셋통		
	3. 가위, 의료용쟁반, 가제통, 소독접시		
	4. 부목		
	5. 구급낭		
	6. 들것		
	7. 목발		
	8. 냉온찜질기	권장	권장
	9. 휴대용구급기구		
	10. 상처소독용 이동식 수레		
	11. 지혈감자		
	12. 세안수수기		
	13. 휴대용 산소기		
	14. 구급처치용 침대		
	15. 산소포화도 측정기		
5. 환경위생용 기구	1. 조도계	권장	권장
	2. 먼지측정기		
6. 보건교육용 기자재	1. CPR(심폐소생술) 인형	필수	필수
	2.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AED)		
	3. 성교육용 교구	권장	권장
	4. 인체모형(흡연예방용)		
	5. 치아·잇솔 모형		
	6. TV, DVD		
7. 기타	1.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 등	권장	권장

5 2025년 학생 건강검사 실시 계획

I 개요

1. 목적

- 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
- 질병 또는 건강문제가 발견된 학생에 대한 건강상담·치료 및 보호 등의 적절한 대책 강구로 자기건강관리 능력배양 및 건강한 학교생활 유지

2. 근거

- 가. 「학교보건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 나. 「학교건강검사규칙」
- 다.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 라.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 마. 2025. 학생 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교육부)

3. 건강검사의 구분

- 가. 신체의 발달상황: 키, 몸무게, 비만도 측정(전교생)
- 나. 건강조사: 예방접종 및 병력, 건강행태 및 생활습관 등을 조사(전교생)
- 다. 건강검진: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실시
- 라. 별도검사: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하는 초·중·고등학생에 대하여 소변검사, 시력검사, 결핵검사 실시

【 건강검사 실시대상 및 기관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4학년	2,3,5,6학년	1학년	2,3학년	1학년	2,3학년
신체발달	검진기관	당해학교	검진기관	당해학교	검진기관	당해학교
건강조사	당해학교	”	당해학교	”	당해학교	”
건강검진	검진기관	검진기관(구장)	검진기관		검진기관	
별도검사		소변, 시력		소변, 시력		소변, 결핵

※ 특수 및 방송통신중·고,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에 재학하는 학령기 학생은 초·중·고등학교 해당학년과 동일하게 실시

마.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 운영: 세부사항 추후별도 안내

II 학생 건강검사 실시 요령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3월말까지** 수립하여 실시

1. 학생 건강검사 추진 절차

추진절차	세부내용	비고
학교 건강검사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조사(설문), 신체발달상황, 건강검진 (초등학교는 2,3,5,6학년 구강검사 포함), 별도검사 	3월
↓		
건강검진 기관 선정 (2개 검진기관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진기관 지정기준 준수, 전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등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3~4월
↓		
학생 건강검사 계획 확정, 실시 (건강검진, 건강조사, 시력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사 계획 확정: 3월말까지 - 건강검진: 가급적 1학기 내 완료 - 건강조사: 가급적 4월중(1학기 말까지) - 신체의 발달상황: 1학기 말까지 	가급적 1학기내
↓		
검진 결과 유증상자 조치 및 검사결과 기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진결과 이상자에 대한 정밀검진 등 안내, 건강기록부 기록관리, 검진비 청구 및 지급 등 	3~10월
↓		
검사결과 취합, 통계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사 실시현황 취합 및 통계 - 이상자는 정밀검사 후 지속 관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2020. 1. 9.) “제10조제4항”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통계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8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제출(8.22.까지) - 건강검사 실시 결과 내부결재(학교) - 필요시 통계자료 요청 가능(본청, 교육지원청) 	8월

※ 표본학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NEIS를 통해 전송

2. 신체의 발달상황

- 가. 검사시기: 1학기 말까지(필요시 추가 실시 가능)
- 나. 검사항목: 키(cm), 몸무게(kg), 비만도(체질량지수)
- 다. 검사방법: **【별표 1】**
- 라. 검사자: 당해학교 교직원(단, 건강검진 대상학년은 검진기관에서 실시)
- 마. 결과처리: 학생건강기록부에 입력 후 학부모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치료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서식 1】**

3. 건강조사

- 가. 조사시기: 가급적 4월 중(1학기 말까지, 필요시 추가 실시 가능)
- 나. 조사항목 및 내용: **【별표 2】**
 - * 학교에서 조사항목 및 내용을 임의로 변경 불가(「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
- 다. 조사자: 당해학교 교직원
- 라. 조사방법: 설문조사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학년	전학년	전학년	전학년
설문내용	별표 3	별표4	별표4

- ※ 유의사항: 설문지를 학교 자체에서 인쇄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설문내용 중 학부모의 도움이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가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도
- 마. 결과처리: 설문결과 통계처리 및 결과 분석 후 학생 건강관리계획에 반영

4. 건강검진

- 가. 검진시기: 연중(가급적 1학기내 실시)
- 나. 검진대상: 초등학교 1,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 다. 검진항목 및 방법: **【별표 7】**

구분	초1	초4	중1	고1	비고
척추, 눈, 귀, 콧병, 목병, 피부병, 구강, 소변, 혈압	●	●	●	●	
혈액검사(혈당, 총콜레스테롤, HDL, 중성지방, LDL(계산값), AST·ART), 허리둘레 측정	-	●	●	●	비만학생
흉부 엑스선 검사	-	-	●	●	
혈색소검사	-	-	-	●	여고생만 검사

- ※ 혈액검사 학생에 대해 놀리거나 따돌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라. 검진비용: 전액 학교회계부담 【별표 8】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

★ 1인당 검진 수가

구분		초1 (12항목)	초4 (14항목)	중1 (15항목)	고1 (15~16항목)
남학생	정상	18,680원	18,680원	28,560원	28,560원
	비만		38,830원	48,710원	48,710원
여학생	정상	18,680원	18,680원	28,560원	29,810원
	비만		38,830원	48,710원	49,960원

※ 중·고 검진비용은 X-선 촬영방법을 14" ×17" 수가로 반영함

마. 검진기관 선정

- 1) 학교의 장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2개 이상을 선정하여 건강검진 계약 체결
- 2) 구강진료 과목이 없는 일반검진기관 선정 시 구강검진기관 별도 선정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검진 기관	의과검진+치과	2개	1개	
	의과검진		1개	2개
	치과		1개	2개

사례1: 치과가 개설된 의과검진기관을 2개 선정한 경우 별도의 치과 선정 불필요

사례2: 치과가 개설된 의과검진 1개를 선정하고, 치과가 개설되지 않은 의과검진 기관1개를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치과를 별도 선정

사례3: 치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의과검진기관을 2개 선정 하였다면 치과를 2개 이상 선정하여야 함

- 3) 선정방법: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학교장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 4)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개 검진기관 선정 및 출장 검진 가능

가) 1개 검진기관 및 출장검진 승인 기준

(1) 1개 검진기관 승인 기준

- 시·군 내 학생건강검진사업에 참여하는 검진기관이 1개소인 경우
-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2개 검진기관 선정이 어려운 학교

(2) 1개 검진기관 및 출장 검진 승인 기준(이하 “출장검진”)

-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병원 방문 검진이 어려운 학교
 -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승인 요청 시 객관적인 자료 확보 및 내부결재 처리 (검진기관에 의뢰한 공문 등)
 - ※ 관내 검진기관이 다수 있으면서 검진기관에 공문으로 의뢰하지 않고 구두로만 의뢰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 출장검진: 검진기관이 출장검진 차량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검진하는 경우
 - ※ 출장검진 승인 요청 학교는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 에 따라 지정되었는지 확인

나) 별도 승인 신청 없이 1개 검진기관 및 출장검진 가능 대상

- (1)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 (3) 검진 대상자가(초 1·4년, 중·고 1년) 3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다) 승인 신청 방법

- (1) 초·중·고·특수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을 거쳐 승인 신청
- (2) 신청서식: **【별도 붙임 2】**

【 건강검진 기관 】

- 건강IN 건강검진 기관 안내
국민건강보험(<http://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 검색 → 주소(전라남도, ○○시/군 선택)

바. 건강검진 절차

- 1) 학교장은 건강검진 대상자가 학부모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호자 등과 함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지정 검진기관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도록 함(출장검진의 경우 예외)
- 2)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검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지정 검진기관에

전산 출력물(NEIS 활용) 또는 파일로 제공하여 검진대상자 여부와 검사 항목 확인 대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3)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의 여부를 확인한 후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7]의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건강검진 실시

사. 학교장 조치사항

- 1) 학교장은 검진기관 선정 시 학생들의 수업결손 최소화, 검사결과 일관성, 검진 과정의 지도·감독 용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검진 참여 인력 자격요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적정 요인 여부 확인 철저
- 2) 2025학년도 학생 건강검사 계획 및 검진안내서에 대하여 검진 대상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사전 안내)
 - 가) 건강검진을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매 3년마다 실시하며, 전액 학교 부담으로 실시
 - 나) 검진 대상자가 학부모(보호자)와 함께 검진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 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지정된 검진 기관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검진 기관에 사전 예약(예약 전화번호 안내)후 방문해야 편의성이 있음
 - ※ 지정된 검진기관이 아닌 타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할 경우 검진결과 통보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재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안내
 - 다) 검진대상자가 검진 당일에 공복을 유지(초 1학년은 제외)한 상태로 건강검진에 임하도록 하여, 검진 기관을 재방문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 라) 검진 대기시간의 최소화 및 문진표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사전에 학부모와 함께 문진표를 작성하여 검진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마) 지정 검진기관 명단, 건강검진 절차 및 준수
- 3) 학생 건강검사 계획, 검진대상자 명부, 건강검진 판정기준 등 검진에 필요한 사항을 검진 기관으로 통보
- 4) 형식적인 검사가 되지 않도록 학생과 의사와의 충분한 진찰 및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5)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되, 검진준비, 검사항목, 검진실시, 검진결과 통보, 검진비용 청구 및 지급, 의료사고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 이행 등 검진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 체결

※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예시 **【참고자료 3】**

- 6) 학생 건강검사 실시와 검진기관 선정 등을 이유로 학교는 어떤 혜택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건강검사 부실 방지(예: 기부금, 장학금, 빵 등 현물제공의 특혜 및 교직원 무료건강검진 쿠폰 지급 등)
- 7) 검진 기관으로부터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외의 통계 및 기타 자료 요구로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8) 건강검진 결과처리 및 이상자(유증상자)에 대한 건강관리계획 수립 시행
 - 가) 학교장에게 통보된 검사 결과 통보서는 받은 즉시 내용 확인, 학생건강 기록부에 기록, 필요한 조치 후 관리

- ※ 검진항목 누락여부(비만아동 혈액검사 등), 검진결과 기재 오류 등 확인
- ※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치료지도 자료로 활용, 학년말 입력사항 대조·확인 필요시 수정 후 폐기

- 나) 건강검진 결과 이상자(유증상자)에 대하여 즉시 학부모(보호자)에게 가정통신 등으로 알려 정밀검진 및 조기 치료를 받도록 안내

- 다) 2차 검진결과를 확인하여 건강이상자(구강, 시력 제외)는 관리카드 **【참고자료 2】** 를 작성·관리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등 특별지도 대책을 강구

- ※ 2차 검진결과 미확인 및 학부모(보호자)의 2차 정밀검사 이행을 저조 등 건강이상자 사후조치 소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 학생건강검진 결과 2차 검진비용을 학교회계 예산으로 지원 가능

- 라) 검진 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는 학생건강기록부 작성 및 건강관리 자료로 이용하며 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

- ※ 건강검사 결과통보서 원본을 차기 검진시 검진 기관에 제출토록 한 규정 삭제됨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 2009.5.22.]

- 9) 검진비용 청구서 접수 및 검진비용 지급

- 가) 학교장은 검진 기관의 검진비용 청구가 있을 때에는 검진비용 청구서상의 각 항목 실시 인원과 명단을 확인한 후 접수

- 나) 학교장은 검진비용 심사결과 보완 또는 정산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검진비용 정산기준 **【별표 10】** 에 따라 조치하고 당해 검진 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항목별 사유별 내역을 통보

- 다) 학교장은 수검자 개인별 검진비를 산출하고 합산된 금액을 검진비용으로 확정하여, 검진비용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고

검진 비용은 반드시 당해 검진 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계좌로 송금

10) 건강검진 미실시자에 대한 조치에 대한 강구

- 가) 건강검진 대상 학생이 장기결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학년도에 우선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조치
- 나) 건강검진 결과 체질량지수에 의한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이 혈액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당해 학년도 내에 검진을 받도록 조치
- 다) 중도입국 학생이 전입학할 경우 건강검진기록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당해 연도 및 다음 학년도에 우선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조치

아. 검진기관 준수사항

- 1) 검진기관은 문진표 **【별표 5, 6】**, 구강검진문진표 **【별표 11】** 및 검진 안내서 등을 사전에 학교장에게 통보하되, 검진 당일 개인별 문진표를 제출받아 검진 실시
- 2) 검진기관은 학교장과 협의, 검진 당일 진찰 및 각종검사 실시 전에 학생에게 주의사항 등 안내
- 3) 검진기관은 제시된 학생건강검진 검사항목을 누락하거나 그 이외에 자비 부담의 추가검진을 유도하는 행위 금지
- 4) 검진인력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 5) 학교장으로부터 검진인력 및 검진장비 검증 등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요구시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함
- 6) 검진기관은 당일 채취한 검체를 당일 중으로 분석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출장검진 시에는 검체의 보관 및 수송, 검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검체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수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혈청을 분리하여 혈청만을 냉장 수송
- 7) 건강검진 결과 시급히 정밀검진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학교장 및 학부모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
- 8) 학생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 및 검진결과와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혈액검사 학생에 대해 공개적인 안내 지양)
- 9) 건강검진 결과 통보

가) 건강검진 결과 기재 및 판정은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학생 건강검사 결과통보서 **【서식 2】** 및 학생 구강검진 결과통보서 **【서식 3】**를 작성하고 담당 의사가 서명 후 통보

나) 검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진결과 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에 보존하고, 1부는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나머지 1부는 학교장에게 각각 통보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수검자별로 각각 밀봉 통보하여 제3자에게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다) 구강검진 기관은 구강검진 후 지체 없이 해당 수검자에게 수검자용 구강 검사결과 통보서를 직접 교부하도록 하며, 소속 학교장에게 30일 이내 통보

라) 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검사 결과와 상이한 내역으로 검진결과가 통보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검진결과 내역을 정정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수검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재송부

마)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기록지 및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검진 담당의 사가 서명 또는 날인 후 문진표를 첨부하여 5년간 보존

[다만, 검진 전산(자동화)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음]

바) 검진기관은 검진 결과를 통보 기일 내 가능한 조속히 통보하여 이중 수검을 방지하고, 건강 주의자나 유질환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특히, 건강검진 결과 긴급히 정밀검사 등을 요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학부모(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결과를 통보

10) 검진비용 청구

가) 건강검사와 관련한 검사항목별 검진비용은 **【별표 8】**에 의함

나) 검진기관이 검진비용 청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당해 검진 기관의 종사자가 검진결과를 토대로 작성하고 그 청구내용 및 금액은 대표자가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

5. 구강검진

가. 검진시기: 연중

나. 검진대상: 초등학교 2·3·5·6학년(특수학교 해당학년 포함)

다. 검진항목: **【별표 7】**

라. 검진비용: 전액 학교회계부담 **【별표 8】**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

마. 구강건강검진 실시방법

1) 검사방법: 구강검진기관에서 실시

2) 검사비용: 보험수가 적용(1인당 8,170원)

3) 계약방법: 학생 건강검진에 준하여 계약 체결

4) 검진기관 선정: 구강검진기관 1개 이상 선정

(방문 또는 출장검진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은 학교장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 구강건강검진 기관 】

○ 건강IN 건강검진 기관 안내

국민건강보험(<http://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 검색 → 주소(전라남도, ○○시/군 선택)

6. 별도검사

(단위: 1인당, 원)

검사항목	검사대상	검사기관	검사수수료	비고
소변검사	초 2·3·5·6년/ 중 2·3년/고 2·3년	한국학교보건협회 광주·전남지부	1,450	교육지원청 부담
결핵검사	고 2·3년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	4,480	”
시력검사	초 2·3·5·6년/ 중 2·3년	당해학교 교직원	-	

※ 학교행정 효율화 방안 및 교직원 업무경감 차원에서 학교에서 추진 중인 학생 별도 검사(소변, 결핵) 업무 중 세부 추진계획 수립, 학교 검진일정 안내, 일괄 집행 업무는 교육지원청에서 추진

※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검진당일 교내방송, 검진장소 마련, 검진 결과 조치 등 적극 협조

가. 소변검사

- 1) 시기: 연중(교육지원청에서 일정 안내)
- 2) 방법: 검사기관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검사
- 3) 검사항목: 단백, 당, 잠혈, 간기능, 케톤체, 아질산염, 백혈구(7종)
- 4) 유소견자는 학부모에게 통보하여 정밀검사 받도록 안내하고 결과 확인

나. 결핵검사

- 1) 시기: 연중(교육지원청에서 일정 안내)
- 2) 방법: 검사기관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검사
- 3) 검사항목: ×-선 직촬 및 판독
- 4) 결핵으로 판명된 학생은 관할 보건소 등록 치료토록 하고 유선보고 후 NEIS 보고 ⇒ 역학조사를 실시할 경우 서면보고

다. 시력검사

- 1) 시기: 연중(학교 실정에 따라 시행)
- 2) 방법: 공인시력표에 의거 당해 학교 교직원이 측정
- 3)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는 교정시력만 검사

7. 표본학교 건강검사

가. 검진시기: 2025년 3월 ~ 9월

나. 지정기간: 2024년 ~ 2026년(3년)

다. 결과처리: 해당학교의 장은 표본학생 건강검사 결과를 2025년 9월 30일 까지 NEIS를 통해 교육청으로 전송(표본조사 실시에 따른 검사결과 작성·제출 등 철저)

라. 대상학교: 70교(초 20, 중 21, 고 29)

지역별	초(20교)	중(21교)	고(29교)
목포(8)	목포애향초, 목포용호초	목포영화중, 목포애향중, 목포중앙여중	목포마리아회고, 목포여고, 목포정명여고
여수(8)	여수양지초, 용천초, 관기초	여수구봉중, 여도중	여수고, 여수충무고, 여수정보과학고
순천(11)	순천용당초, 순천부영초, 신대초	순천왕운중, 순천남산중, 순천금당중, 순천삼산중	순천여고, 순천매산고, 순천팔마고, 순천금당고
나주(7)	나주중앙초, 남평초	영산중	나주고, 나주공고, 매성고, 광남고

지역별	초(20교)	중(21교)	고(29교)
광양(9)	광양백운초	광양중, 동광양중, 광양용강중	광양고, 광양여고, 광양백운고, 광영고, 한국항만물류고
구례(2)	청천초		구례고
고흥(3)	고흥동초	고흥중, 금산중	
보성(2)	미력초		별교상업고
화순(3)	도곡초	화순도곡중	화순고
강진(2)		강진대구중	강진고
해남(2)		화산중	해남공고
무안(4)	남악초, 해제초	무안북중	전남예술고
함평(2)		함평해보중	함평학다리고
영광(2)		영광옥당중(구.영광여중)	해룡고
장성(1)	장성중앙초		
완도(2)	노화초		노화고
진도(1)	진도초		
신안(1)			임자고

마. 행정사항: 표본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기관 관계자에게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매뉴얼과 학생 검진항목별 검진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따른 교육 철저

III 학생 건강검사 질(質) 제고

1. 학생 건강검진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단위 학교에서 검진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설명 및 개선요청(공문시행 등)
 - 가. 필요시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검진의 문제점 발견 등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질(質)관리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
 - 나. 학생 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지(검진기관명을 제외한 만족도 결과만 공지)
 - ※ 검진기관 만족도 조사 및 결과(예시): [참고자료 1]
2. 학교 건강검사 제도 관련규정을 학교 및 검진기관에 적극 홍보
 - ※ 「학교건강검사규칙」(‘21.6.30.),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22.12.26.)
 -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22.12.26.)

IV 행정사항

1.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
2. 학생 건강검사 결과 감염병(결핵 등) 의심 학생 발견시는 즉시 관할 보건소 신고 및 교육청으로 보고(유선 보고 후 NEIS 보고)
 - 역학조사를 실시할 경우 서면보고(제출서식 9호 69p)
3. 2025학년도 학생 건강검진 기관 완화 및 출장검진 승인 신청
 - 초·중·고·특수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을 거쳐 승인 신청

※ 초등학생 구강검진 관련 참고사항(법률자문가 유권해석 결과)

- ◇ 검진기관으로 승인받지 않은 보건(진료)소에서의 구강진료를 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검진기관으로 승인 받지 않은 보건(진료)소에서의 구강진료는 검진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학교 건강검사에서의 ‘구강검진’은 미 실시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토(근거)자료 첨부
 - 「학교보건법」 제7조제4항에서는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이용 가능한 검진 기관 부재 등)로 검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지역 내에 검진기관의 부재 및 인근지역 이동 등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지역 내 보건(진료)소의 구강관리실 등에서 학생 구강진료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구강보건 관리를 할 수 있음

※ 검진 기관에서 학생검진 결과를 임의 특정기관에 DB화 의뢰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학교의 주의 요망

V 붙임자료

별 표

1.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104
2. 건강조사 항목 및 방법	105
3. 건강조사 설문지(초등학생용)	106
4. 건강조사 설문지(중·고등학생용)	108
5. 건강검진 문진표(초등학생용)	110
6. 건강검진 문진표(중·고등학생용)	111
7.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112
8. 2025년도 건강검진 비용	114
9. 2025년도 건강검진 항목방법	115
10. 검진비용 정산기준	116
11. 구강검진 문진표	117
12.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118
13.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참고치	119
14.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결과 기재요령	124

서 식

1. 학생건강기록부	125
2.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127
3.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128
4.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129
5. 학생 건강검진 통계표	130

참고자료

1. 학생 건강검진 기관 만족도 조사 및 결과(예시)	131
2. 건강이상자 관리카드(예시)	133
3.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예시)	134
4. 검진기관 지정기준	136

관련법규(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1. 「학교건강검사 규칙」
2.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별표 1]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 <개정 2020. 1. 9.>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제4조제2항 관련)

검사항목	측정단위	검 사 방 법
키	센티미터 (cm)	1. 검사대상자의 자세 가.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발꿈치를 붙일 것 나. 등·엉덩이 및 발꿈치를 측정대에 붙일 것 다. 똑바로 서서 두 팔을 몸 옆에 자연스럽게 붙일 것 라. 눈과 귀는 수평인 상태를 유지할 것 2. 검사자는 검사대상자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의 높이를 측정
몸무게	킬로그램 (kg)	옷을 입고 측정한 경우 옷의 무게를 뺄 것
비만도	—	1. 비만도는 학생의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계산된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kg/m ²)를 성별·나이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하여 판정한다. 2. 비만도의 표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5 미만인 경우: 저체중 나.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85 이상 95 미만인 경우: 과체중 다.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95 이상인 경우: 비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상

※ 비고: 수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나타낸다(측정값이 소수 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별표 2]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의2] <신설 2006.1.10>

건강조사 항목 및 방법(제4조의2제2항관련)

1. 조사항목 및 내용

조사항목	조사내용
1. 예방접종/병력	가. 전염병 예방접종 나. 가족병력 다. 개인병력
2. 식생활/비만	가. 식습관 나. 인스턴트 및 그 밖에 식품의 섭취형태 다. 다이어트 행태
3. 위생관리	가. 손 씻기 나. 양치질
4. 신체활동	가. 근지구력 향상을 위한 운동 나. 심폐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 다. 수면
5. 학교생활/ 가정생활	가. 가족 내 지지 정도 나. 학교생활 적응 정도 다. 교우관계
6. 텔레비전/인터넷 /음란물의 이용	가. 텔레비전 시청 나. 인터넷 이용 다. 음란물에의 노출 여부 및 정도
7. 안전의식	가. 안전에 대한 인식 나. 안전사고의 발생
8. 학교폭력	가. 학교폭력에의 노출 여부 및 정도
9. 흡연/ 음주/ 약물의 사용	가. 흡연 나. 음주 다. 흡입제의 사용 여부 및 약물의 오·남용 여부 등
10. 성 의식	가. 성문제 나. 성에 대한 인식
11. 사회성/ 정신건강	가. 사회성(자긍심, 적응력 등) 나. 정신적 건강(우울, 자살, 불안증, 주의력 결핍 등)
12. 건강상담	가. 건강에 대한 상담의 요구 등

2. 조사방법

시·도교육감은 위 조사항목 및 내용을 포함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마련하고, 학교의 장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별표 3] (초등학생용)

건강조사 설문지

(학교, 학년 반 번, 성명 :)

이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건강지도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므로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내용 중 감염병 예방접종, 가족 및 개인 병력 사항은 부모님과 상의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최근 1년간 감염병 예방접종을 받은 내용을 써주십시오	대상감염병	접종일자		접종기관
2. 가족 중 질환을 치료받거나 진단받은 사람이 있으면 써 주십시오	질 환 명	나와의 관계		
3. 학생이 최근 1년간 앓았던 질환을 모두 써 주십시오	질환명			
4. 여러분의 건강생활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질문에 " V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구분	내용	예	아니오
	식생활 /비만	아침은 규칙적으로 먹는 편이다.		
		매일 우유나 유제품을 먹는다.		
		매일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평소 단 음식이나 짠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다.		
		콜라, 음료수 또는 과자를 하루에 두 번 이상 먹는다.		
	위생 관리	햄버거, 피자 또는 라면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먹는다.		
		밥을 먹기 전이나 밖에서 놀다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신체 활동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를 닦는다.		
		주 3회 이상 땀이 나거나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한다.		
잠은 매일 7시간 이상 충분히 잔다.				
		학교 체육활동 이외의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구분	내용	예	아니오
	4. 여러분의 건강생활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질문에 "V"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학교생활 / 가정생활	지난 1년 동안 친구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집을 나가고 싶을 때가 자주 있다.				
우리 가족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의 감정을 존중해 준다.				
부모님께 자주 매를 맞는 편이다				
텔레비전 / 인터넷의 이용		텔레비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본다.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		
		텔레비전 시청과 인터넷, 게임은 거의 하지 않는다.		
안전의식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항상 맨다.		
		자전거,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학교폭력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학교 가는 길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다.		
		학교 내에서 누군가에 의해 협박이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학교 내에서 옷이나 물품(책, 옷, 돈) 등을 빼앗기거나 도난 당한 적이 있다.(최근 한 달)		
흡연/음주 / 약물의 사용		가족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		
		가족 중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걱정되는 사람이 있다.		
		잠 안오는 약이나 잠오는 약, 살 빼는 약을 먹어 본 적이 있다.		
성의식		성문제에 대해 고민이 된다.		
		육체적, 정신적, 성적으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사회성 / 정신건강		차분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다.		
		화가 나면 난폭한 행동을 한다.		
		항상 외롭다고 느낀다.		
		무슨 일이든지 집중하지 못하고 쉽게 흥미를 잃어버린다.		
		모든 것이 귀찮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공부시간에 선생님께 자주 혼난다.		
건강상담	고민이나 괴로운 일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 ※ 담임선생님, 보건선생님, (선생님)			
(학교 재량란)				

[별표 4] (중·고등학생용)

건강조사 설문지

(학교, 학년 반 번, 성명 :)

이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건강지도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므로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학생 개인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설문내용 중 감염병 예방접종, 가족 및 개인 병력 사항은 부모님과 상의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최근 1년간 감염병 예방접종을 받은 내용을 써주십시오	대상감염병	접종일자	접종기관	
2. 가족 중 질환을 치료받거나 진단받은 사람이 있으면 써 주십시오	질환명	나와의 관계		
3. 학생이 최근 1년간 앓았던 질환을 모두 써 주십시오	질환명			
4. 여러분의 건강 생활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질문에 " V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구분	내용	예	아니오
	식생활 /비만	아침은 규칙적으로 먹는 편이다.		
		매일 우유나 유제품을 먹는다.		
		매일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평소 단 음식이나 짠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다.		
		콜라, 음료수 또는 과자를 하루에 두 번 이상 먹는다.		
		햄버거, 피자 또는 라면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먹는다.		
	위생관리	체중 줄이기 위해 굶거나 약을 먹은 적이 있다.		
		밥을 먹기 전이나 밖에서 놀다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신체활동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를 닦는다.		
		주 3회 이상 땀이 나거나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한다.		
		잠은 매일 7시간 이상 충분히 잔다.		
		공부나 운동을 잘 안배하여 자고나면 개운하다.		
학교 체육활동 이외의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구분	내용	예	아니오
4. 여러분의 건강 생활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질문에 " V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학교생활 /가정생활	지난 1년 동안 친구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고민이 있거나 괴로울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가정(가족)내의 문제에 대해 걱정이 된다.		
		지난 1년 동안 가출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텔레비전 /인터넷 /음란물의 이용	텔레비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본다.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		
		음란물을 보거나 성인사이트에서 채팅을 자주 한다.		
		텔레비전 시청과 인터넷, 게임은 거의 하지 않는다.		
	안전의식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항상 맨다.		
		자전거,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학교폭력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무기로 사용할 목적으로 칼, 몽둥이, 쌍절곤 등을 가지고 다닌 적이 있다.		
		학교 내에서 옷이나 물품(책, 옷, 돈) 등을 빼앗기거나 도난당한 적이 있다.(최근 한 달)		
	흡연/음주 /약물의 사용	지난 1개월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지난 1개월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환각을 목적으로 대마초나 항정신성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		
		잠 안오는 약이나 잠오는 약, 살 빼는 약을 먹어 본 적이 있다.		
	성의식	성문제에 대해 고민이 된다.		
		육체적, 정신적, 성적으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사회성 /정신건강	차분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다.		
화가 나면 난폭한 행동을 한다.				
항상 외롭다고 느낀다.				
무슨 일이든지 집중하지 못하고 쉽게 흥미를 잃어버린다.				
모든 것이 귀찮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공부 시간에 선생님께 자주 혼난다.				
건강상담	고민이나 괴로운 일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 ※ 담임선생님, 보건선생님, (선생님)			
(학교재량 란)				

[별표 5]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0. 1. 9.>

문진표(초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초등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부모님(보호자)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본인 또는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2.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3.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4.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5.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전신상태	감기에 잘 걸리는 편이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한 편이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숨 쉴 때 소리가 난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순환기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자주 막힌다.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운동을 할 때 몹시 숨이 차다.		
소화기	배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		
	속이 답답하다.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듯한 느낌이 있다.		
혈액	설사를 자주 한다.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몸에 멍이 잘 든다.		
그 밖의 증상	머리가 자주 아프다.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진물이 나온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6]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0. 1. 9.>

문진표(중학생·고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5번 문항 및 잘 모르는 문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전신상태	감기에 잘 걸린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하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코와 눈이 가렵고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숨 쉴 때 숨이 가쁘면서 가슴에서 썹썹하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가 많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막힌다.		
	코를 심하게 곤다는 말을 듣는다.		
순환기	목에서 몽우리가 만져진다.		
	혈색이 안 좋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운동을 조금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숨이 심하게 차다.		
소화기	속이 쓰리거나 아플 때가 있다.		
	속이 답답하거나 가득 찬 듯한 느낌이 있다.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것 같다.		
혈액	아랫배가 살살 아프거나 설사를 자주 한다.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몸에 멍이 잘 든다.		
그 밖의 증상	두통이나 편두통이 심하다.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분비물이 나온다.		
	귀에서 매미우는 소리나 웅하는 소리가 들린다.		
	턱관절이 아프거나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목·허리·무릎 등이 쭈시거나 아프다. (여학생) 생리통이 심하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7]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 <개정 2020. 1. 9.>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제5조제2항 관련)

검진항목		검진방법(세부항목)
1. 척추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2. 눈	가. 시력측정	1)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3)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나. 안질환	결막염, 눈썹찢림증, 사시 등 검사
3. 귀	가. 청력	1) 청력계 등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나. 귓병	중이염, 바깥귀길염(외이도염) 등 검사
4. 콧병		코결막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5. 목병		편도선비대·목부위림프절비대·갑상샘비대 등 검사
6. 피부병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검사
7. 구강	가. 치아상태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로 한정한다) 검사
	나. 구강상태	치주질환(잇몸병)·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8. 병리 검사 등	가. 소변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요를 채취하며, 시험지를 사용하여 측정(요단백·요잠혈 검사)
	나. 혈액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1) 혈당(식전에 측정한다),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및 간세포 효소(AST·ALT) 2) 혈색소
	다. 결핵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라. 혈압	혈압계에 의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9. 허리둘레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
10. 그 밖의 사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검진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적용범위 및 판정기준

1. 다음 각 목의 검진항목에 대한 검사 또는 진단은 해당 목에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 가. 위 표 제8호나목1) 및 같은 표 제9호의 검진항목: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비만인 학생
 - 나. 위 표 제8호나목2)의 검진항목: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 다. 위 표 제8호다목의 검진항목: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 위 표에서 정한 건강검진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위 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검진항목 외의 검진항목에 대한 검진방법 및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별표 8]

2025년도 건강검진 비용

항목	초1		초 4		중 1		고 1				
							남		여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건강검진 상당료 및 행정비용 - 척추 - 눈(시력, 안질환) - 귀(청력, 귓병) - 콧병, 목병, 피부병 - 키, 몸무게, 허리둘레, 비만도, 혈압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9,590	9,590	9,590	9,590	9,590	9,590	9,590	9,590	9,590	9,590	
구강(치아상태 및 구강상태)	8,170	8,170	8,170	8,170	8,170	8,170	8,170	8,170	8,170	8,170	
병 리 검 사	소변(요단백, 요장혈)		920	920	920	920	920	920	920	920	
	혈액(비만학생) 혈당, 총콜레스테롤, HDL, 중성지방, LDL(계산값), AST, ALT		-	-	20,150	-	20,150	-	20,150	-	20,150
	혈색소(고1 여학생)		-	-	-	-	-	-	1,250	1,250	
	결 핵 (직활)	14 "× 14"	-	-	-	9,560	9,560	9,560	9,560	9,560	9,560
		14 "× 17"	-	-	-	9,880	9,880	9,880	9,880	9,880	9,880
CR or DR		-	-	-	8,170	8,170	8,170	8,170	8,170	8,170	
Full PACS		-	-	-	9,120	9,120	9,120	9,120	9,120	9,120	
계	14 "× 14"	18,680	18,680	38,830	28,240	48,390	28,240	48,390	29,490	49,640	
	14 "× 17"				28,560	48,710	28,560	48,710	29,810	49,960	
	CR or DR				26,850	47,000	26,850	47,000	28,100	48,250	
	Full PACS				27,800	47,950	27,800	47,950	29,050	49,200	

※ CR은 컴퓨터영상처리장치를, DR은 디지털촬영장치를, Full PACS는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의미함

※ 중·고 1학년 결핵검사 비용은 검사방법에 따라 비용을 다르게 적용함

[별표 9]

2025년도 건강검진 항목 방법

검진항목		검진수가		초		중	고	검진방법		
				1학년	4학년	1학년	1학년			
1. 척추				★	●	◆	■	척추염균음증(척추측만증) 검사		
2. 눈	가. 시력 측정			★	●	◆	■	1)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3)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나. 안질환			★	●	◆	■	결막염, 눈썹찢림증, 사시 등 검사		
3. 귀	가. 청력	기본검진 (9,590원)		★	●	◆	■	1) 청력계 등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나. 귓병			★	●	◆	■	중이염, 바깥귀길염(외이도염) 등 검사		
4. 콧 병	★			●	◆	■	코결골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5. 목 병	★			●	◆	■	편도선비대·목부위림프절비대·갑상샘비대 등 검사			
6. 피부병	★			●	◆	■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병 등 검사			
7. 구강	가. 치아상태			8,170원		★	●	◆	■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로 한정한다) 검사
	나. 구강상태					★	●	◆	■	치주질환(잇몸병)·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8. 병리 검사 등	가. 소변	920원		★	●	◆	■	요검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요를 채취하며, 시험지를 사용하여 측정(요단백·요잠혈 검사)		
	나. 혈액	혈당	1,590원	20,150원		● (비만)	◆ (비만)	■ (비만)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1) 혈당(식전에 측정한다),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및 간 세포 효소(AST·ALT) 2) 혈색소	
		총콜레스테롤	1,890원			● (비만)	◆ (비만)	■ (비만)		
		HDL	7,650원			● (비만)	◆ (비만)	■ (비만)		
		중성지방	4,510원			● (비만)	◆ (비만)	■ (비만)		
		LDL	계산값			● (비만)	◆ (비만)	■ (비만)		
		AST	2,280원			● (비만)	◆ (비만)	■ (비만)		
		ALT	2,230원			● (비만)	◆ (비만)	■ (비만)		
	혈색소	1,250원				■ (여학생)				
	다. 결핵	직접촬영(14"×14")	9,560원			◆	■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직접촬영(14"×17")		9,880원								
라. 혈압	기본검진		★	●	◆	■	혈압계에 의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9. 허리둘레					● (비만)	◆ (비만)	■ (비만)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		
1인당 검진 수가	남학생	정상	18,680원	18,680원	28,240원 (28,560원)	28,240원 (28,560원)	※ 국민건강보험 → 건강IN → 건강자료실 → 검진청구 공지사항 → 2025년도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비용 참조			
		비만		38,830원	48,390원 (48,710원)	48,390원 (48,710원)				
	여학생	정상		18,680원	28,240원 (28,560원)	29,490원 (29,810원)				
		비만		38,830원	48,390원 (48,710원)	49,640원 (49,960원)				

※ ()의 수가는 결핵검사에 있어 직접촬영(14"×17") 수가를 적용한 1인당 검진수가임

※ 검진방법 세부자료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별표1

[별표 10]

검진비용 정산기준

구 분	정산기준	삭감액
가. 일부항목 미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항목 중 일부항목을 미실시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사진 불량인 경우 포함 ○ 총치, 결손치, 치주질환 등 1항목이라도 미실시한 경우 	해당항목 검진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위검사 종목(키, 몸무게, 비만도) 중 1항목이라도 미실시한 경우 ○ 의사의 진찰 및 상담을 1항목이라도 미실시한 경우 ○ 문진표 미 첨부 또는 문진 문항 미입력한 경우 ○ 종합판정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상담 및 행정비용 전액 삭감 " " "
나. 기준항목 미달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기준대로 실시하지 하고 검사항목 일부를 누락하여 실시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여고 1년생 혈색소 검사를 비만학생들만 대상으로 실시한 사례 ○ 1~2항목만 실시하여 도저히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검진비 전액 삭감 "
다. 비대상자 검진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진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대상자를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혈액검사를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우 ○ 담당자의 착오로 비대상자에게 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항목 검진비용전액 삭감 "
라. 지급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저하게 검사성적이 높거나 낮은 경우, 검사성적과 종합판정(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소견·조치사항 및 판정(종합판정 포함)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 검진결과통보서 검토 후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조치가 필요한 경우(특히 소견란 등에 한글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담당의사 날인 누락, 소견서 부실 등) 	지급보류 검사성적 재확인시 까지 해당수검자의 검진비 전액 지급 보류 후 시정완료 시 지급

[별표 11]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06.1.10>

구강검진 문진표

<p>이 설문조사는 구강검진에 앞서 여러분의 구강 증상과 구강건강행태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 결과는 여러분이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도록 할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은 여러분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모르는 사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수검자 인적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반/번호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구강 증상에 대한 물음	구강건강행태에 대한 물음																							
※ 최근 1년 동안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 표시를 해 주십시오.	※ 학생의 구강건강행태에 해당하는 번호에 "V"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padding: 5px;">증상</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padding: 5px;">①있다</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padding: 5px;">②없다</td> </tr> <tr> <td style="padding: 5px;">1.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짐</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 style="padding: 5px;">2. 차갑고 뜨거운 음료 혹은 음식을 마시거나 먹을 때 치아가 아픔</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 style="padding: 5px;">3. 치아가 쏘시고 욱신거리고 아픔</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 style="padding: 5px;">4.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남</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 style="padding: 5px;">5. 혀 또는 입 안쪽 뺨이 욱신거리며 아픔</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 style="padding: 5px;">6. 불쾌한 입 냄새가 남</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able>	증상	①있다	②없다	1.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짐			2. 차갑고 뜨거운 음료 혹은 음식을 마시거나 먹을 때 치아가 아픔			3. 치아가 쏘시고 욱신거리고 아픔			4.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남			5. 혀 또는 입 안쪽 뺨이 욱신거리며 아픔			6. 불쾌한 입 냄새가 남			<p>7. 지난 1년간 치과병(의)원에 간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③모르겠다</p> <p>8. 어제 하루 동안 이를 닦은 때를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아침식사 전 ②아침식사 후 ③점심식사 후 ④저녁식사 후 ⑤잠자기 직전 ⑥간식섭취 후</p> <p>9. 과자 등 단음식이나 콜라 등 청량음료를 즐겨 먹습니까? ①그렇다 ②보통이다 ③아니다</p> <p>10. 현재 사용 중인 치약에 불소가 들어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③불소치약이 무엇인지 모름</p>		
증상	①있다	②없다																						
1.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짐																								
2. 차갑고 뜨거운 음료 혹은 음식을 마시거나 먹을 때 치아가 아픔																								
3. 치아가 쏘시고 욱신거리고 아픔																								
4.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남																								
5. 혀 또는 입 안쪽 뺨이 욱신거리며 아픔																								
6. 불쾌한 입 냄새가 남																								
※ 특별히 <u>치과의사 선생님께</u> 하고 싶은 말을 쓰십시오.																								

[별표 12] ■ 학교 건강검진 실시 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대한 기준 별표 2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구 분	판 정 기 준
정 상	- 검진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정상(경계)	- 검진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자 - 검진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가 필요한 자
정밀검사 요함	- 검진결과 질환 가능성이 높아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검진이 필요한 자

※ 최종 종합판정은 문진표, 진찰, 상담, 검사결과를 합하여 검진 의사가 한다.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참고치

□ 검진결과 항목별 판정기준

질환별	검진항목	단위	판정 기준	
			판정	참고치
척추	척추옆굽음증 (척추측만증)		정상	없음
			정밀검사 요함	있음
눈	시력		정상	양쪽 눈 모두 각각 나안시력이 0.8이상인 경우
			정밀검사 요함	한 쪽 눈이라도 나안시력 0.7이하인 경우
	안질환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귀	청력	귓속말 검사 개수	정상	양쪽 귀 모두 각각 불러준 6개 숫자 중 3개 이상을 정확히 따라할 경우
			정밀검사 요함	한쪽 귀라도 6개 숫자 중 3개 미만을 맞출 경우
	순음 청력 검사 dB		정상	40dB 미만
			정밀검사 요함	40dB 이상
	귓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코	코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목	목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피부	피부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구강	치아상태		정상	검진결과 치아건강이 양호한 경우
			정상(경계)	충치는 없으나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 요함	검진결과 치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구강상태		정상	검진결과 구강건강이 양호한 경우
			정상(경계)	구강질환이 없으나 예방관리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 요함	구강질환이 의심되어 상담 또는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장	요단백		정상	음성 (-), 약양성 (±)
			정밀검사 요함	양성 (1+,2+,3+,4+), 양성과 신장 질환 증상 동반
	요잠혈		정상	음성 (-), 약양성 (±)
			정밀검사 요함	양성 (1+,2+,3+,4+), 양성과 신장 질환 증상 동반
				동시 양성인 경우도 신장 질환의심

질환별	검사항목	단위	판정 기준	
			판정	참고치
혈액	총콜레스테롤	mg/dL	정상	< 170
			정상(경계)	170 ~ 199
			정밀검사 요함	≥ 200
	고밀도지단백 (HDL) 콜레스테롤	mg/dL	정상	> 45
			정상(경계)	40 ~ 45
			정밀검사 요함	< 40
	중성지방 (TG)	mg/dL	정상	< 90
			정상(경계)	90 ~ 129
			정밀검사 요함	≥ 130
	저밀도지단백 (LDL) 콜레스테롤 (계산값 제공)	mg/dL	정상	< 110
			정상(경계)	110 ~ 129
			정밀검사 요함	≥ 130
간장질환	간세포효소 (AST) SGOT	U/L	10세 미만	정상 ≤ 55 정밀검사 요함 > 55
			10세 이상	정상 ≤ 45 정밀검사 요함 > 45
		U/L	간세포효소 (ALT) SGPT	정상 ≤ 45 정밀검사 요함 > 45
			빈혈증 질환	혈색소
당뇨질환	혈당	mg/dL	정상	< 100
			정상(경계)*	100 ~ 125
			정밀검사 요함	≥ 126
폐결핵	흉부방사선 촬영		정상	비활동성
		정밀검사 요함	정상 및 비활동성 이외의 자 (사진불량, 미촬영 등은 제외)	
혈압 이상	혈압 - 수축기 - 이완기	mmHg	정상	수축기/이완기 혈압 성별, 연령별, 신장대비 90백분위수 미만
			정상(경계)**	수축기/이완기 혈압 성별, 연령별, 신장대비 90~95백분위수 단, 90백분위 미만이라도 130/80 mmHg 이상인 경우 포함
			정밀검사 요함	95백분위수 초과

* 공복 시 혈당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 고혈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운동 및 식생활 관리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검진기관이 사용하는 시약 등의 차이로 자체 판정 참고치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와 문진 등을 종합하여 자체 판정 참고치를 기준으로 판정

□ 연령·신장별 혈압의 성장도표

연령 (세)	수축기혈압 백분위수	신장 백분위수(남아)							신장 백분위수(여아)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7~8 ¹⁾	50th	99	100	101	103	105	107	108	97	98	98	100	101	103	104
	90th	114	115	116	118	120	122	123	112	112	113	114	115	117	118
	95th	119	119	121	123	125	126	127	116	116	117	118	119	121	122
	99th	127	128	129	131	133	135	136	123	123	124	125	127	128	129
8~9	50th	99	99	101	103	105	106	107	99	99	100	101	102	104	105
	90th	114	115	116	118	120	122	123	113	113	114	115	116	118	119
	95th	119	119	121	122	124	126	127	117	117	118	119	120	122	123
	99th	127	128	129	131	133	134	136	124	125	125	126	128	129	130
9~10	50th	99	100	102	103	105	107	108	100	100	101	102	104	105	106
	90th	115	116	117	119	121	122	124	114	114	115	116	118	119	120
	95th	119	120	121	123	125	127	128	118	118	119	120	122	123	124
	99th	127	128	130	131	133	135	136	126	126	127	128	129	131	132
10~11	50th	101	101	103	105	106	108	109	101	102	102	103	105	106	107
	90th	116	117	118	120	122	124	125	115	116	116	118	119	121	122
	95th	120	121	123	124	126	128	129	119	120	120	122	123	125	126
	99th	129	129	131	133	135	136	137	127	127	128	129	131	132	133
11~12	50th	102	103	105	106	108	110	111	102	103	103	105	106	108	109
	90th	118	119	120	122	124	126	127	116	117	118	119	120	122	123
	95th	122	123	124	126	128	130	131	120	121	122	123	124	126	127
	99th	130	131	133	134	136	138	139	128	128	129	130	132	133	134
12~13	50th	105	105	107	108	110	112	113	103	104	104	106	107	109	110
	90th	120	121	122	124	126	128	129	117	118	119	120	121	123	124
	95th	124	125	127	128	130	132	133	121	122	123	124	125	127	128
	99th	133	133	135	137	138	140	141	129	129	130	131	133	134	135
13~14	50th	107	108	109	111	113	115	116	104	104	105	106	108	109	110
	90th	122	123	125	126	128	130	131	118	119	119	120	122	123	124
	95th	127	128	129	131	133	134	136	122	123	123	124	126	127	128
	99th	135	136	137	139	141	143	144	130	130	131	132	133	135	136
14~15	50th	110	110	112	114	115	117	118	105	105	106	107	108	110	111
	90th	125	126	127	129	131	133	134	119	119	120	121	123	124	125
	95th	129	130	132	133	135	137	138	123	123	124	125	127	128	129
	99th	138	138	140	142	144	145	146	130	131	132	133	134	136	137
15~16	50th	112	113	115	116	118	120	121	106	106	107	108	109	111	112
	90th	128	129	130	132	134	136	137	120	120	121	122	123	125	126
	95th	132	133	134	136	138	140	141	124	124	125	126	127	129	130
	99th	141	141	143	144	146	148	149	131	132	132	133	135	136	137
16~17	50th	115	116	117	119	121	123	124	106	107	108	109	110	112	113
	90th	131	132	133	135	137	138	140	121	121	122	123	124	126	127
	95th	135	136	137	139	141	143	144	125	125	126	127	128	130	131
	99th	143	144	146	147	149	151	152	132	132	133	134	136	137	138
17~18	50th	118	119	120	122	124	126	127	108	108	109	110	111	113	114
	90th	134	135	136	138	140	141	143	122	122	123	124	126	127	128
	95th	138	139	140	142	144	146	147	126	126	127	128	130	131	132
	99th	146	147	149	150	152	154	155	133	134	134	136	137	139	140
18~19	50th	121	122	124	125	127	129	130	110	110	111	112	113	115	116
	90th	137	138	139	141	143	144	146	124	124	125	126	128	129	130
	95th	141	142	143	145	147	149	150	128	128	129	130	132	133	134
	99th	149	150	152	153	155	157	158	135	136	137	138	139	141	142

2025년 학생 건강증진 기본방향 ● ● ●

연령 (세)	이완기혈압 백분위수	신장 백분위수(남아)							신장 백분위수(여아)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7~8	50th	57	57	58	58	59	60	60	57	57	57	58	58	59	59
	90th	67	68	68	69	69	70	70	67	67	67	67	68	69	69
	95th	70	70	71	71	72	73	73	69	69	70	70	71	71	72
	99th	76	76	76	77	77	78	78	74	75	75	75	76	76	77
8~9	50th	58	58	58	59	59	60	60	57	57	58	58	59	59	60
	90th	68	68	68	69	70	70	70	67	67	67	68	68	69	69
	95th	71	71	71	72	72	73	73	70	70	70	71	71	72	72
	99th	76	76	77	77	78	78	79	75	75	75	76	76	77	77
9~10	50th	58	58	59	59	60	60	61	58	58	58	59	59	60	60
	90th	68	68	69	69	70	70	71	67	67	68	68	69	69	70
	95th	71	71	72	72	73	73	74	70	70	70	71	71	72	72
	99th	76	77	77	78	78	79	79	75	75	76	76	77	77	78
10~11	50th	58	59	59	60	60	61	61	58	58	59	59	60	60	60
	90th	69	69	69	70	70	71	71	68	68	68	69	69	70	70
	95th	71	72	72	73	73	74	74	71	71	71	71	72	73	73
	99th	77	77	77	78	79	79	79	76	76	76	77	77	78	78
11~12	50th	59	59	59	60	61	61	61	59	59	59	59	60	61	61
	90th	69	69	70	70	71	71	72	68	68	69	69	70	70	71
	95th	72	72	72	73	74	74	74	71	71	71	72	72	73	73
	99th	77	77	78	78	79	80	80	76	76	77	77	78	78	79
12~13	50th	59	59	60	60	61	61	62	59	59	60	60	61	61	61
	90th	69	70	70	71	71	72	72	69	69	69	70	70	71	71
	95th	72	72	73	73	74	75	75	72	72	72	72	73	74	74
	99th	78	78	78	79	79	80	80	77	77	77	78	78	79	79
13~14	50th	60	60	60	61	61	62	62	60	60	60	61	61	62	62
	90th	70	70	70	71	72	72	72	69	70	70	70	71	71	72
	95th	73	73	73	74	74	75	75	72	72	73	73	74	74	74
	99th	78	78	79	79	80	80	81	77	77	78	78	79	79	80
14~15	50th	60	60	61	61	62	62	63	60	60	61	61	62	62	63
	90th	70	70	71	71	72	72	73	70	70	70	71	71	72	72
	95th	73	73	74	74	75	75	76	73	73	73	74	74	75	75
	99th	78	79	79	80	80	81	81	78	78	78	79	79	80	80
15~16	50th	61	61	61	62	62	63	63	61	61	61	62	62	63	63
	90th	71	71	71	72	72	73	73	71	71	71	71	72	73	73
	95th	74	74	74	75	75	76	76	73	74	74	74	75	75	76
	99th	79	79	80	80	81	81	82	79	79	79	79	80	81	81
16~17	50th	61	61	62	62	63	63	64	62	62	62	62	63	64	64
	90th	71	72	72	73	73	74	74	71	71	72	72	73	73	74
	95th	74	74	75	75	76	76	77	74	74	74	75	75	76	76
	99th	80	80	80	81	81	82	82	79	79	80	80	81	81	82
17~18	50th	62	62	63	63	64	64	65	62	62	63	63	64	64	65
	90th	72	72	73	73	74	74	75	72	72	72	73	73	74	74
	95th	75	75	76	76	77	77	78	75	75	75	76	76	77	77
	99th	80	81	81	82	82	83	83	80	80	80	81	81	82	82
18~19	50th	63	63	64	64	65	66	66	63	63	63	64	65	65	65
	90th	73	74	74	75	75	76	76	73	73	73	74	74	75	75
	95th	76	76	77	77	78	79	79	76	76	76	76	77	78	78
	99th	82	82	82	83	83	84	84	81	81	81	82	82	83	83

주: 혈압 성장도표는 자동혈압계(Dinamap Procare 200)으로 측정된 것으로서 수은혈압계 측정치와 비교시 주의를 요함

주: 7~8은 만7세부터 만8세미만에 해당하며, 다른 연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주: 6~7세(초1)는 7~8 혈압 기준치에 준해서 접근

참고자료 : 이종국 등. 2005년도 소아청소년 신체발육 및 혈압 표준치 제정사업 연구 보고서. 대한소아과학회, 질병관리본부, 2005

□ 연령별 신장 성장도표

연령	백분위수(남아)												
	1st	3rd	5th	10th	15th	25th	50th	75th	85th	90th	95th	97th	99th
6세(초1)	105.5	107.4	108.4	110.1	111.2	112.8	115.9	119.1	120.8	122.0	123.8	125.0	127.2
7세(초2)	111.0	113.1	114.2	115.9	117.0	118.8	122.1	125.4	127.3	128.6	130.5	131.7	134.1
8세(초3)	116.3	118.5	119.6	121.4	122.6	124.4	127.9	131.4	133.3	134.7	136.6	137.9	140.4
9세(초4)	121.3	123.6	124.8	126.6	127.9	129.8	133.4	137.1	139.1	140.5	142.5	143.9	146.5
10세(초5)	126.0	128.4	129.7	131.6	133.0	135.0	138.8	142.8	145.0	146.5	148.7	150.2	153.1
11세(초6)	130.6	133.2	134.6	136.8	138.3	140.5	144.7	149.0	151.4	153.0	155.5	157.1	160.2
12세(중1)	135.1	138.2	139.9	142.4	144.1	146.7	151.4	156.2	158.7	160.5	163.0	164.7	167.9
13세(중2)	140.5	144.2	146.1	148.9	150.8	153.6	158.6	163.5	166.1	167.8	170.3	171.9	174.9
14세(중3)	146.7	150.6	152.6	155.5	157.4	160.2	165.0	169.5	171.8	173.3	175.5	176.9	179.5
15세(고1)	153.1	156.5	158.2	160.8	162.5	164.9	169.2	173.2	175.3	176.6	178.6	179.9	182.2
16세(고2)	157.5	160.3	161.7	163.9	165.4	167.5	171.4	175.2	177.2	178.5	180.5	181.7	184.1
17세(고3)	159.8	162.2	163.5	165.5	166.9	168.9	172.6	176.4	178.4	179.7	181.8	183.1	185.5

연령	백분위수(여아)												
	1st	3rd	5th	10th	15th	25th	50th	75th	85th	90th	95th	97th	99th
6세(초1)	104.7	106.6	107.6	109.1	110.2	111.8	114.7	117.8	119.4	120.5	122.2	123.3	125.5
7세(초2)	110.2	112.2	113.2	114.8	116.0	117.6	120.8	124.1	125.9	127.1	128.9	130.2	132.5
8세(초3)	115.5	117.5	118.6	120.3	121.5	123.2	126.7	130.2	132.2	133.6	135.7	137.1	139.7
9세(초4)	120.7	122.8	124.0	125.8	127.1	129.0	132.6	136.5	138.7	140.2	142.5	144.1	147.0
10세(초5)	125.7	128.2	129.5	131.6	133.0	135.1	139.1	143.3	145.6	147.2	149.6	151.2	154.2
11세(초6)	130.9	133.8	135.3	137.6	139.2	141.5	145.8	150.0	152.3	153.9	156.1	157.6	160.4
12세(중1)	136.5	139.5	141.1	143.5	145.1	147.5	151.7	155.7	157.8	159.2	161.3	162.6	165.0
13세(중2)	141.8	144.7	146.2	148.4	149.9	152.0	155.9	159.7	161.6	162.9	164.8	166.0	168.3
14세(중3)	145.3	147.9	149.2	151.3	152.6	154.6	158.3	161.9	163.8	165.0	166.9	168.1	170.3
15세(고1)	146.8	149.3	150.6	152.6	154.0	155.9	159.5	163.0	164.9	166.1	168.0	169.2	171.4
16세(고2)	148.0	150.3	151.5	153.4	154.7	156.5	160.0	163.5	165.4	166.7	168.6	169.8	172.2
17세(고3)	149.0	151.0	152.2	153.9	155.1	156.9	160.2	163.7	165.6	166.9	168.8	170.1	172.6

참고자료 :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과학회)

□ 성별 · 연령별 정상 총콜레스테롤 참고치(mg/dL)

총콜레스테롤 백분위수	5th	75th	95th
6-9세 (초1~4), 남	126	172	191
6-9세 (초1~4), 여	122	174	209
10-14세 (초5~중3), 남	130	173	204
10-14세 (초5~중3), 여	124	174	217
15-19세 (고1~3), 남	114	167	194
15-19세 (고1~3), 여	125	175	212

참고자료 : 홍창의 소아과학. 제 9판, 안효섭편, 2007

[별표 14] ■ 학교 건강검진 실시 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대한 기준 별표 2의 별첨2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결과 기재요령

구분		작성요령
1. 신체의 발달 상황	판정기준일	생년월일과 측정년월일을 학교에 함께 통보해야 함
	키	검사 방법에 의거 cm 단위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
	몸무게	검사 방법에 의거 kg 단위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
	비만도	검사 방법에 의거 체질량지수를 구하고 구분 기재
2. 척추	척추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그 '이상 증상과 징후'를 기재 ※ 예시 : 척추 질환(전만, 측만, 후만 등)	
3. 눈	시력	검사 방법에 의거 '나안' 및 '교정' 시력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안질환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결막염', '사시', '기타 증상과 징후'를 좌·우 구분 기재
4. 귀	청력	이상 유·무에 따라 '정상', '이상'을 좌·우 구분 기재
	귓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중이염', '외이도염', '기타 증상과 징후'를 좌·우 구분 기재
5. 콧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코결막염', '비염', '기타 증상과 징후'를 좌·우 구분 기재	
6. 목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편도비대', '목부위림프절비대', '갑상샘비대', '기타 증상과 징후'를 기재	
7. 피부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기타 증상과 징후'를 기재	
8. 소변 검사	요단백	'음성(-)', '약양성(±) 또는 '양성(+1~+4)'으로 기재
	요잠혈	'음성(-)', '약양성(±) 또는 '양성(+1~+4)'으로 기재
9. 혈액 검사	혈당(식전)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총콜레스테롤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중성지방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계산값)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간세포효소(AST)	검사치를 U/L 단위로 기재
	간세포효소(ALT)	검사치를 U/L 단위로 기재
혈색소	검사치를 g/dL 단위로 기재	
10. 흉부방사선 검사	이상 유·무에 따라 '정상', '비활동성', '결핵의심', 기타 이상(심장비대, 척추측만)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	
11. 혈압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mmHg 단위로 기재	
12. 허리둘레	측정방법에 의거 cm 단위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	
13. 기타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검사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결과에 대해 '검사항목' 및 그 결과를 '정상' 또는 '이상 증상과 징후'를 기재	
14. 진찰 및 상담	담당의사가 과거병력, 생활습관, 외상 및 후유증, 일반상태에 대해 적절히 기재	
15. 종합소견 및 가정에서 조치할 사항	검진 의사가 "문진표"·"진찰"·"상담"·"각종 검사 결과" 등을 최종 종합하여 - '정상', '정상(경계)' 또는 '정밀검사요함' 으로 기재하고, - 종합소견 및 가정에서 조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정밀검사요함'의 경우 해당 질환명이 아닌, 정밀검진이 필요한 증상과 징후에 대해 안내	

참고자료 : 학생 건강검사 항목개선 연구. 교육부, 2016

[서식 1]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30.>

학생건강기록부

(앞쪽)

1. 인적사항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민등록번호	~
학 교	학 년	반(이수과정 / 학과)		번 호	담 임 성 명

2. 감염병 예방접종

가. 취학 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접종여부					비 고
	1차	2차	3차	4차	5차	
디프테리아						
백 일 해						
파 상 풍						
홍 역						
유행성이하선염						
풍 진						
회색질척수염(polio)						
결 핵						
일본뇌염						
수 두						
B형 간염						

나. 취학 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학교 / 학년	접종일	대상 감염병	학교 / 학년	접종일
일본뇌염					
디프테리아					
파 상 풍					
사람유두종바이러스					

3. 건강검사 실시현황

가. 신체의 발달상황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1	2	3	1	2	3
키 (cm)												
몸 무게(kg)												
비만도												

나. 신체의 능력

구 분	단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	5	6	1	2	3	1	2	3
왕 복 오 래 달 리 기	회									
오 래 달리기-걷기 (초5~고3)	1,000m(초)	분 : 초	빈칸							
	1,600m(중·고 / 남)	분 : 초	빈 칸							
	1,200m(중·고 / 여)	분 : 초	빈 칸							
스 텝 검 사	PEI	빈칸								
앞아랫몸앞으로굽히기	cm	빈칸								
종 합 유 연 성 (무릎대고)팔굽혀펴기(중·고)	점									
윗몸말아올리기	회									
악 력	kg									
50m 달 리 기	초									
제자리멀리뛰기	cm									
체 지 방 률	%									
신체의 능력점수	점									
신체의 능력등급	등급									

다. 건강검진 현황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1학년
건강 검진	검진일		빈 칸				빈 칸		
	검진기관		빈 칸				빈 칸		
구강 검진	검진일								
	검진기관								

라. 별도검사 현황

검 사 일									
검 사 명									
검사기관									

[서식 2]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20. 1. 9.>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학 교 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 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구 분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구 분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신 체 발 달 상 황	키	cm	혈 액	혈당(식전)	mg/dL		
	몸무게	kg		총콜레스테롤	mg/dL		
	비만도			고밀도지단백 (HDL) 콜레스테롤	mg/dL		
척 추				중성지방	mg/dL		
눈	시력	좌: 우:		결 핵	저밀도지단백 (LDL) 콜레스테롤	mg/dL	
	나 안 측정 교 정	좌: 우:			간 세포 효 소	AST ALT	U/L U/L
안 질 환					혈 색 소	g/dL	
귀	청 력	좌: 우:			혈 압	수 축 기	mmHg
	귓 병					이 완 기	mmHg
콧 병					허리둘레		cm
목 병			그 밖의 사항				
피 부 병							
소 변	요 단 백						
	요 잠 혈						
진 찰 및 상 담	과거병력						
	외상 및 후유증						
	일반상태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정의사	면허번호	(인)	검진일 및 검진기관	검진일	검진기관명
	의사명				

210mm × 297mm(백상지 80g/㎡)

[서식 3]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개정 2020. 1. 9.>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학 교 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 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구강검사 결과 및 판정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공통 항목						중학교·고등학교 추가 항목						
총치	①	없음	②	있음	상 ()개 하 ()개	치주질환 (잇몸병)	①	없음	②	있음	잇몸출혈/비대() 치석 형성() 치주낭(잇몸과 치아 틈) 형성() 그 밖의 증상()	
총치발생 위험치아	①	없음	②	있음	상 ()개 하 ()개							
결손치아 (영구치에 한정)	①	없음	②	있음	상 ()개 하 ()개	턱관절 이상	①	없음	②	있음	()	
구내염 및 연조직 질환	①	없음	②	있음	()	고등학교 추가 항목						
부정교합	①	없음	②	교정 필요	③	교정 중	치아 마모증	①	없음	②	있음	()
구강위생 상태	①	우수	②	보통	③	개선 요망						
그 밖의 치아 상태	①	과잉치	②	유치 잔존	③	그 밖의 치아 상태:	제3대구치 (사랑니)	①	정상	②	이상	()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정 치과 의사	면허번호	(인)	검진일 및 검진기관	검진일	검진기관명
	의사명				

210mm × 297mm(백상지 80g/㎡)

[서식 4]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 9.>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학년도		
<input type="checkbox"/> 초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고

기관명 :

구 분	성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키 평균 (cm)	남자						
	여자						
몸무게 평균 (kg)	남자						
	여자						
비만율	저체중 (%)	남자	()	()	()	()	()
		여자	()	()	()	()	()
	정 상 (%)	남자	()	()	()	()	()
		여자	()	()	()	()	()
	과체중 (%)	남자	()	()	()	()	()
		여자	()	()	()	()	()
비 만 (%)	남자	()	()	()	()	()	
	여자	()	()	()	()	()	
수검자 인원 (명)	남자						
	여자						
	계						

작성방법

- 이 통계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 키·몸무게 평균은 성별·학년별 수검자의 키·몸무게를 평균한 값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계산한 값이 소수 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이하 제3호에서 같습니다).
- 비만율은 성별·학년별 수검자 인원 대비 저체중·정상·과체중 및 비만인 수검자 인원의 비율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 ()에는 해당 성별·학년별 수검자 인원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서식 5]

학생건강검진 통계표

2025년도			전라남도OO교육지원청(OO학교)				
□초 □중 □고 □남 □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구 분			1학년	4학년	1학년	1학년	
척추							
눈	시 력	교 정 대 상					
		교정한학생수					
눈 병							
귀	청 력 장 애						
	귓 병						
콧 병							
목 병							
피 부 병							
구강	총 치						
	치 주 질 환		공란				
	부 정 교 합						
혈 압	고 혈 압						
소 변	요 단 백						
	요 잠 혈						
검 사 인 원 수							
각종 검사	혈액 (I)	혈당(식전)	공란				
		총콜레스테롤					
		HDL					
		중성지방					
		LDL					
		AST, ALT					
	검사인원수						
	혈액 (II)	혈 색 소		공란		공란	
검사인원수							
흉 부 방사선	결 핵		공란				
	검사인원수						

※ 작성유의 사항(남·여별 구분 및 특수학교 별지 작성)

1. 항목별 질환 또는 이상이 있는 학생 수 기재⇒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2조 참조
2. 혈액(I)검사대상은 신체발달상황 검사 비만 학생만 해당(초 4학년, 중·고 1학년)
3. 혈액(II)검사대상은 고 1학년 여학생만 해당

※ 필요시 통계자료 요청 가능(본청, 교육지원청)

[참고자료 1]

학생 건강검진 기관 만족도 조사(예시)

00학교

■ 건강검진 받은 해당 병·의원을 √ 표시해주세요

일반 건강검진 기관		구강 건강검진 기관	
1-1 00병원		3-1 00치과	
1-2 00병원		6-1 00치과	
4-1 00병원			
5-1 00병원			

■ 학생건강검진 만족도에 관하여 해당란에 √ 표시해주세요

조사 내용	일반검진				구강검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1. 검진 기관과의 거리										
2. 검진 시 대기 시간의 길이										
3. 병원 직원의 친절도										
4. 검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진장비의 청결도										
5. 검진기관의 탈의실 및 대기실 등 검진환경 쾌적함 정도										
6. 종합적인 만족 정도										

■ 불만족 또는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본 만족도 조사서식은 학교 재량에 따라 조사내용을 달리할 수 있음

학생 건강검진 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예시)

00학교

■ 건강검진 만족도 조사 참여자

학년	검진자 수	만족도 조사자 수	비고
	00	00	
	00	00	
	00	00	
	00	00	
계	00	00	

■ 건강검진 만족도

조사 내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명)	%(명)	%(명)	%(명)	%(명)
1. 검진 기관과의 거리					
2. 검진 시 대기 시간의 길이					
3. 병원 직원의 친절도					
4. 검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진장비의 청결도					
5. 검진기관의 탈의실 및 대기실 등 검진환경 쾌적함 정도					
6. 종합적인 만족도 정도					

■ 불만족 또는 개선사항

[참고자료 2]

건강이상자관리카드(예시)

NO.

성명	주소	성별	남, 여	생년월일	학반 변동현황		
		연도별	학반	담임			
보호자	주소					~	
	성명		연락처	☎		~	
병명		최초발병시기				~	
현재 건강상태						~	
		치료 유무					
성격, 취미							
가족력							
가정환경							
병력							
식습관							
운동습관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상담자	직 :	성명 :	(인)				

[참고자료 3]

학생 건강검진 기관 계약 관련 서류 간소화 방안으로 마련한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작성된 서식(안)으로 학교 필요에 따라 검진기관 계약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학생 검진기관으로서 아래 계약내용,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검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합니다.(계약서 작성 생략)

<input type="checkbox"/> 검진기관		(전화번호: _____)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원장성명	(인)

<input type="checkbox"/> 계약내용			
계약건명	2025년도 ○○학교 학생 건강검진		
1인당 검진비용	1학년	4학년	4학년 비만학생
검진대상	1, 4학년 학생 _____ 명 중 방문학생		
검진기간	2025년 월 일 ~ 월 일	검진완료일	2025년 월 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검진대상인원*검진비용)의 10%		
지연배상금	검진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매1일마다 청구금액(검진인원*검진비용)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
2.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검진기관은 교육부 고시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3. 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 건강검사(구강검진)결과 통보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이 보관,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
4. 검진기관 준수사항
 - 가.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 안내서 (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한다.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 다.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 라.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 마.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 바.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5. 사고책임: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비용: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 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8. 손해배상: 검진기관은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이 “학교장”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검진기관에 부당한 보상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9. 검진취소 등: 천재지변 또는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에는 학교는 즉시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사회 통념상 부득이한 사정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10. 계약조건: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청렴계약특수조건은 학교에서 교부)
11. 계약 시 제출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각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통장사본

[참고자료 4]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9. 27.>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 (제4조제2항 관련)

신청자격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가. 종합병원 나. 병원(요양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의원 라.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하며, 이하 "보건소"라 한다) 마. 의사를 두어 의과진료과목을 추기로 설치·운영하는 한방병원 및 차과병원	가. 의사: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1명을 두되, 끝수(연평균 일일 검진인원을 25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1명을 추가한다. 나.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 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 ※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연간 검진인원을 실적료일수로 나눈 검진인원(이하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라 한다)이 15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라. 방사선사 1명 이상 ※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방사선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가. 진찰실 나. 탈의실 다. 검진대기실 라. 임상검사(검체검사 및 진단의약품)를 포함한다를 하는 시설 마. 방사선촬영실	가. 신장 및 체중계 나. 혈압계 다. 시력검사표 라. 청력계기 마. 원심분리기 바. 혈액학검사기기 사. 혈액화학분석기 아. 방사선촬영장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로서 방사선직접촬영장치를 말한다.

- 비고: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기준의 라목, 장비기준의 바목 및 사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력기준의 라목, 시설기준의 나목 및 마목, 장비기준의 아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3.3.23>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가. 치과 병원·의원 나. 치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 다. 구강검진만을 목적으로 치과의사를 고용한 일반검진기관
인력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 의사 1명 이상 나.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1명 이상
시설기준	가. 구강검진실 나. 검진대기실
장비기준	가.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중 품목별 등급 A68010 장비이어야 한다. 나. 고압멸균소독기 다. 치경, 탐침 및 핀셋 라. 교육용 치아모형 세트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9. 27.>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관련)

구분	인력기준	장비기준	차량기준	그 밖의 사항
일반 검진	가. 의사: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100명당 1명을 두되, 끝수(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수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1명을 추가한다. 나. 간호사 1명 이상 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 라. 방사선사 1명 이상	가. 신장 및 체중계 나. 혈압계 다. 시력검사표 라. 청력계기 마. 원심분리기 바. 방사선 촬영장치	의료기관의 개설자(대표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증 상 소유자인 출장검진차량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출장검진 차량을 갖추야 한다. ※ 출장검진차량이란 출장검진을 위하여 자동차에 해당 기준에 따른 장비를 갖추고 진료공간과 탈의공간을 구분한 차량을 말한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나. 방사선촬영장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장비로서 방사선직접 촬영장치를 말한다.
구분	인력기준	장비기준	차량기준	그 밖의 사항
구강 검진	가. 치과의사: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100명당 1명을 두되, 끝수(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수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1명을 추가한다. 나. 간호사 또는 치과 위생사 1명 이상	가. 치경 나. 탐침 다. 핀셋 라. 라이트	의료기관의 개설자(대표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증 상 소유자인 출장검진차량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출장검진 차량을 갖추야 한다. ※ 출장검진차량이란 출장검진을 위하여 자동차에 해당 기준에 따른 장비를 갖추고 진료공간과 탈의공간을 구분한 차량을 말한다.	가. 치과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나.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중 구강검진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6

학생 건강기록부 관리

□ 근거

-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25호, 2022. 12. 26.)
『학교건강검사규칙』(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원본을 차기 검진 시 검진기관에 제출
토록 한 규정 삭제)

□ 자료의 보관

-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간
계속적으로 기록·관리해온 학생건강기록부 출력물(중전의 건강기록부를 포함한
다.)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
 - 전산매체에 저장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존
- 학생이 휴학, 퇴학, 사망 및 중·고등학교에 미진학 시에는 최종적으로 재적하였던
학교에서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자료(중전의 건강기록부를 포함한다.) 및 출력물을
5년간 당해 학교에 보존
- 학생이 재·전·편입학할 때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건강기록부 전산매체와
함께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을 해당 학교로 이관
- 위항에 해당하지 않는 출력물과 보조부 등은 사용 용도가 소멸되는 즉시 폐기

□ 출력물관리

- 학생건강기록부의 전산자료 및 그 출력물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교부되거나, 학생의전·편입학,
상급학교 진학 등 공무에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로 반출 또는
유출 금지

□ 자료의 정비

- 매 학년말 학생건강기록부 입력사항을 각종 보조부 내용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여야
하며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
 - 단, 재·전·편입학 등 학생 재적사항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처리와 동시에
대조·확인

□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처리방법

- 결과통보서를 받은 즉시 내용 확인 및 학생건강기록부에 기록, 필요한 조치 후 학교
자율적으로 관리
 -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치료지도 자료로 활용, 학년말 입력사항 대조·확인 필요 시
수정 후 폐기

7 법정 감염병의 분류체계 및 신고시기('25. 1. 기준)

구분	제1급 감염병 (17종)	제2급 감염병 (21종)	제3급 감염병 (28종)	제4급 감염병 (23종)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1. 에볼라바이러스병 2. 마버그열 3. 라싸열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5. 남아메리카출혈열 6. 리프트밸리열 7. 두창 8. 페스트 9. 탄저 10. 보툴리눔독소증 11. 야토병 12. 신종감염병증후군 ¹⁾ 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1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6. 신종인플루엔자 17. 디프테리아	1. 결핵 2. 수두 3. 홍역 4. 콜레라 5. 장티푸스 6. 파라티푸스 7. 세균성이질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9. A형간염 10. 백일해 11. 유행성이하선염 12. 폴리오 13. 수막구균 감염증 14.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15. 폐렴구균 감염증 16. 한센병 17. 성홍열 18. 반코마이신내성황색 포도알균(VRSA)감염증 19. 카바페넴내성장내 세균속군목(CRE) 감염증 20. E형간염 21. 풍진(선천성, 후천성)	1. 파상풍 2. B형간염 3. 일본뇌염 4. C형간염 5. 말라리아 6. 레지오넬라증 7. 비브리오패혈증 8. 발진티푸스 9. 발진열 10. 찻찻가무시증 11. 램토스피라증 12. 브루셀라증 13. 공수병 14. 신증후군출혈열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17. 황열 18. 뎅기열 19. 큐열 20. 웨스트나일열 21. 라임병 22. 진드기매개뇌염 23. 유비저 24. 치쿤구니야열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6. 지카바이러스감염증 27. 엠폭스(Mpox) 28. 매독(1기, 2기, 3기, 선천성, 잠복)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2. 회충증 3. 편충증 4. 요충증 5. 간흡충증 6. 폐흡충증 7. 장흡충증 8. 수족구병 9. 임질 10. 클라미디아감염증 11. 연성하감 12. 성기단순포진 13. 침규곤딜롬 14.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5. 반코마이신내성장 알균 (VRE) 감염증 16. 메티실린내성황색 포알균(MRSA) 감염증 17.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18. 다제내성아시네토 박터 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19. 장관감염증 ²⁾ 20. 급성호흡기감염증 ³⁾ 21. 인플루엔자 22. 해외유입 기생충감염증 ⁴⁾ 23.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감시	전수	전수	전수	표본
신고기간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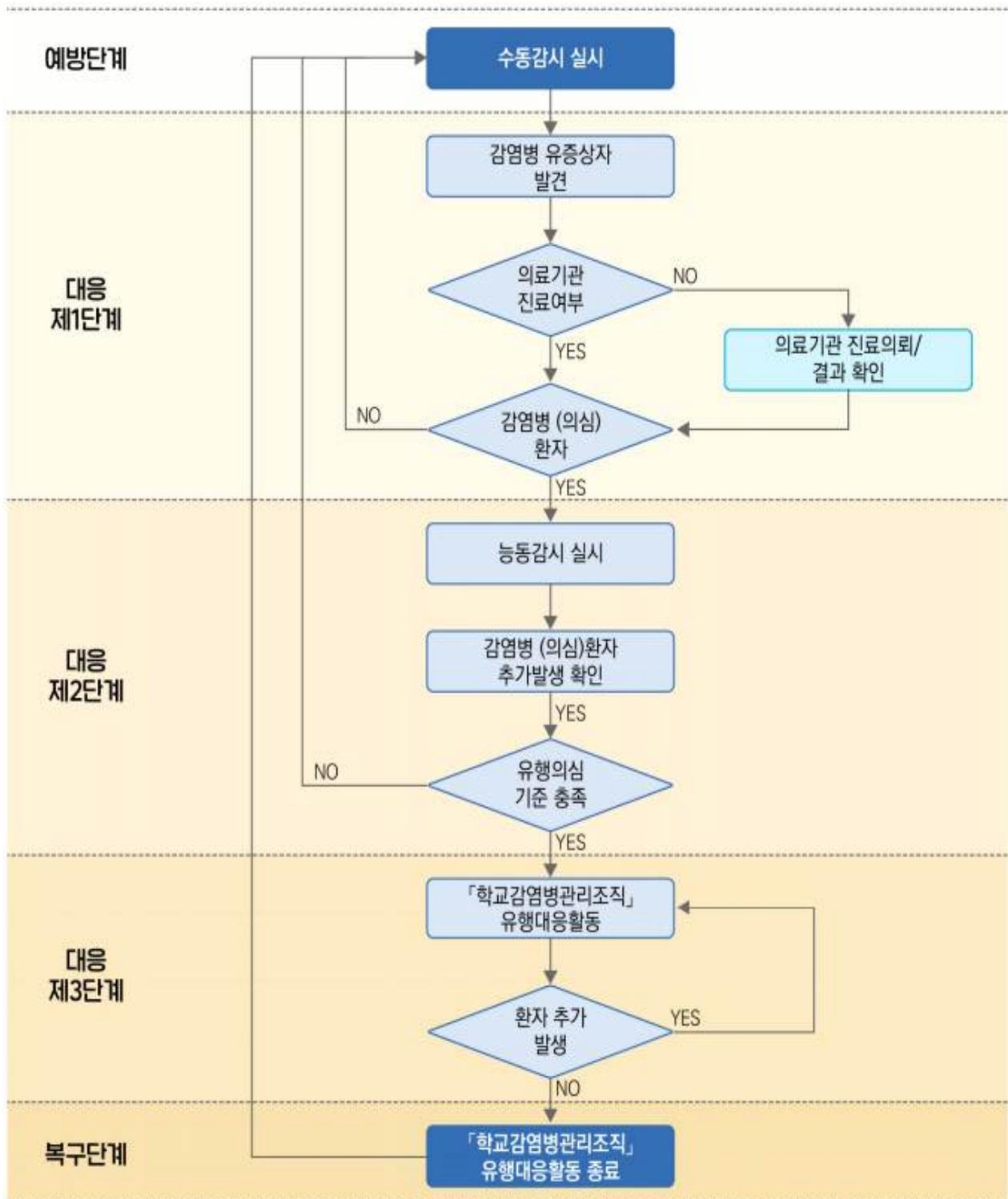
- 1) 신종감염병증후군: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 2) 장관감염증: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 3) 급성호흡기감염증: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
- 4)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샤가스병, 주혈흡충증,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독소포자충증, 메디나충증
- 5) 신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로 신고
 - ※ 학교장 신고 감염병(8종):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은 즉시 보건소 신고

8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대응 단계



※ 이 매뉴얼에서 제시한 학교 내 조직구성 및 구성원 역할은 예시이므로 각 학교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감염병 대응 업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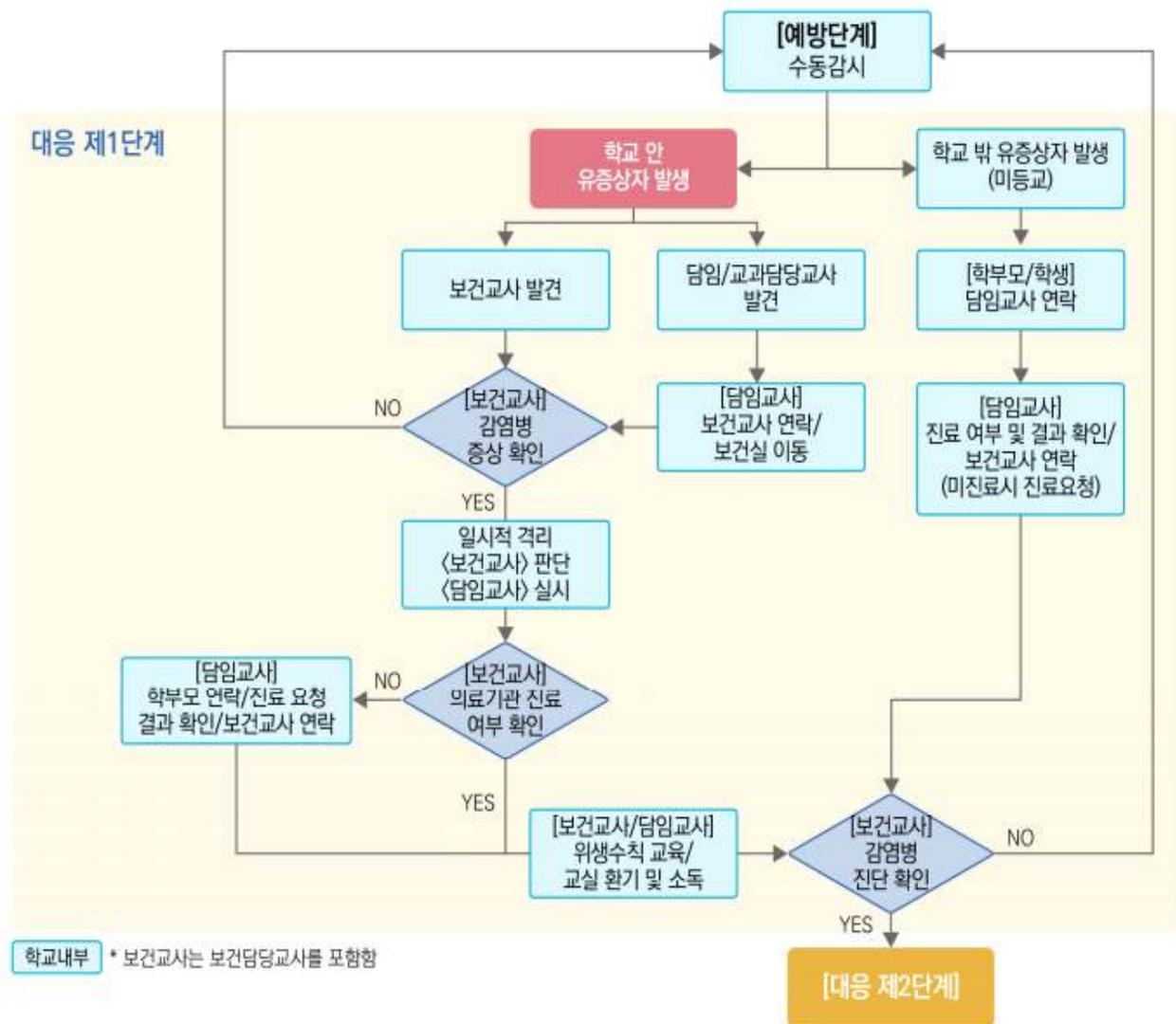


※ 이 매뉴얼에서 제시한 학교 내 조직구성 및 구성원 역할은 예시이므로 각 학교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대응 제1단계: 학교 내 감염병 유증상자의 발견 및 확인 단계

【대응 제1단계 상황 및 기간】

상황	시작 시점	종료 시점	후속 조치
감염병 유증상자 존재	유증상자 발견	의료기관 진료 결과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을 확인	⇒ 대응 제2단계
		감염병이 아닌 것으로 확인	⇒ 예방단계



【감염병 대응 제1단계 업무흐름도】

【대응 제1단계 주요 활동과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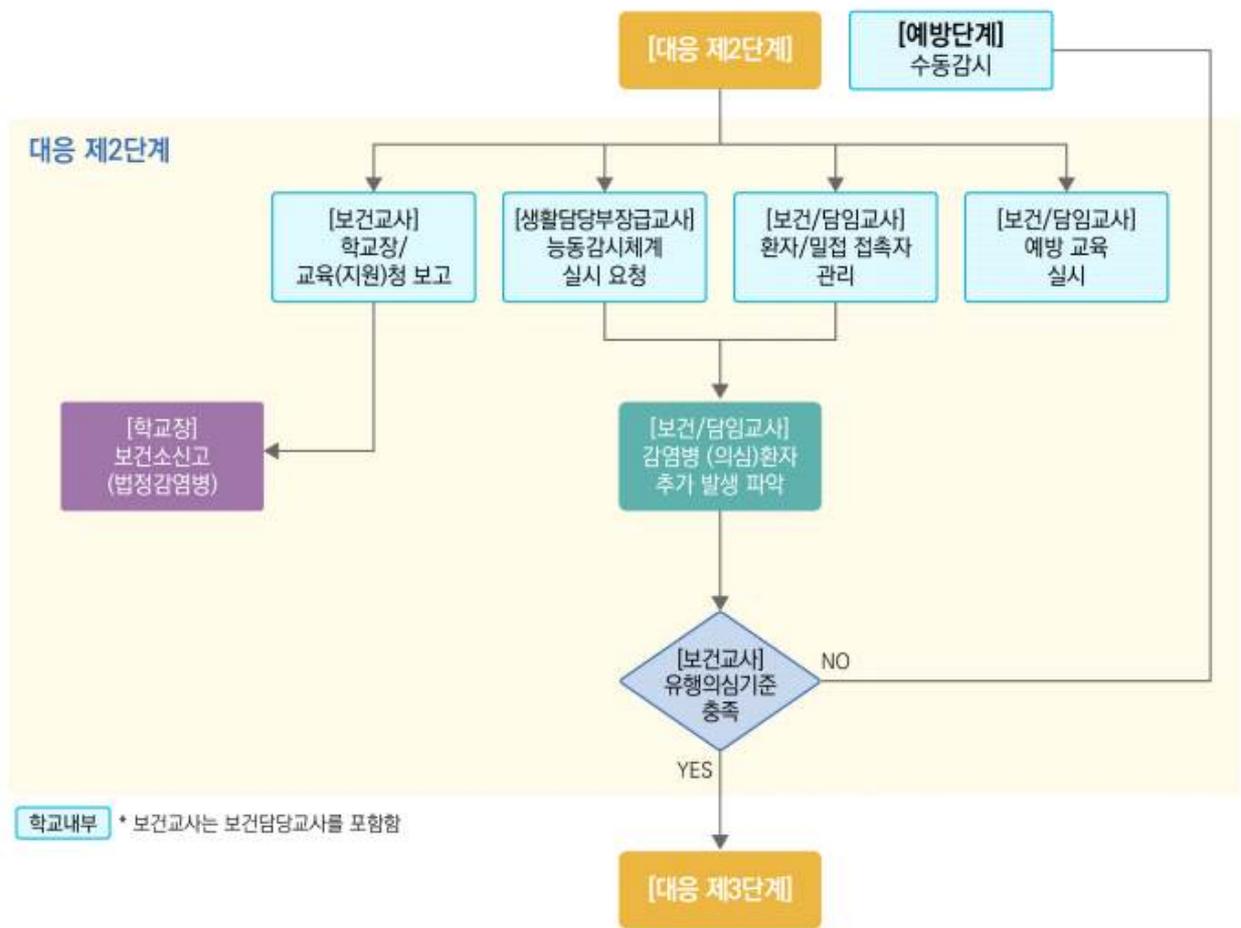
활동	담당	관련 조치사항	관련 자료
감염병 유증상자 발견	담임·교과담당교사 보건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 3-2], [그림 3-1] • [표 3-3], [그림 3-2]
보건교사에게 연락	담임· 교과담당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착용 필요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 3-2], [표 3-3] • 마스크 착용 감염병 참조 • 주 증상이 기침, 발열 또는 발열 동반 두통, 인후통, 침샘 비대인 경우 마스크 착용
보건실로 유증상자 이동	담임· 교과담당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의심)환자 이동수칙 준수 	
감염병 여부 확인 (의심증상, 질환명, 진료 여부)	보건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의심 증상 확인 • 일시적 관찰 필요성 판단 및 실시 • 담임교사에게 필요 조치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 환기 및 소독 - 학생 위생수칙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 3-2], [표 3-3] • 감염병의 증상 • [표3-5] • 일시적 격리 운영 방안 참조 <p style="text-align: center;">관찰</p>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의료기관 진료 요청	담임· 보건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교중지 안내문' 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 1]
의료기관 진료 결과 확인 및 조치	담임· 보건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교사는 진료 확인 결과를 보건교사에게 연락 • 등교중지에 따른 출결 처리를 위해 관련 서류 제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개

* 보건교사는 보건담당교사를 포함

대응 제2단계: 학교 내 감염병 유행 의심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대응 제2단계 상황 및 기간】

상황	시작 시점	종료 시점	후속 조치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감염병 (의심)환자 존재	의료기관 진료 결과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확인	추가 (의심)환자 발생 확인을 통해 유행 의심 기준을 충족	⇒ 대응 제3단계
		기존 (의심)환자가 완치되고 추가 (의심)환자가 미발생	⇒ 예방단계



【감염병 대응 제2단계 업무흐름도】

【대응 제2단계 주요 활동과 담당】

활동	담당	관련 조치사항	관련 자료
보고 및 신고	학교장 보건교사 담임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사실을 학교장에게 보고 나이스(NEIS)로 교육(지원)청에 보고 신고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인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59쪽 참고
능동감시 실시	발생감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교사는 능동감시의 범위와 방법을 학교장에게 보고 학교장은 부장급 교사를 통해 능동감시 실시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 3-8] 학교 내 능동감시체계 운영 방안 참조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담임· 보건교사		
감염병 (의심) 환자가 속한 학급 관리	담임· 보건교사		
유행의심 여부 확인	보건교사		48쪽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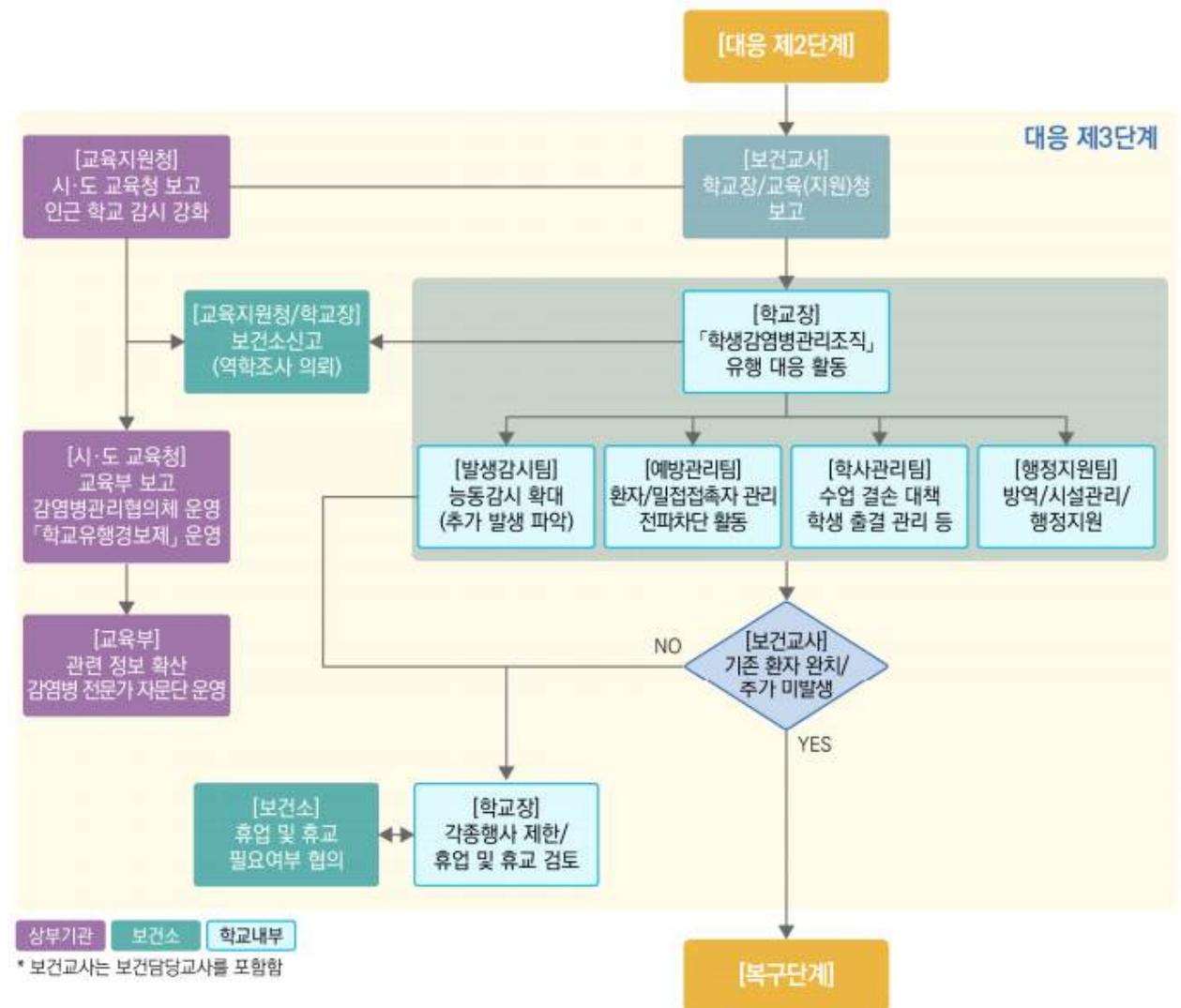
* 보건교사는 보건담당교사를 포함

※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3차 개정판」 (2023. 12.) 참고

대응 제3단계: 학교 내 유행 확산 차단

【대응 제3단계 상황 및 기간】

상황	시작 시점	종료 시점	후속 조치
동일 학급에 감염병 (의심)환자 2명 이상 존재	추가 (의심)환자 발생 확인을 통해 유행의심 기준 충족	기존의 모든 (의심)환자가 완치되고 추가 (의심)환자가 미발생	⇒ 복구단계



【감염병 대응 제3단계 업무흐름도】

【대응 제3단계 주요 활동과 담당】

활동	담당	관련 조치사항	관련 자료
「학생 감염병 관리 조직」 활성화	학교장 전 교직원		
보고 및 신고	학교장 보건교사 담임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교사는 유행의심 상황과 환자 발생 현황을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보고 • 환자 발생을 나이스(NIES)에 등록 • 신고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인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59쪽 참조
능동감시 체계 강화	발생감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시 대상: 학생 및 교직원 • 환자 수의 증가로 능동감시 보고 체계 및 구성원의 역할 강화 	
(의심)환자 및 유증상자 관리	담임·보건교사		
밀접접촉자 및 고위험군의 파악·관리	담임·보건교사		47쪽 참조 '밀접접촉자 정의 및 관리 방안'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담임·보건교사		
방역 활동	행정지원팀		
역학조사 요청 및 지원	학교장 보건교사 담임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방역당국에 역학조사 요청 • 역학조사 상황을 교육청에 보고 	
전파 차단을 위한 별도 조치 시행	학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행확산 정도에 따라 학사일정 조정 및 각종 교육 활동에 대한 제한 검토 및 실시 	47쪽, 90쪽 참조
출결관리 및 수업결손대책 마련	학교장 학사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교중지 학생의 출석 인정 처리 • 등교중지 학생의 수업결손 대책 마련 및 실시 	58쪽 참조

* 보건교사는 보건담당교사를 포함

9 나이스(NEIS)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 관리

가. 감염병 환자 등록

- ▶▶ 개요: 감염병 환자들을 등록, 일괄등록, 조회, 보고 할 수 있는 메뉴
- ▶▶ 메뉴 경로: [보건-감염병환자관리-감염병 환자등록]

1) 감염병환자등록

□ 화면

■ 감염병환자등록

🏠 ...감염병환자등록
🔍
🗨️
📄
📧
📅
🌟
주소

검색일 2024.12.01. ~ 2025.01.16.

보고여부 전체

치료현황 전체

성명 학생찾기

🔍 조회

※ 보고서가 생성된 학생은 해당메뉴에서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

※ 보고서가 생성되었으나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경우 [감염병보고제출] 메뉴에서 해당 보고서를 삭제한 후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 보고서가 생성되어 제출된 학생은 [감염병환자조회및수정보고제출] 메뉴에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보고서가 생성된 학생은 해당 메뉴에서 보건소신고일을 저장할 수 없으므로 [감염병보고제출]메뉴에서 보고서 제출 후 [감염병환자조회및수정보고제출] 메뉴에서 보건소신고일을 저장합니다.

▶

■ 감염병환자목록 Total 3

에듀팩인기안신청
교육정보고서생성
등록
저장
삭제

<input type="checkbox"/>	순번	발생일자	성명	학년/년/번호	병명	증상	전자결재상태	확진여부	치료현황	등교중지현황	발견경위	교육정보고여부	보건소신고일	참고사항
<input type="checkbox"/>	1	2024.12.20.			성홍열	발열 및 발진 등	비대상	의심	완치	등교중지	개인진료	보고		
<input type="checkbox"/>	2	2024.12.20.			성홍열	발열 및 발진, 인후통	비대상	확진	동원치료	등교중지	개인진료	보고		
<input type="checkbox"/>	3	2024.12.20.			성홍열	발열 및 발진, 인후통	비대상	의심	완치	등교	개인진료	보고		

□ 화면설명

- 감염병 발병 학생이 존재할 때 등록 또는 삭제함
- 검색일을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 시 입력한 발생일자일을 기준으로 감염병 환자의 등록 내용이 조회됨
-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등록화면이 조회됨, 먼저 학생 찾기를 통하여 감염병환자등록 대상 학생을 선택하고 발생일자일, 치료현황, 병명, 확진여부, 발견경위, 등교중지 여부, 주요증상, 참고사항 등을 입력하고 저장

※ 참고사항

- 동일한 성명, 발생인지일, 병명은 중복으로 등록 불가능함
- 보고서가 생성된 학생은 [감염병환자제출]메뉴에서 교육청 제출 전 삭제 가능

감염병환자수정 X

■ 감염병환자등록

※ 감염병환자 데이터 수정시 추가 입력이 아닌 조회 화면의 해당학생 성명을 선택 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환자의 치료현황 변경시 참고사항에 해당내용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명에서 [기타(법정)] 또는 [기타(비법정)]을 선택하시면 감염병명을 직접입력 할 수 있습니다.

*성명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학생찾기"/>	학년/반/번호	
발생인지일	<input type="text"/>		*치료현황	<input type="text" value="선택"/>
*병명	<input type="text" value="법정"/> <input type="text" value="선택"/>			
*발견경위	<input type="text" value="선택"/>		*등교중지여부	<input type="text" value="선택"/>
완치일자	<input type="text"/>		*확진여부	<input type="text" value="선택"/>
*주요증상	<input style="height: 30px;" type="text"/>			
참고사항	<input style="height: 30px;" type="text"/>			

□ 추가정보

- 감염병 환자 등록시 환자의 병명을 지정하게 되면, 추후 감염병 통계 생성시에 자동으로 법정/비법정 감염병을 분류하여 통계를 생성하게 되므로 편리함
- 에듀파인기안신청은 보건소 전자결재 연동되어 있음, 에듀파인기안신청이 되면 전자결재 상태가 발송으로 변경되며 전자결재 상태가 미상신, 발송실패, 사용자ID없음, 결재, 중단 상태의 항목에 대해서만 상신할 수 있음

2) 교육정보고서 생성

□ 화면

감염병환자발생보고
✕

■ 감염병환자발생보고
↶ ↷

*보고일시	2025.01.16. 📅 12:32	
*학교명		*학교장
*소재지		*전화
*학생수		*교직원수
*급수형태	일반상수도 ▼	*급식형태
		직영자체조리급식 ▼

Total 1 ⚙️

학년	반	발생 인지일	감염병	확진여부	발병학생수		발병학생 치료현황				등교중
					금번	연간 누계	입원	통원 치료	보고 오류	소계	
2	1	2025.01.16.	인플루엔자	의심	1	1	1	0	0	1	1

*학교조치사항	무
*방역기관조치사항	무
*향후조치계획	무

저장
닫기

□ 화면설명

- [감염병환자등록] 메뉴의 조회결과에서 교육청에 보고할 감염병 학생을 선택하고 {교육청 보고서생성} 버튼을 클릭함
- 감염병환자발생보고 팝업 화면이 조회되면 보고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함
- [감염병환자등록] 메뉴에서 교육청 보고서 생성이 완료되면 [감염병보고제출] 메뉴에서 제출함

※ 참고사항

- 제출된 보고에 대해서 수정제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메뉴가 아닌 [감염병환자조회및 수정보고제출]에서 수정 후 보고서 재생성해야 함
- 감염병환자발생보고 팝업창 생성 시 상단의 학교명, 학교장 등의 정보는 가장 마지막 보고서 기준으로 조회됨

나. 감염병 환자 일괄등록

▶▶ 개요: 감염병환자들을 일괄 등록할 수 있음

▶▶ 메뉴 경로: [보건-감염병환자관리-감염병환자일괄등록]

화면

감염병환자 일괄등록 ...감염병환자일괄등록

학년도 2024 학년 1 반 1 조회

감염병환자일괄등록 Total 17 [일괄적용항목] 발생인지일 감염병명 확진여부 치료현황 등교증지현황 발건경위 주요증상 참고사항 일괄적용 저장

선택	순번	성명	*발생인지일	*감염병명	*확진여부	*치료현황	*등교증지현황	*발건경위	*주요증상	참고사항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text"/>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text"/>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text"/>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text"/>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text"/>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text"/>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input type="checkbox"/>	7		<input type="text"/>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input type="checkbox"/>	8		<input type="text"/>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input type="checkbox"/>	9		<input type="text"/>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text"/>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화면설명

- 다수의 감염병 발병 학생이 있을 경우 발생인지일과 치료현황을 일괄등록 또는 저장함
- 학년도, 학년, 반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건에 따른 감염병환자 일괄등록 가능한 학생목록이 조회됨
- 좌측의 체크박스를 통해 일괄입력 대상 학생을 선택함
- 입력항목을 선택한 후 입력값을 선택하거나 입력하고 [일괄적용]을 클릭하면 선택한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됨
- 데이터 입력이 끝나면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함

다. 감염병보고 제출

- ▶▶ 개요: [감염병환자관리-감염병보고제출]메뉴에서 감염병환자 발생 현황을 상급 기관에 보고함
- ▶▶ 메뉴경로: [보건 - 감염병 환자관리 - 감염병 환자조회 및 수정보고제출]

화면

■ 감염병보고제출

...감염병보고제출
?
🗨
📄
📧
📅
🌟
축소

*학년도 2024
조회

※ 제출된 보고서는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
 ※ 보고서 제출 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감염병환자조회및수정보고제출]메뉴에서 수정사항을 반영하시고 수정보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승인요청
제출
출력
삭제

□	보고일시	발병학생수	발생학생 치료현황			완치자수	등교중지현황	제출여부	수정보고여부	결재여부
			임원	동원치료	보고오류 (삭제대상)					
□	2024.12.20. 10:45	3	0	1	0	2	2	제출		
□	2024.06.26. 09:50	2	0	2	0	0	1	제출		
□	2024.05.14. 11:07	1	0	1	0	0	1	제출		

화면설명

- 학년도를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학년도에 [감염병환자등록] 및 [감염병 환자조회및수정보고제출]메뉴에서 생성된 보고서가 목록에 조회됨
- 목록을 클릭하여 보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감염병보고제출]메뉴에서 미제출 상태인 보고서는 삭제 후 수정이 가능함
- 미제출 상태의 보고서를 클릭하면 조회되는 '감염병보고수정'팝업화면에서 학교조치 사항, 방역기관조치사항, 향후조치계획을 수정할 수 있음
- 목록에서 제출할 내역들을 체크하고 {제출}버튼을 클릭하면 교육청에 전송됨
- 목록에서 출력할 내역을 체크하고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 양식 형태로 조회, 저장 및 인쇄할 수 있음
- 보고서 제출 전후 {승인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각 학교마다 결재를 진행할 수 있음

라. 감염병환자조회 및 수정보고제출

▶▶ 개요: [감염병환자관리-감염병환자조회및수정보고제출]메뉴에서 감염병 발병 학생을 조회함

▶▶ 메뉴 경로: [보건 - 감염병 환자관리 - 감염병환자조회 및 수정보고제출]

□ 화면

■ 감염병환자조회및수정보고제출

*검색일 2024.01.16. - 2025.01.16. 치료현황 전체 *성명 학생찾기 🔍 조회

- ※ 보고서가 제출된 학생의 경우에만 해당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원치된 학생은 치료현황을 원치로 수정하고 수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감염병환자로 등록되어 보고된 학생이 잘못보고된 경우 학생의 치료현황을 보고오류로 수정하시고 수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보건소신고일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보건소신고일 수정보고창이 뜹니다. 보고서 저장 후 [감염병보고제출]메뉴에서 보고서 제출합니다.

■ 감염병환자조회및수정보고제출 Total 6

<input type="checkbox"/>	발생일자	원치일자	성명	학년/번/번호	병명	증상	확진여부	치료현황	등교중지현황	발견경위	수정여부	보건소신고일	장
<input type="checkbox"/>	2024.12.20.	2024.12.16.			성홍열	발열 및 발진 등	의심	원치	등교중지	개인진료			<input type="button" value="장"/>
<input type="checkbox"/>	2024.12.20.				성홍열	발열 및 발진, 인후통	확진	동원치료	등교중지	개인진료			<input type="button" value="장"/>
<input type="checkbox"/>	2024.12.20.	2024.12.18.			성홍열	발열 및 발진, 인후통	의심	원치	등교	개인진료			<input type="button" value="장"/>
<input type="checkbox"/>	2024.06.26.				유행성각결막염	충혈, 안통, 이물감	의심	동원치료	등교	개인진료			<input type="button" value="장"/>
<input type="checkbox"/>	2024.06.26.				수족구병	발열, 손, 발바닥 및 구강 내 수포 및 궤양	확진	동원치료	등교중지	개인진료			<input type="button" value="장"/>
<input type="checkbox"/>	2024.05.14.				유행성이하선염	발열 및 침샘 비대, 동통	의심	동원치료	등교중지	개인진료			<input type="button" value="장"/>

□ 화면

■ 감염병환자수정

■ 감염병환자수정

- ※ 감염병환자 데이터 수정시 추가 입력이 아닌 조회 화면의 해당학생 성명을 선택 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 환자의 치료현황 변경시 참고사항에 해당내용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병명에서 [기타(법정)] 또는 [기타(비법정)]를 선택하시면 감염병명을 직접입력 할 수 있습니다.

*성명 학년/번/번호 2/3/1

발생일자 2023.09.26. *치료현황 동원치료

*병명 법정 인플루엔자

*발견경위 개인진료 *등교중지여부 등교중지

원치일자 *확진여부 확진

*주요증상 발열

참고사항

□ 화면설명

- [감염병환자등록]메뉴에서 교육정보고서생성 후 [감염병보고제출]메뉴에서 보고서가 제출된 감염병 환자를 조회할 수 있음
- [감염병보고제출]메뉴에서 보고서 제출 후 수정사항이 발생했거나 완치, 보고오류(삭제 대상)을 교육청으로 보고해야 할 경우 이 메뉴에서 수정·저장·보고서 생성 후 [감염병 보고제출] 메뉴에서 교육청으로 제출함
- 조회결과에서 수정 또는 추가 보고가 필요한 학생을 더블클릭하면 조회되는 감염병환자 수정팝업화면에서 내용을 수정한 후 저장함
- 내용이 수정된 학생은 좌측의 체크박스가 활성화됨
- 보건소 신고일을 입력하면 {저장}버튼을 클릭→안내 메시지를 확인→‘감염병환자발생 보건소 신고일 수정보고’ 팝업화면에서 수정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하면 보고서가 생성되어 [감염병 보고제출]메뉴에서 교육청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수정한 학생이 다수일 경우 좌측의 체크박스(왼쪽 끝)을 통해 선택한 후 {보고서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보고서를 일괄생성한 후 {감염병보고제출}메뉴에서 제출함

마. 감염병발생통계및추이조회

- ▶▶ 개요: 학교의 감염병 발생, 통계 및 추이를 조회할 수 있음
- ▶▶ 메뉴경로: [보건-감염병환자관리-감염병발생통계및추이조회]

화면

감염병발생통계및추이조회

감염병발생통계 | 감염병발생추이

*발생년도: 2024 *검색일: 2024.12.16. - 2025.01.16.

통계 | 시각화통계

1. 법정 전염병

구분	전염병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제군	성홍열		3							3
계			3							3

화면설명

- 발생년도, 검색일을 설정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기간에 감염병 발생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화면

감염병발생통계및추이조회

감염병발생통계 | 감염병발생추이

*발생년도: 2024 *검색일: 2024.03.01. - 2025.01.16.

통계 | 시각화통계

감염병발생통계

■ 유행성아파진열
 ■ 성홍열
 ■ 수두구진
 ■ 유행성카탈막염

□ 화면설명

- 발생년도, 검색일을 설정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기간에 감염병 발생현황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음

□ 화면



□ 화면설명

- 발생년도 및 기준일자, 주기, 감염병 종류를 선택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조건에 따른 발생추이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음
- 기준일자는 '발생일자' 혹은 '보고일자'로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고, 주기는 '일자', '주기', '월간', '년간'으로 구분 조회함
- 마우스를 대면 왼쪽에 박스가 조회됨

10

학교 방역물품 비축 권장 모형

-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발열감시, 전파 차단, 소독 등을 위해 학교 방역물품 비축 권장 모형을 참고하여 적정수량을 확보해야 함
- 방역물품 소모 시 추가 구매를 통하여 수량 유지
- 교실 비축 물품(체온계, 마스크, 장갑, 알코올 손 소독제)은 학교 여건에 맞는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되, 가급적 학생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 모든 방역물품은 제품 용기에 표시된 기한까지 사용(기간이 지나면 폐기 및 재구매(비축))

< 학교 방역물품 비축 권장 모형 >

비축 목적	방역 물품	비축 우선순위 ¹⁾	비축 기준 ²⁾	
			비축 장소	비축 물량
발열 감시	고막 체온계	높음	교실	교실당 1개
			보건실	1개
	비접촉체온계		교실	교실당 1개
			보건실	1개
장갑	의료용 장갑 ³⁾	높음	교실	교실당 5개
마스크	보건마스크 (KF80 이상)	높음	교실	교실당 20개
			보건실	학생 10명당 3개
	수술용		교실	교실당 20개
			보건실	학생 10명당 3개
손 소독	알코올 손 소독제	높음	교실	교실당 4개
			보건실	8개
환경 소독	락스 ⁴⁾	높음	보건실	2개
	살균 티슈 ⁵⁾		보건실	보건실 운영일 × 소독필요 물품 수

- 1) 비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동일 물품 중 우선순위가 높은 물품을 우선적으로 비축하되, 이미 우선 순위가 낮은 물품을 비축 기준에 맞게 기보유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비축할 필요가 없음
- 2) 보건실이 없는 경우는 교육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장소에 비축하고, 관리 인력을 지정함.
소규모의 초중고(예: 50명 미만)의 경우 장갑과 마스크 및 알코올 손 소독제에 대한 비축기준은 상기 표의 기준과 무관하게 의료용 장갑은 최소 10개에서 총원의 1/2만큼 비축하고, 마스크는 총원만큼 비축을 권장함.
- 3) 라텍스 또는 니트릴 장갑이 권장되며 비닐장갑은 사용을 권하지 않음.
전파 위험이 있는 분비물(콧물, 농 등)이 나오는 학생과 접촉해야 하는 경우 사용
- 4) 염소 농도가 5.25~6.15%인 소독약품을 1:500 비율로 희석한 후 용기에 담아 소독용 거즈와 함께 교실에 제공하여 교실 자체 소독에 이용
- 5)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70% 이상 함유된 제품을 권장

11 **주요 감염병별 역학적 특성과 관리 방안**

감염병	임상 증상	전염 가능 기간	전파 차단을 위한 등교중지(격리) 기간 ¹⁾²⁾	잠복기 ³⁾
A형간염	피로감, 발열, 오한, 복부 불쾌감, 오심, 구토	임상증상 시작되기 2주전~황달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 1주일	황달 증상 이후 7일간(황달증상 없으면 입원일로부터 7일간)	15-50일 (평균 28일)
세균성이질	발열, 복통, 구토, 위무직을 동반한 설사	발병 후 4주 이내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검사가 음성일때까지	12시간-6일 (평균 2-4일)
수두	피부 발진, 수포, 발열, 피로감	발진 1~2일 전부터 모든 피부병변에 가피가 생길 때까지	모든 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10-21일 (평균 14-16일)
유행성 이하선염	이하선부종, 발열, 두통, 근육통	이하선염 3일 전부터 발생 후 5일까지	증상 발생 후 5일까지	14-25일 (평균 14-18일)
백일해	상기도 감염 증상, 발작적 기침, 구토	2주간 전염력이 높으며 증상 발생 4주 후에는 전염성이 소실	항생제 투여 후 5일까지	7-20일 (평균 5-10일)
홍역	발진, 발열, 기침, 콧물, koplik 반점	발진 발생 4일 전부터 발진 발생 5일 후까지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7-18일 (평균 10-12일)
결핵	발열, 전신 피로감, 식은땀, 체중 감소	약물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약물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수년까지 가능 (50% 2년 이내)
성홍열	미만성 구진, 발열, 두통, 구토, 복통, 오한 및 인후염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1-3일
인플루엔자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기침, 객담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5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행 차단을 위한 등교중지는 의미없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실시 증상 발생 후 감염력이 소실(해열제 복용 없어도 해열 후 24시간 경과)될 때까지⁴⁾ 	1-4일 (평균 2일)
수족구병	발열, 손, 발바닥 및 구강 내 수포 및 궤양	발병 후 7일간이 가장 전염력 강함, 피부 병변(수포)에 가피가 생성될 때까지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3-7일
노로바이러스	오심, 구토, 설사, 복통, 권태감, 발열	급성기부터 설사가 멈추고 48시간 후까지	증상 소실 후 48시간까지	24-48시간 (평균 33시간)
급성 출혈성 결막염	충혈, 안통, 이물감, 많은 눈물, 눈곱, 눈부심, 결막하출혈	발병 후 4일-1주일	격리 없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장	8-48시간
유행성 각결막염	충혈, 안통, 이물감, 많은 눈물, 눈곱, 눈부심, 결막하출혈	발병 후 14일까지	격리 없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장	5-7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⁵⁾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증상 발생 1~3일 전부터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에 바이러스 양이 많아 감염 초기에 쉽게 전파	주요 증상(기침, 발열, 두통 등)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시까지	1~14일 (평균 5~7일)

- 1) 전파차단을 위한 등교중지 기간으로 관련 질환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매뉴얼의 환자 격리 기간을 바탕으로 작성함
- 2) 등교중지 기간은 휴일을 포함
- 3) 감염 시작 시점부터 증상과 징후 발생 시점까지의 기간
- 4) 증상 발생 후 감염력이 소실(해열 후 24시간 경과)될 때까지 등교중지 권고
 - 해열제 복용 없이도 해열이 된 후 최소 24시간 이상 경과를 관찰한 후 등교
 -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 마지막 해열제 투약 시점부터 2일(48시간)까지 경과 관찰한 후 등교
 - 방역당국의 ‘인플루엔자 관리 지침’ 이 있을 경우 그 지침의 등교중지 기간을 우선 적용
 - ※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질병관리청)
- 5) 2024년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지침(질병관리청. 2024. 8. 16.) 참고

- ※ 학생의 치료 상태에 따라 전염 가능 기간 및 격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 격리 치료가 필요 없는 감염병: B형간염, 일본뇌염, 쯤쯤가무시증, 뎅기열 등
- ※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3차 개정판(초중고특)」 207쪽 참고

12 학교 등교중지 및 출석 인정 근거 법령

<p>『학교보건법』 제8조(등교중지)</p>
<p>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9. 12. 29.)</p> <p>②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학교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역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4. 그 밖에 학교 내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등교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p>③ 제2항에 따른 명을 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 <신설 2020. 10. 20.></p>
<p>『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등교 등의 중지)</p>
<p>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0.12. 29., 2016. 8.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 등"이라 한다). 다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p>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p>
<p>『초·중등교육법』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p>
<p>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p> <p>③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전문개정 2012. 3. 21.)</p>
<p>『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p>
<p>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하되,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1. 3. 2, 2019. 9. 24, 2022. 3. 22.)</p> <p>②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 2023. 2. 10. 일부개정) [별표 8] 출결상황 관리</p>
<p>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p>

< 학교 >

- 1) 다음의 경우 환자명부를 작성하고,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첨서식 참고>
 - 가)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른 검진 결과, 결핵 환자나 결핵 의심자로 통보 받을 때
 - 나) 결핵으로 진단받거나 또는 치료중인 학생을 발견 했을 때
- 2) 보건소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환자를 환자 명부에 기록한다.

<별첨서식 준수>
- 3) 위 1)의 “가), 나)” 항의 학생과, 2주 이상의 심한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있는 등 결핵의심사례 발견 시 의심자 및 보호자에게 보건소로 방문토록 지도한다.
- 4) 결핵치료·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한다.
 - 가) 결핵환자에 대해 수시로 상담 및 교육 실시(복약확인 등)
 - 나) 전교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결핵 감염 후 발병위험, 결핵 전파, 결핵을 의심할 증상 등에 대한 교육 실시(보건소장 또는 시·도지사의 협조), 가정통신문 발송 등
 - 다) 학부모에게 결핵 가정통신문 발송
- 5) 보건소장으로부터 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검진 및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한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하도록 한다.
- 6) 보건소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환자를 환자 명부에 기록관리하고, 치료완료된 명단 통보 시 환자 관리를 종료 처리한다.

※ 학생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 보건소가 상이한 경우에는 학교소재지 보건소가 행정관리를 총괄

< 보건소 >

- 1) 보건소장은 교직원과 학생이 등록 및 퇴록 시 치료상황 및 결과를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가) 보건소 및 병·의원 등에서 파악된 학생 및 교직원 환자 정보
 - 나) 보건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학생 및 교직원 환자의 퇴록 시 퇴록결과
- 2) 보건소장은 학교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즉시 결핵환자 및 결핵 의심자, 보호자에게 보건소를 방문토록 연락한다.

3) 보건소 방문자 관리(결핵환자, 결핵의심/유소견자)

가) 결핵환자(접촉자 검진 결과 발견된 환자 포함)

- 의무기록 조사: 결핵 환자 의무기록조사서
- 면접조사: 결핵 환자 면접 조사서
- 치료 상황 파악: 치료중인 경우 현재 치료기관에서 계속 치료하도록 하고 미치료 또는 치료중단자인 경우 보건소 등록치료

나) 결핵의심/유소견자

- 흉부 X-선 직접촬영을 실시하고, 객담검체 3개를 수집하여 도말검사를 실시하며, 3검체 모두 대한결핵협회 지부에 배양검사 의뢰
- 배양검사 의뢰 시 신속감수성 검사 및 결핵균 DNA 검사도 같이 의뢰

4) 미 방문자 조치: 방문예정일까지 방문하지 않는 경우는 학교장에게 유선으로 협조 요청

5) 접촉자 조사

※ 접촉자: 전염성 기간 동안 환자와 접촉한 자(밀접접촉자: 전염성환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매일 접촉하는 친구, 교직원, 학급생, 동거가족 등)

가) 접촉자 조사 범위

발생 상황	접촉자 범위	검진
① 동일 학급(반)에서 도말음성 환자 1명(폐외결핵 포함)	친한 친구 또는 결핵 유증상자	TST ¹⁾
	흉부 X-선 검사상 유소견자 및 유증상자	흉부 X-선 검사 객담검사 (도말 및 배양)
② 동일 학급(반)에서 도말양성 환자 1명 또는 6개월 이내 활동성 환자 2명이상	해당 학급(반)생 (교직원 포함)	TST ¹⁾
	흉부 X-선 검사상 유소견자 및 유증상자	흉부 X-선 검사 객담검사 (도말 및 배양)
③ 학급(반)에 관계없이 동일학년에서 6개월 이내 도말양성 환자 2명 이상 또는 활동성 환자 3명이상	동일 학년 전원 (교직원 포함)	TST ¹⁾
	흉부 X-선 검사상 유소견자 및 유증상자	흉부 X-선 검사 객담검사 (도말 및 배양)

※ 접촉자란 전염성 기간 동안 환자와 접촉한 자로 조사 대상범위는 환자발생 양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예) 3월 발견된 환자의 증상기간이 전년도 말부터였다면 과년도 동일 학급생까지 확대 할 수 있다.

※ 접촉자 조사 후 추가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1) TST(Tuberculin Skin Test, 결핵 검사)

: 결핵의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 피부 바로 밑(주로 왼팔의 팔뚝 부분)에 작은 주사를 한 후 48~72시간 후에 부풀어 오르는 반응이 생겼는지 확인한다. 결핵균에 감염되었거나 BCG 백신 접종자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부풀어 오른 자리는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다.

나) 위의 “①” 항과 “②” 항의 접촉자에 대한 검진은 보건소에서 하도록 하고, “③” 항의 접촉자에 대한 검진은 대한결핵협회에서 이동 흉부 X-선 검사를 실시한다.

※ 대한결핵협회장은 검진 결과를 10일 이내에 보건소장과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결핵환자로 진단 받으면 결핵치료를 실시하고 잠복결핵감염자로 진단받으면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실시한다.(결핵관리지침 참조)

라) 보건소장은 결핵 환자에 대한 환자사례조사 결과, 확인된 접촉자에 대한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장과 조사일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마) 결핵 감염자로 판단된 자에 대해서는 시도 결핵관리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잠복결핵감염치료를 시행 할 수 있다.

6) 추구 관리

가) 학 교: 학교장은 결핵환자 및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상담(복약 확인 등)을 실시하고 보건소장으로부터 치료 완료된 학생명단을 통보받아 환자관리를 종료

나) 보건소: 복약확인을 철저히 시행하고 수약 불협조자의 경우 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하여 복약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수약일을 지키도록 설득, 환자의 퇴락 시 퇴락 결과를 학교에 통보

다) 접촉자 및 잠복결핵감염치료 대상자에 대한 추구 엑스션 검진

- 접촉자: 집단에 대한 1차 검진을 실시하고 일정기간(3개월 또는 6개월) 후에 2차 검진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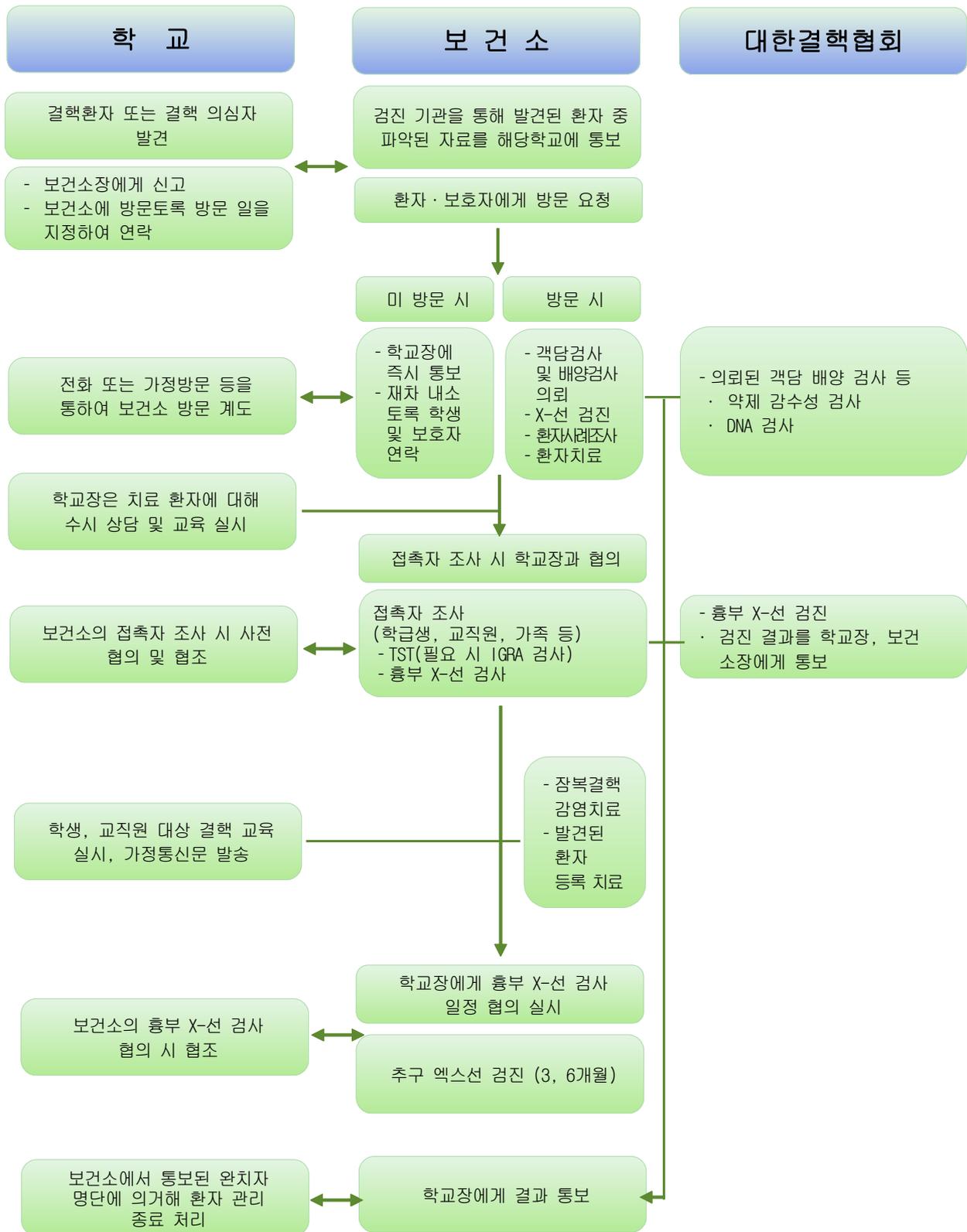
- 잠복결핵감염치료 중인 자: 잠복결핵감염치료 종료시점까지 3개월 간격으로 검사

- 잠복결핵감염치료 완료자: 잠복결핵감염치료 종료 3, 6, 12개월 후

- 잠복결핵감염치료 미 실시자 또는 중단자: 3개월 간격으로 검진하여 추가 활동성 결핵 환자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실시 단, 3개월 이전이라도 결핵 의심 시 조기 검사

라) 잠복결핵감염자 관리: 『결핵관리지침』의 ‘잠복결핵 치료’ 참조

【결핵관리 체계】



【학교 결핵관리 흐름도】

학생결핵관리, 이렇게 하세요!!

예방교육

- 1. 2주 이상 기침하면 (보건)선생님과 상의 후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여 결핵검사
 - * (주요증상) 2주 이상 기침 및 가래, 발열, 수면 중 식은 땀, 체중감소
- 2. 올바른 기침예절 실천
 - * 기침할 땐 손이 아닌 휴지나 손수건,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 * 기침한 후에는 손 씻기

- 담임교사 : 학급 학생
- 보건교사 : 보건실 이용 학생

유증상자 발견

결핵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기침, 가래가 2~3주 이상 지속되는 것이다.

- 담임교사
- * 학생정보 등 관련내용 전달

보호자 연락 후 귀가조치, 보건소·병원진료 안내



- 보건교사
- * 진료결과 전달
- * 등교중지 요청

진료결과 확인

- 담임교사

(결핵확진) 등교중지

- 보건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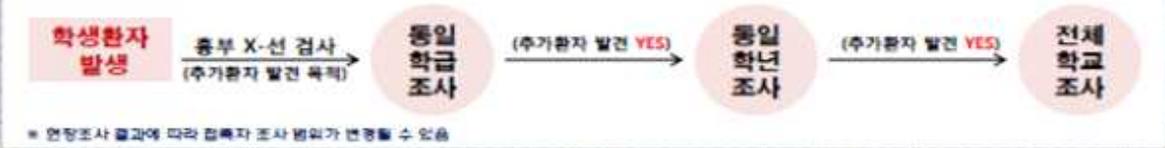
교육청 보고 / 보건소 신고

- 규칙적인 환기, 채광

- 학교장/ 보건교사

역학조사 실시에 따른 협조 (질병관리본부·보건소 주관)

- 가정통신문 발송
- 학생 및 학부모 설명회 (방역당국 협조)



- 보건교사

복약중인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약 2주간 결핵약을 복용하면 전염성이 소실되며, 항균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가능 (항균 전 전염성 소실여부 확인)

[학교 ⇒ 보건소통보 서식]

학교 내 결핵 환자(의심자) 발생 및 발견 통보

수신: ○○ 보건소장

발신: ○○ 학교장

보고 일시 _____ 보고자 _____

이름	학년/반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발견 근거	환자구분	
					결핵	의사결핵

[학교 비치용]

결핵 환자 명부(학생, 교직원)

이름	성별	학년반	연락처	주 소	발견 근거	발견일자 (년,월,일)	보건소 등록 등 치료내역	완치 여부	비고

※ 발견근거: 학교 정기검진, 학교 별도검사, 개별검사 등으로 구분 기록

※ 보건소 등록 등 치료내역: 보건소 등록여부, 치료과정 등을 간략히 누계 기록

[보건소 ⇒ 학교통보 서식]

학교 결핵환자 발견 및 치료내역(학생, 교직원)

수신: ○○ 학교장

발신: ○○ 보건소장

이름	성별	학년반	연락처	발견근거	발견일자 (년,월,일)	도말결과	보건소 등록 등 치료내역	치료 결과	비고

※ 치료결과는 치료종결 시 송부

가정통신문(결핵 예방 안내)

(앞면)

학교마크	결핵 예방 안내	제 - 호
<p>안녕하십니까?</p> <p>최근 우리 00지역 학교에 결핵환자가 발생하여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p> <p>결핵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호흡기로 감염되지만 항결핵제를 복용하고 적절한 관리 시 2주내에 감염력이 소실되는 질병입니다. 학교에서는 잠복결핵 감염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결핵환자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투베르쿨린검사(TST) 및 흉부X-선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중요하지 않도록 지도바랍니다.</p> <p>또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참고 하시어 자녀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p> <div style="margin-top: 10px;"> <p>1 결핵(Tuberculosis)이란?</p> <p>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에 의한 감염질환으로 폐를 침범 할 뿐만 아니라 뼈나 관절, 뇌 등 신체의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주는 질환입니다.</p> <p>2 결핵은 어떻게 전파될까요?</p> <p>결핵은 주로 결핵을 가진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공기를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됩니다. 항결핵제 치료 후 14일까지 전염력이 있으므로 학생의 건강을 위해 2주간 가정에서 요양을 하는 것이 학생의 질병 치료를 위해 도움이 됩니다.</p> <p>3 결핵의 증상은 무엇인가요?</p> <p>전신적인 무력감, 체중감소, 열, 밤에 땀이 나는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폐 결핵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기침, 객혈(가래에 피가 섞임), 흉통 등의 증상이 있고 영아의 경우에는 객담을 동반하지 않는 기침, 경도의 호흡곤란 및 미열 등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p> <p>4 결핵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p> <p>여러 가지 항결핵제를 복용하는 내과적 치료가 기본이나 필요에 따라 수술과 같은 외과적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6개월간 아침 7시 공복에 약물 복용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p> </div>		

5 결핵은 어떻게 예방하나요?

가. BCG 예방접종을 통해 결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 접종대상: 모든 영유아
- 2) 접종시기: 생후 4주 이내

나. 환기 자주하고 면역력 높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결핵의 특징 중 하나는 20~30대 결핵환자가 많은 것(20~39세가 38.7%)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등 영양환경이 빈약하고 PC방, 노래방, 영화관 등 밀폐된 공간 활동을 즐기는 10/20대가 결핵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무리한 다이어트가 결핵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다이어트 등으로 면역력과 저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염 될 수 있는 질환이므로 환기를 자주하고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다. 환기 자주 하기

결핵은 결핵균을 가진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공기를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야 합니다. 특히 환자가 있는 곳에는 더욱 자주 환기를 시켜 결핵균의 밀도를 낮추어 전염을 막아야 합니다.

라. 결핵환자에 노출된 사람은 결핵약 예방 투여

결핵환자에 노출된 사람은 피부반응 검사로 감염 여부를 파악합니다.

감염이 의심되면 의사 판단에 의해서 결핵약을 발병 예방 목적으로 6개월 혹은 그 이상 투약합니다.

6 등교중지 안내

결핵은 법정 제2급 감염병으로 항결핵제 치료 후 14일까지 등교중지 대상입니다.

등교 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시면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관계법령 >

- ◆ 『학교보건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 ◆ 『초·중등교육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 ◆ 『교육부훈령』 제195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제8조의 제2항(별지 제8호)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0 . . .

○ ○ 학 교 장